

73-2-4

물가 조사 방법

통계청 도서실



B0004069

조

과

73-2-4

물가 조사 방법

001251

차례

I. 물가통계 방법	_____	3
1. 물가통계의 연혁	_____	5
2. 물가지수	_____	13
3. 가격조사	_____	77
II. 주요국의 물가조사요령	_____	107
1. 우리나라 물가지수개요	_____	109
2. 뉴질랜드 소비자물가지수	_____	207
3. 캐나다 소비자물가지수	_____	307
4. 인도 소비자물가지수	_____	397

I. 물가 통계 방법

1. 물가통계의 연혁

1. 물가통계의 연혁

물가지수는 자못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물가지수가 최초로 작성된 것은 1675년으로 영국의 "라이스 버칸" (Rice Vaughan) 이 1352년을 기준으로 하여 1650년 당시의 물가를 비교한 것이었다. 그때에는 곡물, 가축, 물고기, 면포, 린넨, 수피 등 비교적 소수의 품목을 대상으로 하여 지수를 산출하였다.

그 후 A. Young, W.S. Jevons, E. Laspeyres, H. Paasah, Edgeworth, I. Fisher, A.L. Bowley,

G. Haberler, J. M. Keynes 등의 학자가 물가통계의 이론과 실제면에서 크게 공헌하여 많은 변천과 개선을 가져왔고 현재에는 여러가지 경제지수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지수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우리나라 물가지수의 연혁을 살펴보면 1910년

7월을 기준으로 하여 구한국은행에서 작성하기 시작한 도매물가지수가 그 기원이었다.

그 당시에는 단지 생산품(16품목)과 수입품(14품목)으로만 구분하고 총 30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품목별 중요도인 가중치는 고려하지 못하고 단순산술평균방법으로 지수를 산출하였다.

1936년을 기준년으로 하여 개편한 도매물가지수가 1939년 1월에 「경성도매물가표」라는 명칭으로 발표되었으며 이 지수는 지수에 포함하는 품목이 80으로 확대되었고 분류도 곡물, 식료품, 직물원료, 직물, 건축재료, 금속류, 연료, 비료, 공업약재, 잡품의 10분류로 늘었으며 단순산술평균법에서 단순기하평균법으로 계산방법을 달리한 것이 시초지수와와의 상이점이라 하겠다.

또한 현 소비자물가지수의 전신인 소매물가지수가 1936년을 기준으로 하여 당시 경성상공회 의소에서

처음으로 작성되기 시작하였다.

이와같이 구한달부터 일제시대를 거쳐 명맥을 유지하여 온 가운데 소매물가지수는 해방후 조선은행에서 1947년을 기준으로 하여 새로운 지수를 작성하기 시작하였다. 이때부터 우리 나라의 물가지수에서는 종전의 단순평균방식에서 한 걸음 나아가 가중평균방식을 답습하게 되었다.

다시 1958년 11월에는 1955년 기준의 개편도매물가지수가 발표되었고 1947년 기준의 소매물가지수도 같은 기준으로 하여 명칭 소비자물가지수로 개칭하여 1957년 9월에 발표되었다. 이것이 우리나라 소비자물가지수의 시조였고 당시는 서울에 한한 지수였으며 내용분류는 음식물비, 주거비, 광열비, 피복비, 잡비의 5대분류로 총 154품목을 포함하였었다. 서비스요금도 지수에 포함된 것은 또한 이때부터이다.

한편, 두역지수의 한 형태인 수출입물가지수가

~10~

1957년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기 시작하였으나 이 지수는 무역구조의 급격한 변천으로 1964년에 중단되었다. 당시 수출물가지수는 32개품목으로 구성되고 3개대분류와 8개소분류로 분류되었으며, 수입물가지수는 91개품목에 8개대분류와 21개소분류별로 분류되었었다.

물가통제가 발전되고 개선되는 가운데 차차 특수물가지수가 출현하게 되었으며 당시 현 농업협동조합의 전신인 농업은행에서 1960년을 기준으로 한 농촌물가지수를 작성하였다.

같은 해에 1960년을 기준으로 하여 전국도매물가지수와 서울소비자물가지수가 개편되었고 5년후에는 다시 1965년을 기준으로 하여 도매물가, 소비자물가, 농촌물가지수 등 모든 지수가 개편되었다. 1965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는 종전에는 그 범위를 서울에 한하였던 것이 전국도시가례조사를 통하여 가중치자료

를 얻게 됨으로써 전국(도시)소비자물가지수로 그 범위를
 확대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에서 소비
 자물가지수의 편제 및 그에 따른 물가조사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경제가 고도로 성장함에 따라 그 구
 조의 현저한 변화로 물가지수개편의 필요성이 논의되어 오
 면중 1970년을 기준년으로 하는 개편지수를 편제하
 게 되었다. 이와 같이 물가지수는 우리나라 경제통
 계중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니고 발전을 거듭하여 왔으
 며 경제통계분석의 기초자료가 되는 기본적인 시계열
 로서 그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거니와 1970년 6월중
 에는 1970년기준의 지수개편시기를 앞두고 ECAFE와
 U.N 통계처 공동주관하에 물가 및 물량통계세미나가
 태국 방콕에서 열렸는데 여기에서는 물가조사 및 지
 수작성에 있어서 실무상 어려운 문제를 토론했었고
 물가 및 물량통계의 개선을 위한 진지한 토의가 있
 었다.

2. 물가 지수

2. 물가지수

가. 물가지수란?

개개 품목의 가격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한다. 어떠한 품목의 가격은 급격한 속도로 올라가고 어떠한 품목은 서서히 올라가기도 하며 반대로 어떠한 품목은 내려가기도 한다. 또한 장기간 같은 가격 수준을 유지해 나가는 것들도 많다. 이와 같이 복잡다양하게 그 방향과 량을 달리하면서 변하고 있는 개별품목의 가격을 종합하여 기준이 되는 때와 비교하여 간단한 수치로 나타낸 것이 물가지수인 것이다. 즉 물가지수는 기준이 되는 때의 물가수준을 100으로 놓고 그때그때의 물가수준을 비교하여 나타낸 수치이다. 물가라는 말이 복수의 개념으로 쓰이는 것과 같이 물가지수도 여러 품목을 종합하여 나타낼 때 쓰이는 말이다.

이것을 더욱 실감나게 우리의 가계생활과 연결하여 설명한다면 1970년에 1가구당 월평균가계지출비가 36,000 원이라고 하고 현재의 소비자물가지수가 130이라면 현재의 평균 가계지출비는 기준시와 똑같은 수준의 생활을 할 때 월간 46,800 원 정도가 든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러한 원리에 입각한 정확한 지수를 산출하는데 있어서는 가격조사, 지수편제실무면에 기술적인 문제점이 많으며, 그 점은 "물가지수의 작성"이라는 제목으로 구체적인 설명을 하기로 한다.

1. 물가지수의 종류

물가지수는 그 보는 관점에 따라 여러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유통단계에 따라 생산자판대물가지수, 도매물가지수, 소매물가지수로 나눌 수 있고 생산과정에 있어서 투입물가지수, 산출물가지수로 분

류할 수 있으며 거래과정에서 판매물가지수와 구입
 물가지수로 구분할 수도 있다. 대외무역에 따른
 수출물가지수 수입물가지수도 있고 또한 지역에 따
 라 도시물가지수, 농어촌물가지수 등으로 나누어질
 수도 있으며 특수지수로서 소득이나 지출계층에 따
 른 계층별 소비자물가지수라든가 여러가지 특성별 물가
 지수를 들 수 있다.

위에 말한 계층별 소비자물가지수에서는 계층별 지출
 구조가 다름에 따라 같은 품목일지라도 계층에 따
 라 가중치의 크기가 다르게 되며 똑같은 가격을
 각 계층에다 적용하여도 지수는 다르게 나타나는
 효과를 갖게 된다. 이와같은 지수를 복합지수
 (multiple index)라고 부른다.

이제 종류별로 주요한 물가지수를 살펴보기로 하면,

(1) 생산자 판매물가지수

이것은 상품이 생산되어 유통되기 시작하는 첫

단계인 일차시장 (primary market) 의 가격의 흐름을 종합하여 나타내는 것으로서 생산자판매가격은 국민소득계정에서 불변 국내총생산액 (GDP at constant price) 추계를 위한 디플레이터 (deflator) 와 부가가치의 산출자료가 되며 또한 유통마진을 측정하는 기초자료가 되므로 각종 지수중에서 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중소기업은행에서 작성하고 있는 중소기업제품제조업자판매가격지수가 바로 이 성격의 지수가 되며 도매물가지수에서도 총 473 품목 중 약 300 품목은 생산자의 판매가격을 조사하고 있다. 단계별로 여러 종류의 지수를 산출하고 있지 않은 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도매물가지수속에 생산자로부터 소매상까지의 전체 단계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생산자판매물가지수가 국민소득계정과 관

편하여 그 중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높이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독일에서는 생산자판매물가지수를 이미 작성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현재 작성하고 있는 도매물가지수와는 별개의 생산자판매물가지수를 설정하고 있다.

(2) 도매물가지수

상품이 생산자의 손을 떠나 도매업자의 손에 들어와서부터 소매업자에게 흘러가는 과정의 가격을 총칭하여 도매가격이라 칭한다. 그러나 상품에 따라서는 여러 단계의 도매과정을 거치는 것도 있다. 유통구조의 양상이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상품에 따라서는 생산자로부터 도매단계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경우도 많고, 대기업제품의 경우에는 흔히 대리점이나 직판소를 거쳐 유통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모든 상품에 대하여 일정한 도매단계의 가격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도매물가지수는 상품의 유통되는 과정중 앞단계의 물가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현재의 시장상황을 알려 주며 다른 여러가지 통계와 관련하여 경제동향을 나타내고 공적으로는 경제정책을, 사적으로는 경영방침을 결정하는 지침이 된다. 또한 회폐구대력을 나타내므로 실질적인 수량관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여러 통계의 디프레이터(deflator)로 많이 이용된다.

최근에 와서는 국민소득계정에 있어서 알맞는 "디프레이터"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문별 지수(sector index)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현재 독일을 비롯하여, 이웃 일본에서도 부문별 지수를 산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공식으로 이용되는 도매물가지수는 현재 한국은행에서 작성하고 있는 도매물가지수로서 다른 모든 지수와 같이 1970년을 기준으로

하여 607 품목을 포함하고 농수산물, 가공식품, 섬유 및 동제품, 목재 및 동제품, 지류, 생고두 및 고두제품, 화학제품, 합성수지 및 동제품, 금속 및 동제품, 기계 및 동부분품, 연료 및 전력, 토석 및 유리제품, 잡품등, 13 개 대분류로 나누어져 있으며 특수분류로 생산재와 소비재로 분류하여 지수를 산출하고 있다.

이 밖에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도매물가지수가 산출되고 있으나 그것은 단순평균방법으로 산출되는 지수로서 지수목적이 아니고 상공인들에게 주요상품의 원실가격을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3) 소매물가지수

말단 유통과정에서 최종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가격을 종합하여 나타내는 것이므로 이 지수는 일반소비자의 일상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상품의 가격변동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고 국민계정에 있어

서 소비지출수준측정을 위한 디프레이터로 이용되며, 소매가격은 생산자판매가격과 비교하여 유통과정의 총마진을 측정하는 자료로서 이용된다.

여기에서 소매물가와 소비자물가를 명확히 구분하여 둘 필요가 있다. 소매물가는 소매상에서 판매하는 유형의 상품가격을 종합하여 말하며 소비자물가는 소비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유형의 상품과 아울러 무형의 상품, 즉 서비스 오름까지 포함한 것이다. 서비스상품은 생산되면서 바로 소비되기 때문에 흔히 소비자측에서 측정하게 된다. 그러므로 소매물가와 소비자물가와와의 차이점은 전자는 판매가격이고 후자는 구입가격이라는 점과 실무적으로 전자는 유형의 상품만을 포함하고 있는데 대하여 후자는 서비스 상품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원칙적인 점에서 소매물가와 소비자물가는 위

와 같은 차이가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소비자들간
 지수작성을 위한 가격자료의 제공에 있어서 소비
 자구입가격을 포착할 수 없기 때문에 편의상 판
 매가격인 소매가격을 이용하게 된다. 즉 틀리지
 수 작성에 필요한 가격은 일정한 상품, 일정한
 품질규격과 단위에 대한 가격이 일정한 시간 간
 격으로 제공되어야 하나, 일정한 소비자에게서는
 그러한 자료의 획득이 불가능함으로 소비자에게
 상품을 제공하는 소매상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품
 목의 가격을 계속 조사하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소매판매가격과 소비자구입가격간에 차가 없
 도록 포착하기 위하여 현금거래가격 할인후의 가
 격 등 조사요령을 세밀히 정하게 된다.

소비자물가는 그 나라 구성원인 국민의 가계경
 제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의 안정은 곧
 정부 물가정책의 성공이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물가정책의 성대를 판가름하게 되는 소비자물가의 안정을 위하여 물가정책의 목표를 여기에 두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64년까지 서울에 한한 소비자물가지수가 산출되었으나 1965년부터는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에서 범위를 확대하여 전시부를 대표하는 지수를 작성하게 되었다. 1970년 기준 현행 소비자물가지수는 총 338품목을 포함하고 식료품비, 주거비, 광열비, 피복비, 잡비의 5대 분류와 37개 소분류로 분류되어 있으며 32개 도시를 포함하여 10대도시의 재열을 산출하고 있다.

(4) 판매물가지수와 구입물가지수

유통과정에 있어서의 가격은 판매가격과 구입가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어느 일정한 도매업자를 중심으로 하여 생각해 볼 때 그 도매업자는

생산자 또는 앞단계의 도매업자로부터 상품을 구입하게 되고 구입한 상품은 다음 단계의 도매업자, 소매업자 또는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게 된다. 이 경우 일정한 단계의 거래에 있어서는 판매가격과 구입가격이 원칙으로 같으며 공장도가격, 도매상인도가격인 경우에는 수송비만을 감안하면 일치된 가격을 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예로써 생산자판매가격을 대상으로 할 때 생산자판매가격이 불가능할 때는 생산자에게서 구입하는 도매업자의 구입가격으로 대응하여도 무방하다. 그러나, 가격을 수집하는 실무면에서 볼 때 상품의 제조 단계나 소비단계가 아닌 중간유통단계에서는 판매가격은 비교적 용이하나 구입가격의 수집은 거의 불가능하다. 왜냐 하면 판매가격은 노출시키는 가격이지만 구입가격은 상인들이 영업상의 비밀로 하려는 가격임으로 원만한 협조를 바랄 수 없는

일이다.

일반적으로 유통과정에서의 물가지수는 대상처의 협조문제, 기타 기술적인 이유로 판매물가지수가 되며 생산자판매가격지수, 도매물가지수, 소매물가지수 등이 이에 속한다. 구입물가지수의 예로는 소비자물가지수가 있는데 앞에 설명한 이유로 해서 자수에 반영하는 가격은 소매판매가격으로 사용하고 있다.

(5) 수출입물가지수

우리나라에서 수출입물가지수는 1957년 기준으로 처음 작성하였으나 무역구조의 급격한 변천으로 수출물가지수는 1964년에 폐지하고 현재는 수입상품도매물가지수만이 별도로 작성되고 있다.

현 1970년 기준 수입상품도매물가지수는 1970년 중 국내시장에서의 거래액이 큰 수입상품으로 가중치모집단 총액의 5/10,000 이상이 되는 품

목을 포함하고 금속 및 동제품, 기계 및 동부분품, 화학약품, 의약 및 농약품, 합성수지, 고무, 목재, 잡품 등 8개 대분류로 나누어져 있다.

(6) 농촌물가지수

농촌물가지수는 농촌의 수취가격과 지불가격의 상대적 가격수준의 변동을 측정하고 농산물의 균형가격을 산출하기 위한 농업패리티지수를 제공하며 농촌경제의 실정을 가격구조면에서 분석하여 농촌의 유통구조를 파악하는 자료로 이용되고 또한 농산물가격책정자료로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여 작성하는 특수지수이다. 우리나라의 농촌물가지수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산출하고 있는 바 이것은 농가판매가격지수, 농가구입가격지수 및 농촌임료금지수로 구성되어 있다.

다. 물가지수의 작성

물가지수는 전반적인 물가의 동향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이용 목적에 따라 그 성격과 내용을 달리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를 설계할 때에는 그 이용목적에 알맞는 성격과 내용을 갖는 물가지수가 되도록 그 방향과 아울러 지수에 관련되는 가중모집단, 품목, 품질유격, 조사지역, 조사대상처, 조사시점, 조사가격, 조사방법 등 모든 면에서 그 방향을 일치시켜야 할 것이다.

(1) 성격 (Characteristic)

우리가 어떠한 일을 수행하여 나갈 때에 뚜렷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나가야 되듯이 마찬가지로 지수를 설계함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작업의 수행이전에 그 목적과 성격을 명확히 해야 될 것이다. 왜냐 하면 지수설계의 구체적인 모든

작업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목적과 성격에 따라 일정한 방향을 취하게 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지수의 성격은 가중모집단의 성격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어 소비자물가지수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공장 노동자 소비자물가지수"라 할 때에는 공장 노동자의 가계지출비를 가중모집단으로 하여야 될 것이며 조사지역 및 대상처도 그들의 대중거래에 해당되는 지역 및 대상처로 정하여야 됨은 물론이다.

아직까지의 물가지수는 전반적인 물가동향, 경기 변동 등을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일반목적지수에 불과하였지만 실질수량측정을 위한 디플레이터로 많이 이용되는 가운데 산업연관분석 등 특수목적에도 적합되는 물가지수가 요청되고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하여는 수년전부터 유엔통계위원회에서도 정식으로 논의가 되어 왔고 현재 몇 나라에서는

일반목적과 특수목적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함축성 있는 지수를 산출하고 있다.

1970년 6월중에 개최되었던 ECAFE 지역 "물가 및 물량통계세미나"에서도 물가지수의 전통적인 목적외에 국민소득계정에 있어서 알맞는 "디플레이터"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물가통계의 작성 방안에 대하여 전의한 바 있다.

우리나라 도매물가지수는 전통적인 도매물가지수 이론에 입각하여 기업간의 대량거래에 적용되는 물가수준의 변동을 측정하고 상품의 전반적인 수급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일반 목적지수 (*general purpose index*) 이다.

최근 서구제국에서는 이와같은 성격의 일반목적 지수에 대하여 그 가치를 의심하는 움직임이 대두되고 있는데 즉 통화의 구매력은 특정의 목적 의식을 전제로 하지 않는한 성립되지 않는 개념

이데 그 목적의식을 달리함에 따라 몇개의 통화 구매력이 병존한다고 보는 입장에서 일정한 거래 내용이 존재하는 부문에 대해서만 그 거래에 있어서의 상품가격을 종합한 지수를 작성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이것을 소위 부문별 접근 방법 (Sector approach)이라 하며 영국, 아일랜드, 독일, 화란 등 수개국에서는 현재 부문별 지수를 작성하고 있고 일본에서도 전통적인 도매물가지수와 병행하여 이 지수를 편제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국가에서는 일반목적지수로서의 성격을 그대로 유지해 가고 있는데 그 이유로는 무엇보다도 지수의 장기간에 걸친 비교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성격을 일시에 급변시키지 않으려는 것과 상품수급의 지표로서 혹은 경기변동의 지표로서는 전통적인 일반목적지수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통적인 도매물가지

수가 위와 같이 제한된 개념으로 통용되고 있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1970년 개편지수에서는 부문별지수의 작성을 시도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도시 가구를 대표하는 것이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는 평균 지출패턴에 따라 가중되므로 이것은 평균적으로 소비자 물가의 변동을 나타내는 것이며 모든 층의 가구를 대표할 수는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계층별 물가지수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이것은 흔히 소득계층별 또는 지출계층별로 복합지수의 형태로 작성된다.

일본에서는 5분위 계층별 물가지수를 작성하고 있으며 뉴질랜드에서도 평균지수와 아울러 저소득층을 대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작성하고 있다. 이 밖에도 특정층에 속하는 가구(인구) 집단의 소비자물가지수가 있는데 공장 노동자의 소비자물

가지수가 그 일예이다.

ECAFE지역 물가 및 물량통계세미나에서도 소득 및 지출분포의 분석에 필요한 계층별지수와 지역별지수를 소비자물가지수의 체계에 포함하도록 건의한 바 있다. 그러나 소득 및 지출계층별 물가지수는 소득분포의 불균형상태가 심할수록 계층간의 지수가 유리됨으로 그 정도가 심할 때에는 정치적인 문제로 번질 우려도 없지 않다.

(2) 기준시 (Base Period)

지수는 어느 일정한 기준이 되는 때를 100으로 놓고 비교하여 나타내는 수치임으로 지수를 작성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기준시를 선정하여야 한다. 물가지수는 항상 비교시의 조사가격을 기준시의 가격과 비교하고 기준시의 패턴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작성되는 것이므로 올바른 지수의 수준과 추세를 나타내자면 안정된 기준시를 잡아야

야 될 것이다. 기준시 선정에 있어서 첫째 요
건은 경제패턴이 정상적인 때이어야 한다는 것이
다. 즉 도매물가지수에서는 거래구조, 소비자물가
지수에서는 소비지출구조가 정상적인 때이어야 한
다. 그 다음에는 각종 타경제지수와와의 비교 및
국제비교가 용이하도록 제경제지수의 기준시를 일
치시키는 문제도 고려하게 된다.

정상적인, 그리고 안정된 패턴의 기간을 기준으
로 잡자면 일반적으로 기준기간이 길어야 된다.
그러나 최소한 5년 내지 10년에 한번씩 지수
를 개편하고 따라서 기준시가 변경되고 있는데
지나치게 긴 기간을 기준으로 잡는다면 오히려
지수의 예민성을 결하게 될 우려가 있다. 한편
너무 짧게 잡으면 각종패턴이 불안정하고 또한
일주일, 1개월, 3개월등 1년중의 일부기간은 제
철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지수의 기준시로는 적

합하지 않다.

물가지수의 기준시는 흔히 1년 평균으로 잡고 있다. 기준기간이 1년보다 짧은 것을 협조기준 (*narrowed base*) 이라 하고 2년, 3년 등 긴 것을 광조기준 (*Broadened base*) 이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도매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를 비롯하여 모든 경제지수의 기준시를 1년기간으로 잡고 있으며 제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기준년 도인 1970년으로 통일하고 있다.

기준시는 비교기준시 (*Comparison base*) 와 가중치기준시 (*Weight base*) 로 나누어진다. 비교기준시는 지수를 100으로 놓은 때 즉 비교되는 기준가격이 산출된 기간이다. 가중치 기준시는 지수의 가중치가 산출된 대상기간이다.

물가지수의 비교기준시와 가중치기준시는 가능한

한 일치시키는 것이 좋다. 단순히 전통적인 물가지수의 목적으로 전반적인 물가동향이나 경기변동 등을 측정함에 있어서는 특정지수의 비교 및 가중치기준시가 상이해도 별문제가 없겠지만 소득 및 지출분석을 하기 위한 디플레이터로 이용될 때에는 이의 일치가 절실히 요청된다. 왜냐하면 국민소득계정에서 고정시장가격으로 측정할 때에 비교기준사와 가중치기준시가 상이한 지수는 디플레이터로 직접 이용할 수 없는바 국민소득계정은 금액으로 평가되는 것이므로 어느 시점에 있어서나 지수와 가중치를 작용하여 실제 금액을 유도할 수 없게 되어 있는 지수는 디플레이터로서 적합한 것이 못되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지난번 물가 및 물량통계세미나에서도 강조되고 유엔통계위원회에 건의된바 있다.

우리나라 도매 및 소비자물가지수의 기준시는 비교적 가중기준시가 모두 1970년으로 일치하고 있다.

지수의 기준시는 오랜 기간을 일정하게 고정시키고 있는 경우와 연쇄적으로 계속 변경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전자의 방법을 고정기준법 (Fixed base system)이라 하고 후자의 것을 연쇄기준법 (Chain base system)이라 부르며 그러한 방법으로 작성되는 지수를 각각 고정기준지수 (Fixed base index), 연쇄기준지수 (Chain base index)라고 한다.

위의 두가지 방법은 각기 장단점을 갖고 있는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실무의 편의상 고정기준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고정기준방법은 일정하게 기준을 고정하여 놓고 장기간 비교하게 되므로 업무의 번잡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계속 변화하고 있는 패턴을 예민하게 반영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한편 연쇄기준법은 반대로 변화되고 있는 패턴이 계속적인 지수의 개편으로 품목간의 상대적인 비중이 달라지고 노후하여 시장에서 없어지는 구품목 및 품질추격을 제거하고 새로이 출현하는 신품목 및 품질추격이 그때 그때 지수에 반영되므로 현실을 예민하게 반영하는 지수를 산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계속적으로 지수개편을 하여야 되므로 사무량이 막대하다는 단점이 있다.

연쇄기준법으로 지수를 산출하고 있는 예로는 영국의 소매물가지수를 들 수 있다. 그 지수는 연도별로 개편하고 있는데 년초지수를 그 당시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중치의 대상기간을 전년 10월까지의 연간을 잡고 11월과

12월중에 개편작업을 완료함으로써 연초부터 새로운 지수들 작성할 수 있는 것이 특색이다.

그러니까 1969년 기준으로 70년 지수를 작성하는 연쇄기준지수에서 가증기간은 1968년 11월부터 1969년 10월까지의 1년기간이 된다.

고정가중기준법으로 지수를 산출하는 경우에도 패턴의 변화에 따라 필요할 때에는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수를 개편하여야 한다. 개편간격은 일정한 것은 아니지만 경제구조의 변화가 심한 나라에는 비교적 자주 하게 되며 구조의 변화가 별로 없는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10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을 유지하고 있다.

물가지수의 기준시는 보통 빠르면 5년, 늦어도 10년간격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 물가지수의 기준시는 1955년 이전에는

불구칙한 간격으로 변경되었으나 그 이후에는 주기적으로 5년간격의 기준시 변경이 있었으며 1970년 기준지수를 1975년 기준으로 변경하게 되면 다시 5년 간격의 개편이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도소매물가지수의 아직까지의 기준시는 아래와 같다.

	1910	1936	1947	1955	1960	1965	1970
도매물가지수	○	○	○	○	○	○	○
소매물가지수 (소비자)	-	○	○	※ ○	○	○	○

단, ○표는 개편이 있었음을 표시함.

※부터 소비자물가지수, 그 이전은 소매물가지수임.

(3) 지수분류

지수의 분류는 국제반경제통계위의 비교 및 이용의 편리성 또는 국제통계의 상호비교에 편리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생산자 판매가격지수나 도매물가지수에서는 경제기능별로 기본분류를 취하게 되며 소비자물가지수에서는 최종소비지출의 대상이나 목적에 따라 분류한다.

UN 통계처에서는 국제표준산업분류 (ISIC) 포를 작성하였으며 그것은 상품분류면과 아울러 SNA 포에 적용되도록 마련되어 있다.

(4) 가중치 (Weight)

물가지수는 품목별 중요도 (Importance) 에 따라 주어진 가중치 (Weight) 로서 지수가 가중된다. 대상으로 하는 각각의 품목은 생산, 교환 또는 지출금액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비중에 따라 가중치 (중요도) 를 부여하게 된다.

단순평균 (산출, 기하, 및 조화) 방법으로 지수를 산출할 때에는 가중치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이것은 대상으로 하는 모든 품목의 비중을 도외시한 것이므로 이러한 방법으로 산출하는 지수는 물가동향의 방향을 막연하게 제시할 수는 있어도 양적분석에는 적합하지 못하므로 경제분석용 지수로 이용하기에는 곤란하다.

가중치는 품목간의 상대적 비중이므로, 그것이 큰 품목의 가격이 변동하면 총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즉, 도매물가지수에서는 전도매판매액의 변동이 크고, 소비자물가지수에서는 소비자출액 소비자부담에 변동이 크다는 의미가 된다.

예를 들어 소비자물가에서, 쌀, 쇠고기, 무, 배추라든가 연탄, 담배등, 비중이 큰 품목의 가격이 오르면 그만큼 지출비중이 크기 때문에 정상적인 가계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지출부담이 커지게 되

며 이러한 관계로 주요생활필수품의 가격이 조금
만 올라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물가지수는 대개 기준시의 고정된 가중치를 적
용하는 「라스파이레스」 산식으로 작성이 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기준시에 주어진 가중치 즉 기준시의
패턴과 현재도 같다는 전제가 되는데 사실상 품
특별 비중은 계속 변화고 있다.

소득수준의 변동에 따른 지출구조의 변화 새로운
상품의 출현에 따른 변화, 가격의 변동이 심할 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따른 지출구조의 변화 등
계속 지출패턴은 달라지지만 지수작성에 있어서는
실무의 편의상 기준시 고정가중평균방법을 사용하
고 있다. 그러므로 「라스파이레스」 산식으로 작성되
는 지수는 「파셰검정」(Paasche Check)을 자주 하
여야 한다 「파셰검정」은 기준시의 고정가중치를
적용하여 작성한 지수와 비표시의 가중치를 적용

하여 작성한 지수의 유리상태를 보아서 가중치의
노후상태를 점검하는 것으로서 계산식은 파चे산식
이나 그것이 「 라스파이레스 」 산식의 지수를 반
대성격을 지닌 「 파चे 」 산식으로 검사하여 가중
치 개편의 필요성을 점검하는 목적으로 이루어
지기 때문에 파चे검정 (paasche check) 이라
부른다.

「 파चे검정 」 결과 지수의 유리되는 특이나 각
도가 심할 때에는 현실을 올바르게 반영하는 지
수를 작성하기 위하여 지수를 개편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급속한 경제성장을 보이는 나
라에서는 경제패턴의 변화가 현저히 크므로 이러
한 경우에는 「 파चे검정 」 도 최소한 1년간격으
로 하여 가중패턴의 변화상태를 파악하여야 될
것이며 필요하다면 지수를 개편하여야 할 것이다.

(가) 가중모집단 (Weight Universe) 지수를 설계 하
려면 우선 가중치 모집단의 범위를 주정하여야
한다. 가중치 선정자료는 금액자료이며 따라서 모
집단도 금액으로 나타나게 된다. 일반적으로 도
매물가지수에서는 국내총거래액 소비자물가지수에서
는 가계소비지출총액이 된다.

우리나라 도매물가지수 가중모집단 범위는
1970년중에 국내시장에 투입된 상품 및 전력
의 총평가액으로 하였으며 원칙적으로 「(국내생산
액 - 생산자의 자가소비액 및 직접수출액) + (수
입액 - 실수요자 수입액)」으로 하였다. 생산자
의 자가소비 및 직접수출액과 실수요자수입액은
가중치의 모집단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그것은 국
내에서의 재화의 흐름을 수반하지 않았으므로 국
내의 시장경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계절품목으로 거래량 및 품질의 변화가 극

단하게 심한 야재와 선여개류 그리고 간행물
부동산, 예술품 가정용전력등의 거래는 기술적
또는 개념적으로 파악하기 곤란하고 비교성 있
는 가격자료의 수집이 어렵기 때문에 가중치의
모집단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우리나라 소비자물가지수에서 가중치사정의 모
집단은 기준시의 가계소비지출 총액이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도시지수와 아울러 도시별(10대
도시) 지수가 작성되므로 전도시의 모집단은
전도시 가계조사표상의 소비지출총액이며, 도시별
모집단은 도시별 소비지출총액이다. 여기에서도
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않는 주택소유가구의 「지
불집계」 자가평가액과 현물지출은 가중모집단에
서 제외하였다.

나. 품목카바레지 (Item Coverage)

물가지수 품목도 표본으로 선정하게 된다.

-44-

수천, 수만가지나 되는 품목을 전수로 조사한다는 것은 사무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며 또 그럴 필요도 없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물가지수 품목은 각 품목의 비중이 다르므로 유의표본방법 (purposive sampling method) 인 절사법 (cut off method) 으로 비중이 현저하게 큰 품목만을 대상품목으로 추출한다. 가중모집단에 포함된 전품목을 해당금액의 크기 순으로 나열하여 높고 가중모집단금액에 대한 일정한 비율이 되는 점에서 절사하여 그 절사점 (cut off point) 이상의 품목은 원칙적으로 지수품목이 되고 그 이하의 것은 절사시키는 방법이다. 품목가비레지란 가중모집단에 대한 지수에 포함하는 품목의 해당금액 비율을 말한다. 즉 예를 들어서 가중모집단금액이 10,000,000 원인데 지수에 포함시킬 품목의

금액이 8,500,000 원이라면 이 지수의 품목카바레지는 85%가 되는 것이다.

품목카바레지는 지수품목수를 많이 할수록 늘어난다. 그러나 중요도가 큰 품목부터 차차 적은 품목으로 내려가면서 일정한 기준선에서 절사한다면 비교적 적은 품목수로도 카바레지는 현저히 높게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카바레지와 가격조사 업무량을 동시에 고려하여 절사기준을 정하게 되는 것이다.

각 품목이 차지하고 있는 중요도의 일정기준에서 지수품목을 결정한다. 치더라도 물가지수의 종류에 따라서 또한 경제구조가 다른 국가간에는 품목수에 있어서 차이가 크다. 일반적으로 산업이 발달하고 소득수준이 높은 국민경제에서는 대상으로 하는 품목수가 많고 반대의 경우는 비교적 대상으로 하는 품목수가 적으므로

전자의 경우에는 가중치가 비교적 많은 품목에
산포되고 후자의 경우는 소수 품목에 집중되어 있
는 것이다. 이의 좋은 예로 우리나라 전국도매
의 전도시 소비자물가지수에 있어서 똑같이 품목
별 구성비 1만분의 1로 조사하였는데 전자의
품목수는 607이었고 후자의 것은 338 품목이었으
며 일본도 도매물가지수 품목이 소비자 물가지수보
다 많으며 도매, 소매 다 같이 품목수는 우리나
라보다 많으나 품목 카바레지는 품목수가 적은
우리나라의 경우에 더 높은 것을 들수 있다.

다) 가중치의 산정

가중치 편제작업은 물가지수개편의 주축이 되는
작업이다. 그것은 가중치 산정과 아울러 지수 품목,
대상지역의 비중등 전반적인 지수의 틀이 결정되
며 가격조사의 방향까지 제시되기 때문이다.

물가지수의 개편작업에서는 기준시의 가격과 가중치자료가 있어야 하므로 항상 지수의 기준이 되는 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 지게 된다.

따라서 1970년 기준 개편지수는 1971년 상반기에 설계되었다.

이제 지수산출에 적용되는 가중치 다이어그램 (weighting diagram)이 확정되기까지의 작업절차와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하기로 한다.

첫째, 가중치를 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품목분류를 한다. 가중치의 기초자료는 지수의 종류에 따라 각각 다르나 단지 어느 자료이건 금액자료인 것만은 공통적인 점이다. 도매물가지수의 가중치자료는 거래액이지만 자료가 불비할 때는 흔히 출하액으로 대응하고 소비자 물가지수에서는 가계조사의 소비지출액 자료를 이용하게 된다.

둘째. 수집된 기초자료를 정리하고 가중집단을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지수의 대상이 되지 않은 품목은 제거하고 지수의 대상이 되는 부문중 기초자료에 누락된 품목이 있으면 보완시키며 이차적으로는 가격조사면에서 비교성 있는 가격계열수집의 가능성을 검토하여 불가능한 품목은 제거시킨다. 예로서 도매물가지수에서 간행물, 예술품, 극단한 계절품목등을 제거시킨 것은 비록 그들 품목이 도매물가지수의 대상이 되며 중요도에 상당하지만 지수산출을 위한 기초자료로 비교성 있는 가격의 수집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중모집단에서 제거시킨 것이다.

셋째. 가중모집단이 확정되면 질사점을 결정한다. 이 문제는 다른 지수와 관련하여 사전예기준을 고집시켜 좋은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수의 대표성 면에서 품목카바테지(분류별로도 고려한다) 가격조사업무

량면에서 지수에 포함될 품목수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절사기준을 낮출수록 품목카바레지는 커지나 절사기준이하에 속하는 품목의 비중은 아주 작으므로 품목카바레지를 조금 크게 하려면 막대한 수자의 품목을 더 포함하여야 된다.

넷째, 절사기준이 결정되면 전품목에 대한 구성비를 계산한다. 이때 계산 단위는 계산 중에 발생하는 오차를 작게 하기 위하여 가중치의 단위보다 최소한 한자리정도 더 잡는 편이 좋다.

다섯째, 절사기준이하로서 지수계산에서 제외된 품목이 차지하고 있는 고유가중치 (earned weight) 를 재용 품목에 귀속 (imputation) 시킨다. 이것이 가중치 산정작업 중 가장 복잡하고 근거자료의 수집 및 분석

등 시간과 노력을 요하는 과정이다. 흔히 제
의될 품목의 고유가중치는 재용품목중 동종, 또
는 유사품목에 부가시킨 다른가 해당 소분류에
그것이 적합치 않을 때에는 중분류 또는 대분
류등급에 비례배분시킨다.

여섯째, 재외품목의 고유가중치 귀속작업이
끝나면 분류별 품목별로 계산중 발생한 단수점
치오차 (Rounding error) 를 조정하여 가중치
를 정리하고 총횡으로 내용과 계 또는 평균을
검사한 다음 지수의 시산을 하게 된다.

(라) 내부가중치 (internal weight)

앞절에서는 외부로 주어 지는 가중치의 산정
에 대하여 살펴 보았으나, 지수의 계산에서 나
타나는 가중효과는 품목별로 주어 진 가중치
이외에도 가격의 합성과정에서도 나타 난다.

품목별로 조사지역 및 조사대상처수 및 가격의
합성방법등을 정함에 따라서 자동가중 (self-
weighting) 의 효과가 나온다.

지역별 지수와 종합지수가 작성되는 지수체계에서
/차적으로 지역별 지수가 산출되고 다시 지역가
중치로서 가중평균하여 종합지수가 유도되는 경
우가 별문제이나 전체조사가격계열을 단순 평균
하거나 지역별가격으로 평균하는 경우에는 지역
별 가격수나, 지역별로 해당품목조사의 취부가
고려되어야 한다. 즉 특정품목의 가격이 A도
시에서는 4개 대상처에 조사되고 B도시에서는
2개 대상처에서만 수집된다면 전체조사가격으로
단순평균하는 경우 A 도시는 B 도시보다 2배의
지역가중치가 작용된 효과가 된다.

마. 실질가중치 (Relative Importance)

품목별로 부여하는 가중치와 내부적으로 작용하는 가중치는 기수의 기준 실점시에 고정되는 것이나 한편 횡적으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각 품목간에 등가등치율의 차가 생기면 등치율이 큰 품목의 가격지수 (price Relative) 는 상대적으로 높게 되고 이것이 평균수준보다 높게 되면 해당 품목의 등치가 해당분류 또는 총지수 (등가)면에 미치는 영향은 주어진 가중치 보다 큰 효과로 나타나게 된다. 이와 같이 개별품목지수 수준의 차에 따라 기준시의 고정가중치와는 다른 내부적인 가중치를 실질가중치라고 하며 아래의 식으로 계산된다.

$$R. I_i = \frac{P_i w_i}{I} = \frac{P_i w_i}{\frac{\sum P_i w_i}{\sum w_i}}$$

단 $R. I_i$: i 품목의 실질가중치

P_i : i 품목의 가격지수

I : 총지수

W_i : i 품목의 가중치

물가지수의 실질가중치는 해당기준패턴이 변화되어가는 상위의 재조 검사하기 위하여 최소한 년도별로 계속 정리하여야 하며 파케검정피 아울러 지수의 타당성이나 개편의 필요성을 검정하는 자료로서 이용한다.

(5) 품목 및 품질규격 (Item and Specification)

가중치 산정작업이 끝나면 지수에서 대상으로 할 품목이 확정된다. 그러나 품목명칭만으로는 계속적으로 비교성 있는 가격자료를 수집할 수 없다. 그러므로 품목을 품종, 품질, 무게, 크기, 성능 등 가격결정요인이 될수 있는 모든 요소로 세분하여 품질규격을 정해야 한다.

물가지수는 물가의 변동을 측정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순수한 가격변동이 아닌 품질구력의 변화에 의한 가격차가 생기면 안된다. 예로서 고두신이 지수대상품목으로 포함되어 가격조사를 할 때에 타연히 고두신의 가격이라면 시점간에 비교성 있는 가격이 수집될 수 없다. 한 시점에서는 남자고두신을 조사하고 다른 시점에서는 여자고두신을 또 다른 사이즈 다른 색깔 등으로 고두신 가격을 조사한다면 그 가격 계열에서는 가격의 변동을 측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고두신 남가용 255 mm 왕자문 검은색 등 가격이 달라질 수 있는 요인을 세밀히 구분하여 놓고 일정한 품질구력에서 비교성 있는 가격의 수집을 도모하여야 한다.

지수에 포함된 품목의 선정기준은

첫째. 전 가중도집단에 대하여 갖는 품목의 증

요도가 큰 것, 둘째, 가격변동의 양상에
대표성이 있는 품목이며, 품질구격은, 첫째, 동
일품목내의 여러 품질구격중에 비중이 크고 가
격의 흐름이 유사하여 품목전체를 대표할 수
있어야 하며 둘째, 가격조사의 계속가능성등
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물가지수에서 대개 1품목, 1품질구
격으로 가격조사를 하고 있으므로 물가의 변동
상태를 잘 반영시키자면 품질구격의 선정에 있
어 특히 유의 취리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될
것이다.

물가지수조사에서 가장 큰 오차를 발생시킬 수
있는 부분이 품목과 품질구격이다. 그러므로
이와 관련된 추출오차 (Sampling error) 와
동질성오차 (Homogeneity error) 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추출오차 (Sampling error) 와 동질성오차
(Homogeneity error)

물가지수에는 산식오차와 함께 추출오차와 동질성오차가 있다. 산식오차는 물가지수계산식에 있어서 완전한 식이 없는 한 부득이 나타나는 오차이며 선정오차는 생산, 유통, 소비되는 상품과 용역전체의 가격을 취급하지 않고 일부 대표적인 품목만을 지수의 대상으로 하는 한 부득이 발생하는 오차이다.

그리고 동질성 오차는 가격조사의 계속이 불가능할 때 동종 또는 유사품목이나 품질규격으로 대체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오차인바 물가지수의 오차중 가장 문제시 되는 것이 바로 이 동질성오차인 것이다.

기준시 현재로 정하여 좋은 품목이나 품질규격에 변동이 없으면 동질성오차는 발생하지 않

는다 또한 그러나 산업이 성장하고 발달됨에 따라 최종 소비자의 기호에 따라 상품의 품질이나 형태 등이 빈번히 변화되어 가고 있으며 대상으로 하고 있는 품목이나 품질수격이 시장에서 퇴장되고 새로운 품목 품질 수격이 출현하였을 때에는 불가피하게 품목 및 품질수격의 대체작업이 이루어 진다. 이것은 구품이나 품질수격이 시장에서 완전히 퇴장하자 않았다 할지라도 새로운 품목이나 품질수격이 출현하여 대중성을 갖고 있을 때에도 문제가 된다.

(나) 품목 및 품질수격의 대체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품목 및 품질수격을 대체하여야 할 때에는 적당한 기간동안 구품목(품질수격)과 신품목(품질수격)과의 가격수준과 가격동태를 비교

하여 구가격과 신가격을 연결하게 된다. 즉 품목 (품질구격)을 대체함으로써 가격은 연속이 되지 않으나 지수를 연결시키는 작업이 필요하게 된다. 품목 및 품질구격의 대체작업에는 대개 아래와 같은 방법이 이용된다.

(i) 직접대체법 (Direct Substitution) 간의 상품의 포장방법이나 외판상의 약간의 변형등 품목의 사소한 부수적인 특징의 변화는 본질적인 가격결정요소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즉 점이 빨간 색종이로 포장되었던 것이 노란 색종이로 바뀌었다던가 품질에는 별차없이 상표가 달라졌던가 하는 변화를 말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수정을 가하지 않고 새로운 품목 (품질구격)으로 대체함으로써 두 품목의 가격차 전부가 물가지수에 반영되도록 처리하는 방법이다.

(ii) 접속법 (Splicing)

접속법 (Splicing)은 직접 대체를 할 수 없는 실질적인 품질변화가 일어났을 때의 해결방법이다. 즉 신규 두품종이 동시에 한 시장에서 거래되며 또한 충분히 경쟁적일 때 쓰인다. 이 방법은 전속할 시점에 있어서 시장에서 성립된 신품종의 가격(p_{bt})과 구품종의 가격(p_{at})의 비교로 구품종의 기준시 가격(p_{at})을 조정하여 신품종의 가상기준시가격(p_{bt})을 계산하라.

$$P_{b0} = P_{a0} \times \frac{P_{bt}}{P_{at}}$$

실제로는 한 상품이 여러가지 품종중에서 지수의 미묘계열로 선택된 품종이 점차로 시장에서 중요성을 상실하고 경쟁적인 다른 품종에 의하여 대체되는 경우가 많아 이 방법이 흔히

이용되고 있으며 지난번 ECAFE 및 UN 통계처에서 추계된 물가 및 물량통계세미나에서도 품종대체의 처리방법에 있어서는 이 방법이 가장 실용적이고 또 간단한 방법이므로 ECAFE 지역의 국가에서는 주로 이 방법에 따르기로 합의한 바 있다.

(iii) 생산비 접근법 (production cost approach)

접근법은 신규 양품종이 동시에 한 시장에서 충분히 경쟁적이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에 합당할 때 쓸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때로는 경쟁적이지 아닌 조건하에 일제히 신품종으로 대체될 때가 있다. 실례로는 1963년초에 정부의 지시에 따라 전국의 침주 주요업자가 특급주(순곡주), 1급주(70% 곡주, 30% 합성주) 2급주(순합성주)의 등급을 버리고 곡주 50%와 합성주 50%를 혼합한 단일주 제도를

실시했을 때를 들수 있다. 이러한 때에는 품질의 차가 생산비의 차에 비례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신제품의 생산비 (C_{bt})의 비가 ($\frac{C_{bt}}{C_{at}}$)로 구품종의 기준시 가격 (p_{20})을 조정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IV) 등가 지수 (Hedonic index)

등가 지수 (Hedonic index)란 품질변화가 일어난 품목의 신구두품종 (즉, 품질변화전에 지수에서 대상으로 한 품종과 변화되어 새로 출현한 품종)에 관하여 각각 측정할 수 있는 중요특정치 (characteristics)를 평가함으로써 얻어지는 품질변화를 조정하기 위한 요인의 특성치이다. 이 지수는 품질변화전후의 두 품종간의 측정가능한 중요특성상의 차 즉 성능치의 경우를 예로 들면 신구형의 모터 (motor)의 마력, 무게, 구조, 성능, 사용원재료의 성질등의

차이에 기인한 가격차를 결정하여 주는 것이다.

이때 검토의 대상이 되는 각 특성은 그
상품의 시장가격을 각속성의 함수로 나타 내는
방정식에서 계산되며 이 함수관계는 두 품종이
동시에 그리고 동일 시장에서 매매될때 각 품
종의 시장가격과 그것이 가지고 있는 속성의
크기에 관한 자료에서 유도된다.

「시카고」 대학의 Zvi Griliches 교수가 승용
차에 대하여 시산한 가격과 특성치 간의 상관
관계는 아래와 같은 방정식으로 표시되어 있다.

$$\log p = 0.365 H + 0.111 W + 0.192 L - 0.054$$

V - K

단 P : 정가 (list price)

H : 제동마력 (100 HP 단위)

W : 적재중량 (1,000 lb 단위)

L : 길이 (10 inch 단위)

V : 음변수 (dummy variable) 로서 엔지니어

V 형 8기통일 때는 $V = 1$, 6기통일 때는

$V = 0$

K : 상수

이 방법은 신구품종의 가격차를 여러가지면에서 분석하여 종합적으로 나타낸 품질변화의 경제적 가치 (9) 로써 일차적인 조정을 한다음 점측방법으로 신구품종을 연결하는 방법인바 이론적으로 타당하나 복잡한 분석과 이에 따른 자료수집등 업무의 번잡으로 별로 실효성은 없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이 방법을 응용한 예가 없나 ECAFE 세미나에서도 품질변화 처리방법에서 이러한 방법은 실용성이 없는 것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6) 물가지수의 계산

물가지수의 계산에는 여러 기준시 표점가중 산술 평균법인 「라스파이레스」 (Laspeyres) 산식이 사용되고 있다. 왜냐하면, 가중치를 적용하여 지수를 산출하는 가중산식중에서는 이 「라스파이레스」 산식만이 가장 적은 범위의 자료로서 간편하게 계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번 ECAFE 주최 물가 및 물량통계 세미나에서도 물가지수 계산식에 대하여 국민소득 계정의 「디플레이터」 (deflator) 로 이용되는 물가지수는 원칙적으로 파셰지수 (Paasche index) 이어야 함을 확인하였으나 실무면에서 볼때 파셰지수의 계속적인 작성은 불가능 함으로 우선 「라스파이레스」 산식을 이용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제 물가지수의 작성에 이용되는 계산식을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가) 단순평균법 (Simple average method)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는 단순 평균 방법이다.

여기에는 단순산출평균, 단순기하평균, 단순조화평균 방법이 있다.

물가지수의 대상품목은 각기 차지하고 있는 중요도가 현저히 다르므로 선 품목의 비중을 동등시 하는 이 방법은 흔히 쓰이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시초지수인 1910년 기준 도매물가지수에서 단순산출 평균법을 사용하였고 1936년 기준 도매 및 소매물가지수에서 단순기하평균법을 사용하였으나 1947년 기준지수부터는 계속 가중치를 부여하고 가중평균법을 적용하고 있다.

(나) 가중평균법 (Weighted average method)

가중평균법에도 가중산출평균법, 가중기하평균법

가중조화평균법등이 있으나, 실무에서는 전반적으로 계산이 가장 간편한 가중산을 평균법을 사용하고 있다.

(i) 「라스파이레스」 산식 (Laspeyres formula)

19세기 독일의 경제학자인 「라스파이레스」 (Laspeyres) 가 만든 산식으로서 이 산식은 기준시 고정가중산을 평균법이라고도 말하며 전세계적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산식이다.

이 지수의 특색으로는 첫째, 기준시의 고정된 가중치를 사용한다는 것, 둘째, 지수계산을 위하여 계속 수집할 자료는 비표시의 가격자료뿐이라는 점

셋째, 따라서 지수계산이 간편하다는 점

넷째, 그러나 상황성편의 (upper bias) 를 갖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산식의 편기성은 완전한 물가지수가 없는 한 이 산식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모든 공식이 내포하고 있는 공식오차 (Formula error) 인 것이다.

$$IL = \frac{\sum_i P_{ti} Q_{oi}}{\sum_i P_{oi} Q_{oi}} \times 100 = \frac{\sum_i \frac{P_{ti}}{P_{oi}} P_{oi} Q_{oi}}{\sum_i P_{oi} Q_{oi}}$$

(a) (b)

$$\times 100 = \frac{\sum_i \frac{P_{ti}}{P_{oi}} W_{oi}}{\sum_i W_{oi}}$$

단 IL : 「라스파이레스」 산식으로 계산된
지수

P_{ti} : i 품목의 t 시점 가격

P_{oi} : i 품목의 기준시 가격

Q_{oi} : i 품목의 기준시 물량

W_{oi} : i 품목의 기준시 가중치

$$W_{oi} = P_{oi} \cdot I_{oi}$$

위 산식에서 (a) 식을 「라스파이레스」의 가중 총화산식 (weighted aggregate method) (b) 식을 가중상대법산식 (weighted relative method) 라고 부른다. 실무에서는 흔히 계산에 간편한 상대법 산식을 이용하나 뉴지랜드의 소비자물가지수와 같이 품목별, 비목별 지출액을 비교점 토하여 지수를 작성하는 체제에서는 가중총화법산식을 사용하게 된다.

ii) 파체산식 (Paasche's formula)

19세기 독일의 경제학자인 파체 (Paasche) 에 의하여 작성된 산식으로서 「라스파이레스」 산식에 기준시 고정가중치가 적용되는 반면에 비교시의 패턴에 의한 각기 다른 가중치가

적용되며 또한 「라스파이레스」 산식에 의한
지수는 상향성편기 (upper bias) 를 갖는
반면 여기에서는 하향성편의 (downward bias)
가 있으므로 「라이파이레스」 산식과는 반대
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산식이다.

그러나 「파쇄」 산식에서는 비교시의 가격
자료뿐만 아니라 물량자료까지 요구하기 때문
에 실무에서는 흔히 사용되지 않고 「라스파이
레스」 산식으로 작성되는 지수를 점정하기
위한 「파쇄」 점정의 도구로 사용된다.

$$I_p = \frac{\sum_i P_{ti} Q_{ti}}{\sum_i P_{oi} Q_{ti}} \times 100 = \frac{\sum P_{ti} Q_{ti}}{\sum P_{ti} Q_{ti} \frac{1}{\frac{P_{oi}}{P_{ti}}}} \times 100 =$$

$$\frac{\sum W_{ti}}{\sum W_{ti} \frac{1}{\frac{P_{oi}}{P_{ti}}}} \times 100$$

단, I_p : 「파체」 산식으로 계산된 지수

B_{ti} : i 품목의 t 시점들량

w_{ti} : t 시점의 가중치 $p_{ti} \cdot q_{ti} = w_{ti}$

변형된 양상대법산식을 보면 「라스 파이레스」 산식은 기준시와 비교시의 가격비율 (price relative) 의 가중산을 평균이므로 「파체」 산식은 가중조화평균산식임을 알 수 있다.

(iii) 에머슨 산식 (Emerson's formula)

에머슨 (Edgeworth marshal Emerson)

에 의하여 제안된 산식으로서 「라스 파이레스」 산식에 상향성 편기와 「파체」 산식에 하향성 편기가 있으므로 이것을 기준시와 비교시의 물량을 평균하여 대입함으로써 편기를 제거하려고 시도한 산식이다.

산식상으로는 우수하나 자료수집의 곤란성 계산의 복잡성으로 실무에서는 흔히 사용하지 않으며 연구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IE = \frac{\sum p_{ti} (g_{oi} + g_{ti})}{\sum p_{oi} (g_{oi} + g_{ti})} \times 100$$

(14) 「윗셔」의 이상식 (Fisher's ideal formule)

물가지수의 산식에는 완전한 것이 없고 각 기 평가를 내포하고 있는 바 「라스파이레스」 산식은 상향성 평가, 「피체」 산식은 하향성 평가를 지니고 있다.

이 평가를 제거하려는 의도에서 기준시와 비교시의 물량을 산술 평균하여 적용하는 「에머슨」 산식이 등장하였다.

윗셔산식은 「라이파이레스」 지수와 「라

체」 지수를 기하평균하는 것으로서 각종 지수
 산식의 테스트에 즉 순환 테스트 (Circular
 test), 시점전역 테스트 (time reversal test),
 요소전역 테스트 (Factor reversal test) 등
 모든 테스트에 합격하는 산식으로써 아직까지
 등장된 산식중에 가장 우수하고 이상형이라 하
 여 「윗셔」의 이상식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
 상식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사실과 부합하는 정
 확한 지수가 산출되는 산식이라고 생각하여서는
 안된다.

$$I_F = \sqrt{\frac{\sum_i P_{ti} Q_{oi}}{\sum_i P_{oi} Q_{oi}} \times \frac{\sum_i P_{ti} Q_{ti}}{\sum_i P_{oi} Q_{ti}}} \times 100 \sqrt{I_L \times I_P}$$

이것은 가장 우수한 산식이기는 하나 요구되는 자료의 범위와 계산의 복잡성으로 실무에서는 흔히 사용하지 않고 지수개편에 따른 과거계열의 연결작업이나 특수연구목적으로 흔히 사용된다.

3. 가격 조사

3. 가격조사

가. 가격조사의 곤란성

물가지수를 작성하는데 사용되는 기초자료는 바로 품목별 가격이다. 가격의 움직임을 종합하여 나타낸 것이 물가지수임으로 올바른 물가지수를 산출하려면 무엇보다 가격이 정확하게 포착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물가통계분야에서는 1. 기본적인 자료를 수집하는 가격조사면에 노력을 치중하게 된다.

물가조사라 할지라도 단순히 품목별로 가격의 움직임을 본다면가 내용품질에 별로 구애됨이 없이 단가 (unit cost) 를 조사한다면 별로 문제가 적겠지만 물가지수 산출의 기초자료로서 가격을 제공할 때에는 품질의 변화에 따른 가격변동요인이 포함하지 않은 순수한 가격의 움직임만을 포착하여야 하며 기타 물가지수에서 필요로 하는 형식의 가격

을 제공하여야 되기 때문에 세밀한 조사지침에 따라야 될 것이며 조사업무와 지수산출업무와는 유기적인 연결과 협조가 되어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점간에 비교성있는 가격 제열이 수집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세밀하고 엄격하게 조사요령이 정해지기 마련이다. 품목, 품질 규격, 조사지역, 조사대상처, 조사시점등을 엄격히 정하여 놓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물가지수에서 필요로 하는 비교성있는 가격을 수집하기 위하여서이다.

가격 자료의 수집은 금액이나 물량 자료보다는 수집하기 용이하다고 본다. 그것은 가격은 판매하기 위하여 노출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판매금액이나 판매량 자료보다는 답변을 구하기 쉬운 것이다.

그러나 단가조사가 아닌 품질규격조사방법 (Specification Pricing method)에서는 조금씩 달라지는 품질의 변화는 가격조사원은 물론 그것은 취급하는 상인도

모르는 수가 많으며 또 안다고 할지라도 품질이 저하되었을 때에는 정확한 답변이나 설명을 구할 수 없다는 전반적인 곤란성이 있다.

이제 위에 말한 바와 같이 지수목적에 맞는 가격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취해지는 조사방법, 조사가격의 성질, 품목 및 품질구적, 대상처, 조사시점 및 빈도, 그외 계절품목의 특수처리방법, 가격의 합성방법 등, 구체적으로 살펴 보기로 한다.

나. 조사방법

지수를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로하는 품목별 가격자료는 정확하게, 신속하게, 손쉽게, 그리고 계속적으로 수집되어야 한다. 그러한 점을 고려하여 조사방법이 정해져야 될 것이다. 여기에서 논의할 수 있는 것은 가격조사를 자체식으로 할 것인가 타제식으로 할 것인가 또는 우편조사방법을 취할 것인가 면접식으로 할 것인가 등이다.

자계식으로 조사를 하면 가격조사 대상처에서
시점별로 품목별가격을 기입하게 됨으로써 조사기
관에서는 인력,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가격보고자가 물질주체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되어 있는가 그리고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성의있
는 정확한 기입을 기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점
이 있다.

또한 면접조사를 할 것인가 우편조사로 할 것인
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면접조사를 하자면 자계식
이 되고 우편조사를 하자면 자계식이 되므로 자계
식 조사와 면접조사, 자계식 조사와 우편조사는 같은
성질의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나 엄밀하게 구분하여
보면 자계식으로 조사표가 기입되었다 할지라도
조사기관에서 조사표를 수집하는 경우와 가격보고자
스스로가 우편방법으로 조사표를 수발하는 경우와는
조사의 효과면에서 차이가 많을 것으로 구별하여

생각하게 된다.

우편조사방법에 의할 때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조사표의 회수율이다. 조사표가 회수되지 않으므로서 전품목의 가격이 정비되지 않고 또한 품목별가격이 정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각 품목가격의 합성(평균) 비용이 다른 때에는 앞에 말한 내부가중치 (*internal weight*)의 작용이 시점간에 다르기 때문에 지수목적에서 올바른 가격의 움직임을 나타내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회수되지 않은 조사표를 회수하여 평균가격을 정비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자면 시간과 많은 노력을 요하게 되어 신속하게 지수를 작성할 수 없는 단점이 있으며 그러면서도 조사지침이 경과한 이후의 질의조회 소급조사 등에 대한 신빙성은 일시에 조사되어 나오는 편보다 자료의 신빙성이 작은 것이다.

그러나 품질규격이 단조롭고 변화가 없어서 가격 조사가 비교적 쉬운 품목에 대하여는 통계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가 높은 나라에서는 자체식이나 우편 조사 또는 전화조사에 의하는 경우도 흔히 있으며 우리나라의 물가조사에서도 1970년 기준 개편지수 예서는 이 방법을 절충하여 가격조사의 효과와 노력의 절감을 꾀할 예정이다.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에서는 소비자물가작성을 위한 전국소매물가조사에서 각 도시별로 정격직 통계조사원을 배치시켜 해당품목을 취급하는 대상처를 방문, 면접타계식방법으로 가격을 수집하고 있다.

다. 조사품목 및 품질규격

물가조사에서는 모든 품목, 품질규격을 총망라하여 취급할 수 없기 때문에 표본조사방법을 취한다. 물가조사에서는 표본을 크게 3가지로 구분하여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품목 및 품질규격의 표본,
 (Sampling of item and specification) 조사지역 및
 대상처 표본 (Sampling of region and reporter) 그리고
 조사시점 (sampling of time) 의 표본이 있다.

전체 품목에 대하여 지수에서 대상으로 하는
 품목의 비율을 “품목 카바레지” 라고 하는 바 이것
 은 즉 품목의 표본비율이 되지만 특정 품목에
 있어서도 전품질규격을 취급하기 곤란함으로 대표품
 질규격을 정하여 놓고 해당품질규격의 가격의 움직
 임만을 지수에 반영시키게 됨으로 사실상 품목자체
 의 카바레지 (대표도) 보다는 대표품질규격이 어느
 정도 그 품목을 대표하느냐 하는 문제가 더 중요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품질규격은 대표성과 지속성의 면에
 기준을 두고 선정하게 된다. 대표성에 있어서는
 비중자체의 대표성과 가격변동의 대표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비중의 대표성은 특정품목에 있어서 해당 물질가격의 비중이 커야 된다는 것이며 가격변동의 대표성은 비중이 큰 해당물질가격의 가격변동이 해당되지 않는 다른 물질가격의 가격변동까지 대표함으로써 특정품목의 가격동향을 대표하여야 된다는 것이다.

비록 품목전체에 짐하는 비중은 작아서 조사대상 물질가격으로 선정되지는 않았으나 할지라도 가격변동의 양상이 대표물질가격과는 다른 경우에 그 품목의 가격을 대표시키자면 두 물질가격에 대한 상충을 대상으로 하여야 될 것이다.

다음 지속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물가지수는 어느 특정시점의 물가수준만을 제시하려는 것이 아니고 시점간 물가의 변동상태를 보여 주는데 큰 의미가 있으므로 아무리 비중이나 가격변동의 양상에 있어서 특정품목을 대표한다 할지라도 가격의

단속이 심하면 올바른 물가수준의 변동상태를 나타내기 힘들다. 그러므로 대표품질가격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대표성과 아울러 지속성을 선정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위와 같은 기준으로 선정된 품질가격의 가격은 해당품목의 가격변동을 대표하여 지수에 반영된다. 그러나 생산양태나 제조기술의 향상 소비자기호의 변화등으로 상품의 품질이나 규격은 부단히 변화되어 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산업이 급격히 발달되는 발전도상국가에서는 더욱 그러한 현상이 많이 일어나게 됨으로 기준시에 아무리 이상적으로 품목과 품질가격을 설정하여 놓았다 할지라도 때론의 변화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게 마련이며 부득이 지수에서는 품목이나 품질가격의 대체가 이루어지게 된다.

지수품목이나 품질가격의 대체방법은 “물가지수

작성"편에서 상세히 설명한 바와 같이 가장 실용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접속법 (Splicing)이다.

한편 접속방법으로 신구품목이나 품질구격을 연결할 때에는 연결시점에서 신구 두 품목이나 품질구격의 가격이 동시에 수집되어야 한다. 그러나 접속법을 사용하기 위한 양가격의 동시수집은 가격을 수집하는 업무자체보다도 그 시점에 있어서 신구 양품목이나 품질구격이 완전경쟁상태에 있어야 된다는 문제이다. 구 품목이나 품질구격이 거의 시장에서 퇴장될 때 부득이 신품목이나 품질구격의 가격을 이중으로 포착하며 연결한다면 그것은 형식적인 연결일뿐이며 해당지수계열은 부당하게 높아진 다던가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이것은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동질성오차 (Homogeneity Homogeneity error)를 훨씬 크게 하는 것이다.

신구 품목이나 품질구격을 연결시킬때 한 시점의

가격비교 만으로 작업을 한다는 것은 쉬운 귀찮은 일이며 일정기간내에서 양계열의 가격의 움직임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연결하여야 할 것이다. 지수의 대표기간이 월간이라면 해당월내에서 양가격계열의 움직임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된다.

선진국의 물가통제 담당기관에서는 품목 및 품질 가격의 관리, 유지문제를 전담할 중앙직권을 보유하고 물가조사에서 가장 까다롭고 중요한 품질가격 변동문제를 종합관리하고 있다.

라. 조사대상처

가격조사를 하자면 그 대상사업체가 있어야 한다. 특정품목에 대한 가격을 일정한 대상처에서 수집하여야 하며 만약 같은 품목이라 할지라도 대상업체를 달리하면 불연속가격이 나오게 된다. 이 문제는 기술적으로는 품질가격의 대체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게 된다.

조사대상처의 선정기준은 첫째, 대중성, 둘째, 지속성으로 일부의 표본으로 전체의 동향을 파악한다는 점에서 품질가격의 선정기준과 같다고 볼 수 있다. 대중성은 거래의 대중성을 말하는 것으로서 특정품목을 취급하는 여러 점포중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점포를 선정함을 말한다.

그러나 대중성이 있는 점포라 할지라도 지속성이 없으면 가격조사의 대상처가 될 수 없다. 일정한 선물에 속해있지 않는 노점이나 행상을 대상처로 선정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 지속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물가조사에서는 대상처를 위의 표본방법으로 선정한다. 특정품목을 취급하는 점포나 사업체가 많이 있을 것이다. 각 점포의 규모, 각 상품의 구비상태등, 여러형태로 나타나고 점포가 오랫동안 지속되리라고 보여지는 상태등 각양 각색

으로 구분할 수 있게 될것인바 그 중에서 가장 대중성이 있고 지속성이 있어 보이는 점포를 주의적으로 판단하여 선정하게 되는 것이다. 고급상품을 취급하는 백화점을 조사대상처에서 제외하는 것은 대중성의 결여라는 판단에서 취해지는 조치일 것이다.

미국과 같이 시장규모가 크고 점포의 규모가 표준화되어 있는 연쇄상 (Chain store) 들이 많은 여건에서는 대상처의 선정을 임의표준방법 (Random Sampling method) 에 의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거의 모든 나라에서 대상처의 선정은 유의표본추출 방법에 의하고 있다.

지수의 내부가중치 (internal weight) 의 역할을 하도록 대상처수를 결정할 수 있다. 즉 지역별 가중치의 비와 같게 지역별 대상처수를 정하여 전 대상처가격을 단순평균함으로써 자동가중시키는 방법

(Self weighting system)도 있다.

우리나라 물가조사대상처는 우선 각 도시의 가격을 대표하도록 선정되었으며 도시별 대상처수에서 전국에 대한 가중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다. 즉 도시내에서는 특정품목의 대상처수가 몇개가 되던 일만 도시별평균가격(지수)이 산출되고 다시 전국에 대하여 가중평균된다.

우리나라 도매물가의 대상처는 약 1000개소 사업체 소비자물가는 약 3800개 점포 및 영업소에서 가격을 수집하고 있다.

마. 조사가격

이 절에서는 지수를 작성하기 위하여 수집할 가격에 대하여 정리하여 보기로 한다. 물가지수작성에 사용될 가격은 지수의 성격에 맞는 가격으로서 정확한 수준과 정확한 흐름을 나타내 주어야 한다. 물가지수 작성기관에서는 가격을 지수로

바꾸어 나타내는 작업을 합과 동시에 부수적으로
 품목별 가격자료를 발표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한다.

한편 지수는 가격의 수준이 아닌 가격의 흐름을
 나타내 주는 것이므로 지속적인 가격의 동향이 바르
 게 파악됨으로써 바른 지수가 산출된다. 그러므로
 물가지수 작성을 위한 가격자료는 정확한 수준과
 정확한 흐름을 보이는 것이면 이상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가격의 수준과 흐름이라는 두가지 점을
 상대적으로 볼때 물가지수의 목적으로 절제 필요한
 것은 후차이며 가격의 수준이 평균적인 것이 아닐지
 라도 흐름만 올바르게 나타내 주면 된다는 것이다.
 왜냐 하면 물가지수는 가격의 흐름을 종합해서 나타
 내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위의 원리에 입각한 지수목적의 가격을 수집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조사요령이 정해진다. 조사가격의

비교성을 위하여 품질규격, 단위, 조사대상처등을 고정시켜 놓는 것이며 이것은 주로 가격의 흐름면 을 나타내기 위하여 고정시킨 것이지만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좀더 구체적으로 흐름과 알을려 평균수준의 포착을 꾀하는 방향으로 여러가지로 구분하여 조사될 가격을 명확히 하고 있다.

우리나라 도소매물가 조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조사될 가격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

첫째, 거래단계

도매물가는 일차시장(생산자판매가격)의 판매가격에 중점을 두고 그것이 불가능 할때는 일차시장에 가장 가까운 거래단계의 가격을 잡고 있으며 소매는 소매판매, 서비스물류에 대하여는 영업소에서 수집한다.

둘째, 세금의 포함여부

생산자판매가격의 수집에 주력을 두고 있으며

그것이 생산액의 데프레이터로 이용하는 목적으로 볼 때에는 원칙적으로 간접세를 제외한 가격이라야 하지만 편의상 전전되는 간접세를 포함하고 있으며 소매가격에서는 그것이 소비자의 부담을 측정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포함하고 있다.

셋째, 인도조건

수송비라는 다른 요소가 상품의 가격에 합성되지 않도록 도매에서는 공장인도가격으로 가정하고 있다.

넷째, 용기 또는 포장관계

용기에 들어 있거나 포장을 하여 판매되는 상품 은 거래습성에 따라 용기대 또는 포장료를 포함한 가격으로 조사하며 용기에 들어있지 않거나 포장이 되지 않은 채로 판매되는 상품은 그것을 포함하지 않은 가격으로 조사한다.

다섯째, 답변자

조사대상처가 고정되어 있어도 일정한 간격으로

상품과 가격을 알려주는 답변자가 달라짐으로써
가격에 불연속상태가 일어날 우려가 많다. 그러므
로 도매가격조사에서는 사업체에서 지정한 일정한
답변자를 통하여 가격을 수집하고 소매에서는 점포
주를 답변자로 정하고 있다.

더섯째, 이중가격

상품에 따라서 공정가격 또는 협정가격과 시장의
실제가격이 서로 다른 이중가격이 형성될 경우에는
사실상 거래에 적용된 가격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일곱째, 현금가격

호가와 실제거래가격과는 차가 있는 경우가 많으
므로 첫째 통정거래가 될 경우에는 예누리후의 실
제거래가격을 조사하게 되어 있으며 둘째, 외상
거래인 경우에는 흔히 상품가격이 아닌 재정서비스
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게 마련이므로 현금거래한

가격을 조사하게 되어 있다.

여덟째, 월부가격

의상거래에도 포함될 가능성이 많은 금리가 포함
되어 있는 가격이므로 우리나라에서는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특정상품에 대한 거래가 전적으로 월부로
만 이루어질 때에는 금리를 제외한 상품의 가격만
을 반영한다던가 그것도 곤란할 때에는 월부가격을
지수에 반영할 수도 있다.

아홉째, 특매가격

재해로 인한 이상가격, 폐업으로 인한 재고정리
판매 또는 선전판매등 특수가격은 조사하지 않고
조사대상처에서 정상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정상가격
을 대상으로 한다.

참고로 라틴아메리카제국의 소비자물가지수 실제시
에 거정한 조사가격의 성질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수집될 가격은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한 현금가격이어야 하며 특정시점에 해당 하는 가격이어야 한다. 모든 소비자에게 혜택이 가는 할인 가격은 지수에 반영한다. 물물교환은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파나마시에서는 가구에 대해서는 "클럽" (Club) 가격을 사용한다. 왜냐 하면 가계 조사결과 거의 모든 가구에서 가구는 월부로 구입하고 있음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특매가격 (Sales prices) 은 해당상품이 조사일을 포함하여 최소한 4, 5일전 부터 특매되고 있는 것이 아니면 물가지수에 반영하지 않는다 (가계에서 그 특매에 대한 혜택을 받는 기간을 어느 정도 두기 위하여), 소규모의 점포에서 계속적으로 특매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점포의 해당상품이 색깔, 사이즈, 그리고 스타일등 충분히 구색을

갖추고 특매될 때에만 가격을 조사하도록 규정하였다.

물가지수를 작성에 있어서 암시장가격의 처리문제는 세계제2차대전중에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 취급되었다. 전후에도 식량조달과 가격통제 등 문제로 당분간 존속되었으나 지금은 전반적으로 사라졌다. 라틴아메리카제국에도 현재는 암시장은 없다. 이론적으로는 암시장가격이 실제거래를 대묘한 것이므로 소비자물가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무적인 면에서 볼때 가격을 정확하게 포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수에 반영하지 못하였었다.

반면에 간격이 통제되고 있는 경우의 불법가격, 즉 최고통제가격보다 높은 가격은 소매상의 보고가 있을 때에는 지수에 반영된다.

라틴아메리카제국의 가격조사에서 야기되는 또다른 문제점은 정찰제가 실시되지 않는 점포 문제이다. 이러한 점포에서는 거래가 개별적인 흥정으로 이루어

어진다. 실제 거래된 가격은 상인이 판매처분 하려는 의욕에 따라서, 현찰의 필요성이나 상대방에서 얼마정도는 낼 것이다 하는 추측에 따라서 그리고 아침거래와 저녁거래에 따라서도 달라질 것이다. 그러므로 실제거래된 모든 가격을 정확하게 알수는 없다. 그러나 점포의 판매인은 정상이격, 최고호가, 최하판매가격, 그리고 가격조사일의 최종거래가격등을 알수 있다. 정찰가격이 아니고 흥정가격을 지수에 반영함으로써 일어나는 불정확도를 감안하여 「키토」시에서는 거래가 이루어진 최하가격을 조사하고 있으며 「파나마」시에서는 대부분의 소비자가 지불한 일반적인 가격을 조사한다.

바. 조사시점 및 빈도

대개 물가지수는 월별로 작성하고 있다. 그러나 월간을 대표하는 지수라고 해서 월간전기간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가격조사를 할 수는 없다. 그러므

로 월중에서 일정시점을 표본으로 잡아서 월을 대표하는 가격으로 조사하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1회의 가격으로 월을 대표할 수도 있고 2회, 3회, 또는 그 이상 회수의 가격으로 대표할 수도 있다. 조사하는 날짜, 요일, 시간 등을 조사시점이라 칭하고 대상기간중의 조사회수를 조사빈도라고 부른다.

우리나라 도매물가조사의 조사시점은 5일, 15일, 25일로 조사빈도는 월 3회가 된다. 소매물가조사에서는 품목별 가격변동성에 따라 변동이 큰 58 품목 (주로 식료품)은 월 3회 조사하며 2회 품목은 월 1회 또는 분기에 1회씩 가격을 수집하고 있다.

조사시점은 특정기간의 전체 거래가격에 대한 대표성이 있어야 한다. 흔히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상기간의 중위수 (medium) 에 해당하는 시점

을 선정하게 되는데 미국, 일본 등에서는 주일 중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 지고 요일까지 고려함으로써 이종호과를 피하고 있다.

일본 소비자물가의 조사시점은 매월 12일을 포함하는 주일의 수요일이나 목요일, 또는 금요일이며 특히 가격변동이 심한 생선과 채소품목은 연 3일 조사하되 위와 수, 목, 금요일중 어느날에 끝나도록 정하고 있다.

일본 이론에 입각하여 볼때에는 일반적으로 조사빈도는 클수록 좋다. 그러나 조사회수를 1회만 더 늘여도 그만큼 막대한 작업량이 생기며 따라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사빈도의 조정은 특정기간의 가격수준과 흐름을 대표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이론적인 그리고 경험적인 근거를 가지고, 조정하게 된다. 이를 위하여 우선 과거의 조사가격계열을 토대로 분석하여 볼 필요가

있다.

사 계절품목 및 가격의 특수처리

물가통계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처리하여야 될 문제로 계절성이 심한 품목과 가격의 취급문제가 있다.

일반적으로 지수의 품목별 가중치는 년평균 해당 금액의 구성비로 책정되는 바 계절성이 강할수록 년중의 월별평균편차는 크게 마련이다.

다른 말로 해서 계절성이 강한 품목은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크다. 계절성은 1년을 주기로

하여 변동하므로 년평균으로 나타낸 가중치는

년중에 변동하는 계절패턴을 반영하여 주지 못하

므로 해당품목 및 가격의 취급문제가 발생한다.

만약 배추, 무우 라든가 생선등 계절성이 강하고

극심한 가격변동을 보이는 품목의 가격에 일정한

가중치를 적용하면 지수전체에 부당한 오동을

가져오게 되며 정상적인 물가변동의 흐름을 나타내
주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극단한
계절품목은 상당한 비중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지수에 포함하지 않는다면 계절가중치를 적용한다.
던가 또는 가격을 반영하는 면에서 조정하고 있는
데 현재로는 대개의 경우 가격반영면에서 계절성을
조정하고 있다.

(1) 품목의 제거

극단한 계절품목은 가중모집단에 포함하지 않는
다. 우리나라 도매물가지수에서 채소, 선어제품목
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 것이 그 예이다.

(2) 계절가중치의 적용

년중의 계절패턴에 따라 변동되는 가중치를
적용하고 그 평균이 년평균수준과 같도록 세분된
가중치를 적용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전체품목을

대상으로 할수도 있으나 일본 소비자물가지수의 경우에는 문제시되고 있는 계절품목에 한하여 적용하고 있다. 즉 채소류, 선어개류, 과일류 등의 분류가중치는 월별로 다른 가중치를 사용한다.

뉴지랜드의 소비자물가지수에서는 월별가중치는 사용하지 않으나 정상계절패턴(Normal seasonal pattern)에 다른 기준가격을 사용함으로써 같은 효과를 내고 있다. 우리나라 소비자물가지수에서도 1970년 기준지수에서는 계절가중치를 적용할 계획이다.

(3) 가격면에서 조정하는 방법

(i) 물질 기간중 보합처리

시장출회가 되지 않는 품목, 출회가 되어도 극소량이 되어 품질로 간주되는 품목은 재출회 될때까지 최종가격을 계속 유지시키는 방법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지수에서는 이 방법

에 따르고 있다. 이 방법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품질기간중 보험가격을 유지시킴으로써 년평균가격은 직접 이용하기 곤란하나 년간 비교성을 갖도록 기준시 부터 일정하게 실지가격을 반영하는 기간과 보험처리하는 기간을 정해 놓아야 한다.

(ii) 지수계산에서 제거하는 방법

이것은 품질기간중 같은 소분류내의 타품목과 같은 비율로 가격이 움직인다고 가상하여 처리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년평균가격이나 년간변동율은 앞의 방법보다 예민하게 나타내 주겠지만 해당품목을 지수계산에서 제외할 때와 제외하였던 품목을 다시 포함할 시점에서 지수상에 갭(Gap)이 생긴다.

Ⅱ. 주요국의 물가조사요령

1. 우리나라물가지수개요

1. 우리나라물가지수개요

가 소비자 물가지수

(1) 연혁

소비자 물가지수는 일반소비자가 그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상품의 가격과 「서비스」 요금의 변동을 통계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소매가격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지수화하기 시작한 것은 1936년에 경성상공회의소에 의해서 실시된 것이다.

그후 1945년부터 한국은행의 전신인 조선은행이 이를 인수하여 1947년을 기준 시점으로 한 서울소매물가 지수를 가중총화상식에 의하여 작성하였으며 45년 8월 이후의 지수가 공식계열로 발표되었다.

이 때에는 가게에서 구입하는 상품만의 가격변동을 측정하기 위한 소매물가지수였으며 소비생활에 필

요한 「서비스」 요건을 포함하게 된 것은 1957년에 작업을 완료한 1955년 기준 서울소비자 물가지수였다. 55년 기준지수는 가중 산출평가지식에 의하여 작성되었으며 1960년의 소비「패턴」을 감안하여 다시 개편 작업을 한 바 있다.

그러나 60년 기준 서울소비자 물가지수만으로는 소비자 가격의 지역차를 파악할 수 없어 전국 주요지역의 경제발전 및 물가수준을 포착할 수 있도록 66년을 기준으로한 전도시 소비자 물가지수가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에 의해 67년도 부터 작성되었다.

이는 계속 최근의 소비「패턴」을 충분히 반영하고 제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성과를 평가 분석하는데 용이케 하기 위하여 70년을 기준으로 하는 지수 개편작업이 71년 ~ 72년 사이

에 진행 완료되었다.

(2) 지수의 성격

본 소비자 물가지수의 가중 모집단은 ① 농가 ② 여가 ③ 단독가구 ④ 가계수지 파악이 곤란한 가구등을 제외한 도시가구로서,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일반 재화의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종합적으로 포착할 수 있도록 작성된 지수이다.

(3) 기준시

본 지수의 비교 및 가중 기준시는 1970년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선정하게 되었다.

1)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라 가계소비 「패턴」이 현저히 변화했으므로 이에 부합되는 지수 작성이 필요하게 되었음.

2)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성과를 평가 분석하는데 용이하게 함.

(4) 가중치

1970년도 도시가계 조사인 가구 모집단
 (평균 5.48인 가구)의 1년간 소비지출 총액
 을 가중모집단으로 하여 품목별 소비지출액 구성
 비를 가중치 산정의 기초 자료로 하였음.

비목별 가계지출 구성비 비교

비 목	'65 기준	'70 기준
총 합	100.0	100.0
식 료 품 비	56.8	40.5
주 거 비	13.8	18.4
광 령 비	5.9	5.5
피 복 비	6.4	10.0
잡 비	17.2	25.0

(5) 품목선정 및 품질기여

지수 품목의 선정 기준은 품목별 지출 구성비가

총소비지출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1/10,000 이상인 것으로서 동종 상품의 가격변동을 대표할 수 있고 동일한 품질이 지속되어 연속성있는 가격을 수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여 선정된 품목의 수는 338 품목으로 5대 비부(식료품비, 주거비, 광열비, 피복비, 잡비)으로 분류되었으며 품목의 지출 성질에 따라 다시 37개 소분류로 분류하였다. (식료품비 → 14개, 소분류 주거비 → 6개 소분류, 광열비 → 3개 소분류, 피복비 → 5개 소분류, 잡비 → 9개 소분류)

특히 이번에는 「서서비스」 품목이 확충되므로 저 종전의 주거비중 수리임에 인분제거비, 숙박비를 합쳐 주거「서서비스」로, 종전의 기타 잡비중 구두닦이료, 양복수선비, 와이셔츠, 세탁비에 재봉료, 의복수선료, 신수선료등을 추가하여 피

복「서어비스」로 분류 조정하였으며 종전의 기타
잡비 분류를 폐지하는 대신 행정수수료중, 주민
등록초본, 호적초본, 병적증명서, 인감증명등을
추가하여 수수료 소분류를 신설하였다.(※표 참조)

비목별 가중치 비교

비 목	'85 기준	'70 기준
총 지 수	1,000.0	1,000.0
식 료 품 비	528.8	461.3
주 거 비	75.2	97.4
광 열 비	66.6	57.9
피 복 비	78.0	102.7
잡 비	251.4	280.7

도시별 지수품목수는 다음표와 같다.

도시별 품목수

도시	총지수	식료품비	주거비	광열비	피복비	잡비
전도시	338	123	54	7	54	100
서울	331	120	54	6	54	97
부산	322	118	45	7	54	98
대구	319	118	45	6	54	96
인천	318	117	45	6	53	97
대전	318	117	46	6	54	95
광주	315	115	44	6	54	96
전주	317	116	46	6	54	95
춘천	309	115	42	6	53	93
청주	307	110	45	6	54	92
기타도시	321	118	47	6	54	96

(6) 조사시점 및 빈도

-118~

대부분의 품목에 대하여 매월 3회 (5월, 15일, 25일) 조사한다. 다만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1) 영화관람료는 매월 1회

2) 학교 급업금 및 방제는 매분기 1회 (매분기 말월)

(7) 가격자료

전국 32개 도시에서 대중성 및 지속성등을 고려하여 선정된 약 3,800 소매점포 및 사업소에서 실시되는 선도시 소매물가조사를 통하여 기준자료가 수집된다.

지정된 조사일에 본권 소속인 47명의 조사원이 지정된 조사대상처를 방문하여 지정된 가격으로 실제 정상 거래되는 가격을 면접방법에 의하여 조사한다. 다음과 같은 비정상적인 가격은 조사하지 않는다.

1) 특정기간 이루어지는 판매가격

2) 재난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비정상 가격

3) 다량으로 거래되거나 수송의 상품을 같이 판매하는 가격

4) 중고품 가격이나 할부 판매가격

선어게, 채소, 과일등의 계절품목이 그 계절성으로 인하여 시장 출회가 불가능한 기간중에는 시장 출회가 가능할 때까지 최종 조사된 정상 가격으로 보합처리한다. 특히 식료품에 대하여는 가격 수준 및 변동의 지역차를 고려하여 한 도시내에서 품목당 2~5개 대상처에서 조사한다.

1) 집세 ; 도시가계조사 대상가구중 약 5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함

2) 증감조사품목 ; 전기료, 담배, 전화료, 신문대, 잡지등 전국적으로 단일가격이 형성되는 33개 품목은 본부인 물가통계과에서 직접 전화로 조사한다.

도시별, 품목별 조사대상처별 및 시점별로 수집된 모든 가격은 월별 지수계산을 하기 위하여 월별대포 가격을 도시별, 품목별로 계산하는 바,

첫째 ; 도시별로 보고된 2 ~ 5개의 품목별 가격을 단순 산술 평균하여 시기별 평균가격을 산출하고

둘째 ; 시기별로 평균된 3개의 평균치를 단순 산술 평균하여 월별 대포가격으로 한다.

(8). 품질가격

동일품목이라 할지라도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품질이나 가격수준은 다양하다. 따라서 계속적이고 비교성 있는 가격계열을 수집하기 위하여는 그 품질가격을 상세히 지정할 필요가 있다.

품질가격 선정기준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대중성 및 품질의 지속성등을 고려하여 지정을 하였다.

그러나 생산방법이나 기술의 발달등으로 상품의

품질은 계속 보이지 않게 변화한다고 볼 수
있다.

지정된 기본품질가격의 상품이 시장에서의 대중
거래성을 상실하고 새로운 품목이나 품질이 대중
적으로 거래될 때에는 새로운 가격으로 대체 또
는 변경할 필요가 있다.

이때 이용되는 방법은,

1) 직접대체법 ; 상품의 포장 방법이나 외관상의
약간의 변화 등 근소한 품질변화로써 신품질
로 직접대체

2) 점수법 ; 직접대체할 수 없는 상당한 품질
변화가 일어났을 때 처리하는 방법으로 변경
시점의 자수를 연속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품질
의 가장 기준가격을 산정한다.

$$P_0' = P_0 \times \frac{P_t'}{P_t}$$

p_0' ; 신품질의 가상기준시 가격

p_0 ; 구품질의 기준시 가격

p_t' ; 대체시점의 신품질가격

p_t ; 대체시점의 구품질가격

㉞ 산식

기준시 고정가중산술평균 (라스파이레스식) 에 의한다.

1) 전도시 지수산출

$$\frac{\sum \left(\frac{p_t}{p_0} W_i \right) W_a}{\sum W_a} \times 100$$

p_t ; 도시별 품목별 비교시 가격

p_0 ; 도시별 품목별 비교시 가격

W_i ; 품목별 도시간 가중치

W_a ; 전도시의 품목별 가중치

2) 도시별 지수산출

$$\frac{\sum \frac{P_t}{P_0} WC}{\sum WC} \times 100$$

P_0 : 품목별 기준시 가격

P_t : 품목별 비교시 가격

WC : 품목별 가중치

(10) 공 표

서울 --- 매의월 / 일 (소비자물가속보)

전도시 --- 매의월 한국통계월보에 게재 공표함

※ 신수지수 분류비교

'85기준분류		'70기준분류	
총 지 수		총 지 수	
식료품비		식료품비	
곡 물	—————→	곡 물	
유 류	—————→	유 류	
선 어 개	—————→	선 어 개	

'85 기준분류		'70 기준분류	
염 건 어 개	→	염 건 어 개	
유 란	→	유 란	
채 소	→	채 소	
조 미 료	→	해 초	김, 미역
가 공 식 품	→	조 미 료	마늘
파 심	→	가 공 식 품	
파 자	→	파 심	참외, 수박
음 료	→	파 자	
주 류	→	음 료	
외 식	→	술	
외 식	→	외 식	
주 거 비		주 거 비	
지 불 집 세	→	집 세	
수 리 재 료	→	수 리 재 료	

'85 기준분류		'70 기준분류	
가 구 집 기	/	가 계 응 품	
수 도 료	/	가 구 내 구 재	라디오, 캐비닛, 재봉틀
수 리 비	/	수 도 료	
광 열 비	/	서 어 비 스	인분제거비, 속박료
전 기 료	—	광 열 비	
연 료	—	전 기 료	
기 타 광 열	—	연 료	
피 부 비	—	기 타 광 열	
의 부	→	피 부 비	
작 물	→	의 부	
신 밭	→	작 물	
장식구밧기타	→	신	수건
		장식구밧기타	수건
		서 어 비 스	주주큐이, 세탁비 (양복, 와이셔츠)

85기준분류		170기준분류	
		서어비스	주거비에 해당
잡비		잡비	피부비에 해당
보건의료	—————→	보건의료	
미용위생	—————→	미용위생	
교통	—————→	교통	
통신	—————→	통신	
교육	—————→	교육	
문방구	—————→	문방구	
교양오락	—————→	교양오락	
담배	—————→	담배	
기타잡비	—————→	수수료	신원

4. 도매물가지수

(1) 연혁

한국은행의 도매물가 지수는 1910년에 처음으로 편제된 이후 수차례의 개편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10년 7월부터 편제된 물가지수는 30개 품목에 대한 단순산술평균법에 의하여 산출되었으며 1936년, 47년, 55년, 60년, 65년 기준으로 5차례의 개편을 거치는 과정에서 탈전을 거듭하여 왔는 바, 품목수도 65년 기준 자수에 서는 473개로 증가되었고 산식에 있어서는

1936년 기준지수의 단순기하평균법은 거쳐서 1947년 기준지수 부리는 세계각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기준시가중산술평균법으로 발전하였다.

또한 분류체계에 있어서도 1955년 기준지수부리는 대, 중, 소 분류 및 특수분류등 다양한 분

류제계를 지나게 됨으로써 파격의 총지수 중심이
위에도 부문별로 물가의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
게 되었다.

한편 55년 기준지수부터는 매 5년마다 지수
를 개편하여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하여 왔는
바, 65년 기준지수도 5년 이상 계속되어 지수
가 상당히 노후화 되었다. 지수의 노후화로 인
한 현실과의 괴리정도를 측정키 위하여 70년
현재로 「파아체 · 체크」를 하여 보면 총지수의
괴리는 2.1%에 불과하였으나 기계 및 그 부분
품에서 11.2%, 섬유 및 그 제품에서 10.3%,
연료 및 전력에서 6.4%의 괴리를 나타내어 기
별에 따라서는 일반적인 괴리허용 한계인 $\pm 5\%$
를 초과하였다. 따라서 최근년의 경제구조를
70년으로 하는 물가지수의 개편이 요청되는 바,
새로이 개편된 1970년 기준지수의 특징을 보

변 다음과 같다.

1) 경제성장에 따라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품목의 다양화 경향이 반영되어 가격조사 품목 수가 증진의 473 품목에서 607 품목으로 대폭 증가되었으며 품목에 따라서는 복수의 품질가격을 채택하여 품질 및 가격의 다양화 현상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였고,

2) 분류면에서 고도화된 산업구조를 반영하고 물가동향의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기본분류와 특수분류를 대폭 개선하였고

3) 조사지역도 지방산업의 성장을 반영하여 현재의 한국은행 본지점 소재 10개 도시이외에 5개중 소도시를 추가하였다.

한편 신지수의 연결은 이용자들이 장기간 지수비교를 쉽게할 수 있도록 1960년 1월까지 소급되었는 바, 접속시점으로 1970년

연평균지수를 택하였다.

<표 1> 도매물가지수의 편제방식 변경

	1970년 7월 기준 지수	1963년 기준 지수
산 식	단순산술 평균법	단순기하평균법
품 목 수	30	80
가중치추계(또 는 품목선정)	유 의 선 정	유 의 선 정
기 초 자 료		
기 준 시 점	1910. 7	1936
조 사 지 역	서 울	서 울
조 사 빈 도	미 상	미 상
기 본 분 류	대분류 2(생산 품과 수입품)	대분류 10
특 수 분 류	-	-
산 출 기 간	1910. 7 ~ 1945. 6	1936. 1 ~ 1949. 4

	1947년 기준지수	1955년 기준지수
산	가중 총 화 법	기준시 가중 산술 평자 법
품 목 수	45	199
가중치추계(또는 품목선정)	관계기관의 행정통계	한국은행의 "공업 및 제조업 사업체 조사"
기 초 자 료		
기 준 시 점	1947	1955
조 사 지 역	서울	10개 도시
조 사 빈 도	주간 회	월3회(음산식응품 월6회)
기 본 분 류	대분류 10	대분류 10, 중분류 34, 세분류 12.
특 수 분 류	생산제와 소비제	극물과 극물이외 생산제와

	1949년 기준 지수	1955년 기준 지수
산 출 기 간	1945.8 ~ 1961.4	1955.1 ~ 1963.12
		소비재, 수출상품 공업수입상품 건축재료와 건축 재료이외

	1960년 기준 지수	1965년 기준 지수
산 식	기준시 가중산출 평균법	기준시 가중산출 평균법
품 목 수	412	473
가중치추계(또 는 품목선정) 기 초 자 료	평등업센서스	65년 국민소 득추계자료 63년 산업연 관 분석자료
기 준 시 점	1960	1965

	1960 년 기준 지수	1965 년 기준 지수
조 사 지 역	10 개 도시	10 개 도시
조 사 빈 도	월 3 회 (5, 15, 25 일)	월 3 회 (5, 15, 25 일)
기 본 분 류	대분류 11, 중분류 37, 세분류 17	대분류 12, 중분류 52, 세분류 17
특 수 분 류	주물과 주물이외, 식료품과 식료품이외, 생산재 (원재료, 건축재료 기타) 와 소비재	주물과 주물이외, 식료품과 식료품이외, 생산재 (원재료, 건축재료 기타) 와 소비재 (내구소비재, 비내구소비재)
산 출 기 간	1960, 1 ~ 1967, 12	1965, 1 ~ 1971, 8

		1970년 기준 지수
산	식	기준시 가중 산출 평균법
품	목 수	607
가중치 추계 (또는 품목 선정) 기초자료		69년 광공업 통계 조사보고 69, 70년 생산자 출하 지수
기	준 시 점	1970
조	사 지 역	15개 도시
조	사 번 도	월 3회 (5, 15, 25일)
기	분 분 류	대분류 13, 중분류 46, 세분류 28
특	수 분 류	식료품과 식료품이외 원자재 (원재료, 건축재료 기타)와 자본재 소비재
산	출 기 간	1970.1 ~

<표 2> 1965년 기준지수의 「파아체·체크」 결과

	1970년지수 (1955=100)		Parsche check ($\frac{L-P}{L}$) %
	Laspeyres 4	Parsche 4	
총 지 수	145.9	142.9	2.1
식 료 품	166.2	164.5	1.0
음 료 및 연 초	141.5	140.1	1.0
섬유 및 동제품	136.0	122.0	10.3
목 재	129.3	129.2	0.1
지 류	128.2	128.4	- 0.2
고무 및 고제품	125.7	122.1	2.9
화 학 제 품	107.0	111.6	- 4.3
요업및시멘트제품	153.6	152.0	1.0
금속 및 고제품	154.0	151.8	1.4
기계및고부분품	160.7	142.7	11.2
연 료 및 전 력	158.4	148.2	6.4
잡 품	149.2	185.9	8.9

(2) 지수의 성격

도매물가 지수는 기업간의 대량 거래에 적용되는 물가수준의 변동을 측정코자 하는 일반목적 지수이다.

모든 재화는 개개의 수급동향에 의하여 가격이 변동되며 물가라 하면 이들 모든 재화의 가격을 종합한 추상적인 개념으로서 화폐의 일반적 구매력을 나타낸다. 이와는 달리 물가는 특정대상에 대한 평균가격으로서의 물가수준 예컨대 소비자물가등의 개념으로서도 사용된다. 전자는 교환방정식에 입각하여 화폐의 구매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모든 재화를 망라한 지수를 편제하므로써 그 측정이 가능하겠으나 이와 같은 종합적인 물가지수는 아직 편제되지 않고 있으며 현실적으로는 제한된 부문에 대한 물가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물가지수로 대응되고 있다. 그러므로 도

매물가지수는 기업간에 대항거래되는 모든 상품의
가격만을 종합하며 부동산이나 「서비스」 등을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엄밀한 의미에서는 일종의
특수 물가지수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나
소비자물가지수 수출입물가지수 농가판매가격지수 등
다른 물가지수에 비하여 가장 포괄범위가 넓으며
가격변동의 선도성이 있는 대량거래단위의 가격을
수집함으로써 가격변동에 대한 대표성이 높기 때문
에 물가의 개념에 가장 접근하는 지수이다.

따라서 이 지수는 ① 화폐의 구매력 척도로
서 ② 경기동향의 지표와 ③ 각종 경제지표
의 「레프레이터」로서 이용되며 따라서 일반 목
적 지수로 불리어지고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도매물가지수가 일반목적 지수
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은 화폐의 일반적
구매력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최근 통화

의 구매력은 특정목적은 전제로 하지 않는 한 성립되지 않으며 따라서 여러개의 확대구매력이 병존한다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다.

현재 영국 「아일랜드」 서독 등 서구제국에서는 일반목적지수 대신에 부문별 접근법에 의한 물가지수를 편제하여 산업부문별로 물가를 파악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등에서도 전통적인 일반목적지수와 병행하여 부문별 물가지수를 편제하고 있다.

부문별 물가지수는 산업부문별로 투입과 산출면에서 물가를 측정함으로써 상품의 수급동향을 부문별로 파악할 수 있으며 물가변동이 원가요인에 의한 것인가 수요요인에 의한 것인가를 판단하기가 용이하고 산업부문간에 가격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등 이용가치가 많으나 아직은 일반목적지수와 우열을 가리기 어려우며 오히려 서로 보완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겠다.

따라서 한국은행에서도 부문별 물가지수의 개발을 준비하고 있으며 제반자료가 완비되는 대로 일부 산업에 대하여 편제할 예정이다.

(3) 가중 및 비교의 기준년

도매물가지수의 가중 및 비교의 기준년은 1970년으로 개편되었는 바 일반적으로 기준시점의 선정에는 기간의 장단에 따라 단초법과 광초법이 있다. 양자중 가중치의 모집단이 되는 경제구조가 일정한 추세를 변동될 때에는 단초 기준이 합리적이며 경제구조가 일정한 추세없이 불규칙적으로 변동될 때에는 광초기준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도매물가지수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 70년을 기준년으로 한 단초법을 택하였으나 천연조건의 변화로 그 생산량이 불규칙적으로 변하는 농산물거래량에 한하여는 광초법을 적용하였다. 즉 농산품의 거래액은 68 ~ 70년 3개년의 평균

거래량에 70년의 연평균가격을 곱하여 추산하였다.

한편 1970년을 기준년으로 채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1965년 이후 급속한 성장에 따라 경제구조가 현저히 변화했고 그에 따라 지수가 노후화되었으므로 물가변동을 지수에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기준년을 최근년으로 옮겨야 했고

② 제3차 5개년계획의 기준년이 1970년이기 때문에 동계획의 성과를 효율적으로 분석 평가하기 위하여 지수의 기준년을 제3차 5개년계획의 기준년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었으며,

③ 산업생산지수 소비자물가지수 능가판매 및 구입가격지수 등 제경제지표의 기준년을 70년

으로 변경키로 되어 있으므로 이들 제지표와
의 상호비교를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

(4) 가중치 체계

① 가중치의 모집단

도매물가지수의 모집단은 1970년중 국내시
장에 투입된 모든 상품과 전력으로 하되, 가
중을 전력, 수도 등과 「서비스」를 비롯하여
간행물, 부동산, 예술품 등은 비교가능한 가격자료
를 수집할 수 없고 수집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가격자료가 대표성 내지 연속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가중치 모집단에서 제외되었다. 그리
고 야채 및 선어게류등 계절상품중 품질 및
거래량과 가격이 계절에 따라 변동이 크고, 시
장유통이 장기간 중단되는 품목은 화폐의 구매
력 평가를 목적으로 하는 종지수를 왜곡시키게
되므로 모집단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가중치의 모집단은 품목별로 (국내생산액 + 재고증감액 - 자가소비액 - 직접수출액) + (수입액 - 실수요자수입액)에 의하여 국내거래액을 산출하였다.

② 가격조사품목의 선정과 가중치 책정

일반목적지수의 성격을 갖는 도매물가지수에는 모든 상품의 가격변동이 그대로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이상적이기는 하나 지수편제의 신속성과 경제성에 비추어 불가능하므로 모집단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중 일부 품목만을 추출하여 지수를 편제하게 된다.

개별품목의 선정은 i) 거래액이 가중치 모집단의 $\frac{1}{10,000}$ 이상의 거래비중을 갖고,

ii) 저장성이 높고 시장 유통의 계절성이 낮은 품목 iii) 동종상품의 가격변동에 대한 대표성이 큰 품목

iv) 가급적 품질 및 규격이 계

속성을 가지고 있어 가격계열의 비교가 가능한 품목을 선택하였다.

㉓ 가중치 추계 방법

가중치 추계를 위한 기초자료로는 주로 「광공업 통계조사보고」 「농림수산물 생산통계」 「광산물 생산통계」가 이용되었으며 그밖에도 관세청의 수출입통계 각종 협회 및 조합과 전국 주요기업체에서 수집된 자료를 보완하여 다음과 같이 추계하였다.

자 료	발 간 처	년 도
광공업통계조사보고	경 제 기 획 처	69
광공업생산자총하자수	"	69, 70
제조업 제품 생산량 및 재고량통계	상 공 부	69, 70
농림수산물생산통계	농 립 부	68, 69, 70
농산물상품확률	"	68, 69, 70
농 가 판 매 가 격	농업협동조합중앙회	70
전국도매물가지수	한 국 은 행	69, 70
광산물 생산통계	상 공 부	70
정부전매품생산및구입액	전 매 처	"
간접세과세 품목의 과세표준액	국 세 처	"
품목별수출입통계	관 세 처	"
기 타	각협회 및 생산업체	"

1) 농산물

농산물의 품목별 거래량 추계를 위하여 농
 수산부의 농산물 생산총계와 상품화권총계를
 기초로 68 ~ 70년의 최근 3년간의 평균
 거래량을 산출하였으며 여기에 농업협동조합중
 앙회에서 조사한 70년 품목별 농가판매가격
 을 곱하여 품목별 국내거래액을 추계하였다.

이와같은 농산물의 거래량을 3개년을 평균
 한 광초법을 사용한 것은 기준년도의 실정에
 서 언급한 바와 같으며 거래액 산출을 위한
 평균단가로서 단일년도인 70년의 가격만을
 채택한 것은 농산물가격이 정부의 가격지지정
 책의 영향을 받아 상향추세를 보여왔으므로
 개편지수의 가중치 산출을 위하여 1970년
 의 가격을 이용하는 것이 현실을 반영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수출농산물은 수집과정에서

국내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제조업 제품의 경우에는
는 달리 국내총하액에서 수출액을 차감하지
않았다.

한편 농산물의 수입은 대부분 정부가 직접
수입하였으며 그중에서 가격조절용으로 방출하
는 것만이 가중치 모집단의 대상이 되므로
수입액 대신 품목별 정부방출실적을 추가하였
다. 한편, 농산물의 정부수매액은 이중계산
을 피하기 위하여 방출실적에서 차감하였다.

상술한 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68~
70년 $\{ (생산량 \times 상품화율) + (정부방출량$
 $- 정부수매량) \}$ 의 3개년 평균 \times 70년농
가판매가격

ii) 수산가공식품

수산가공식품에 대한 통계로는 「광공업통계
조사보고」와 수산청자료가 있는 바 전자의

종업원 5인이상의 기업을 조사 대상으로 한데
반하여 후자는 전수 조사였으므로 수산가공업
의 영세성에 비추어 신빙성이 상대적으로 크
다고 생각되는 수산청 자료를 그대로 이용하
였다.

iii) 임산물

임산물은 산림청의 생산액 통계를 이용하였으
나 임산물의 출하비율에 관한 통계가 없기
때문에 국내시장에서 전혀 거래되지 않는 품
목을 제외하고 여타품목에 대하여는 관계기관
과 연계에 문의하고 65년 기준 지수의 개편
시 적용된 출하비율을 감안, 새로이 추정하여
출하액을 산출하였다. 한편 임산물의 수출액
은 관세청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수입 임산물은
수입상품 도매물가지수 편제를 위하여 추계된
국내거래액을 이용하였다.

IV) 광산물

광산물의 국내 거래량 추계는 상공부의 광산물생산량통계 및 수입수출량통계에 의거하였으며, 거래량의 금액환산을 위한 가격은 한국은행이 품목별로 조사한 70년 평균가격을 이용하였다.

V) 제조업 제품

일반적으로 69년 「광공업통계조사보고」 69년 및 70년 「광공업생산자총합지수」 및 69년 및 70년, 한국은행 품목별 가격지수를 이용하여 추계하였다. 즉 광공업통계조사보고에 의한 69년 품목별 총하액에 광공업생산자총합지수에서 산출한 69년비, 70년 품목별 총하액지수 및 한국은행의 품목별 가격지수를 곱하여 70년 국내총하액을 추정하였다.

이 밖에도 상공부의 제조업 제품에 대한 생산량 및 재고량 통계에 의하여 광공업생산자 총하지수를 비교하여 확인하였다. 또한 각종 협회에서 총하액 또는 총하량 통계를 수집하여 비교하였고. 물품세 과세품목에 대하여는 국세청의 물품세 과세자료와도 상호 비교하여 추계자료의 신빙성, 추계방법의 정확성을 검토하여 보완 내지 수정하였다. 또한 국민소득추계과정에서 수집한 품목별 또는 세부류별 국내거래액과 비교하여 추정된 거래액의 신빙성을 재고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제조업 제품중 주류는 국세청의 과세자료에서 70년 총하액을 추계할 수 있었고 연초는 전매청의 연초판매 실적통계에서, 석유류, 식탄류 전액은 상공부에서 직접 수집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었다.

한편 제조업 제품의 수출은 대부분 생산자가 무역업을 겸용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무역업자는 제조업자의 수출대행에 불과하므로 관세청 자료의 품목별 수출액을 전부 직접 수출로 간주하였다. 이 밖에 관세청 수출통계에는 포함되지 않는 구남수출액을 별도로 수집하여 (한국물품 구남조합제공) 출하액에서 차감하였다. 또한 광공업 통계조사보고상의 출하액에는 보세가공 수출을 위한 제조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수출액에서도 이 부분은 제외하였다.

수입상품에 대하여는 임산물외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입상품, 도매물가지수편제를 위하여 추출한 품목별 국내거래액을 이용하였다.

㉞ 분류

① 분류의 개편 필요성

도매물가지수의 주목적은 화폐의 일반적 구매력을 측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공업화가 진전되고 경제분야가 분할 확대하여 짐에 따라 총지수중심인 도매물가지수도 부분별 물가의 움직임을 분석하기 위하여 유별지수의 필요성이 증시되게 되었다.

그러나 종래의 도매물가지수 분류체계는 기본분류와 특수분류로 나누어져 있는 바, 기본분류는

- i) 산업별분류보다도 속성과 용도를 따도하게 중시하여 분류한 결과 경제활동 부문별로 총지수의 변동 원인을 규명하기가 어렵고
- ii) 분류내용이 불명확하여 그 성격이 분명하지 않은 잡품의 비중이 컸으며
- iii) 고간 경제성장에 따른 구조변화로 유별가중치가 편중되었으며

특수분류는

- i) 산업구조가 점차 고도화됨에 따라 현존 특수분류중에 그 의미가 상실된 것과 새로운 분류가 필요한 것이 발생하였고
- ii) 물가변동을 임금, 원재료비, 시설비등 원가변에서 분석할 수 없으며,
- iii) 물가변동요인을 국제적 요인과 대외적 요인으로 구분 분석할 수 없고
- iv) 기업규모에 따른 생산성이나 경쟁관계에서 야기되는 초과이윤에 따른 물가변동의 분석등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필요한 구조적분석이 불가능하는등 개선할 여지가 많았다.

1970년 기준지수에서는 이러한 분류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고도화된 산업구조에 적합하고 물가동향의 원인적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본분류와 특수분류

전반에 걸쳐 개선하였다.

② 분류의 원칙

신자수에 있어서는 구자수의 분류체계상의 불합리한 점을 제거하기 위하여 상품의 속성과 용도를 기준으로 한 분류방법과 산업분류 방식을 조화시켜 기본분류를 개선하고 특수분류도 우리나라의 경제구조에 맞도록 분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을 세웠다.

- i) 고도화된 산업구조를 분류체계에 반영한다.
- ii) 분류상 물가주도부문을 뚜렷이 나타내게 한다.
- iii) 성장업종을 분류에 감안한다.
- iv) 분류의 명칭과 내용이 일치되도록 한다.
- v) 물가동향의 원인적 분석이 가능하도록 한다.
- vi) 가중치의 분포를 고르게 한다.

③ 분류의 개선내용

1) 기본분류

㉠ 주지수의 대분류인 식료품은 농수산식품과 가공식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양자는 물가변동의 양상이 서로 다르므로 이를 대분류로서 농수산식품과 가공식품으로 분류하였다. 즉 농수산식품은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라 그 비중이 점감되는 경향이 있고 제철에 따라 공급이 집중되며 저장성도 낮아 가격변동이 큰 반면, 가공식품은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그 비중이 커지고 있으며 저장성이 높아 연중 가격이 안정되어 있다. 따라서 가격변동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하여 양자를 독립된 대분류로 신설할 것이다.

㉡ 현행 「음료 및 연초」 중의 연초는 전매

품으로 가격변동이 희소하여 잡품에 포함시켰으나 음료는 그 속성에 비추어 가공식품에 포함시켰다.

㉔ 화학제품 및 잡품에 분산되어 있는 합성수지 및 그 제품은 피혁, 목재, 면, 금속 등과 대체되어 그 용도가 확대되어 가고 있는 성장산업이므로 독립된 대분류로 신설하였다.

품목이동의 예

- ① 소세지, 분유 통조림 ② 면초 ③ 특판 및 목재가구류 ④ 철재가구류 ⑤ 식면, 식교 ⑥ 이발용의자 ⑦ 원지 ⑧ 블트, 닷트 ⑨ 차류 ⑩ 비닐레자, 포리에치렌필림, 플라스틱대야

㉕ 구지수의 대분류로서 잡품은 그 가중치와 품목수가 큰만큼 물가동향이 불명확하였다.

<표 3> 신주지수 기본분류 비교표

신 지 수		구 지 수
농 수 산 식 품	←	식 료 품
가 공 식 품	←	음 료 및 연 초
섬 유 및 등 제 품	⑦	섬 유 및 등 제 품
목 재 및 등 제 품	⑧	목 재
지	⑨	지
생 고 무 및 고 무 제 품	⑩	생 고 무 및 고 무 제 품
화 학 제 품	←	화 학 제 품
합 성 수 지 및 등 제 품	←	요 업 및 시 멘 트 제 품
토 석 및 유 리 제 품	⑪	금 속 및 등 제 품
금 속 및 등 제 품	⑫	기 계 및 등 부 분 품
기 계 및 등 부 분 품	⑬	연 료 및 전 력
연 료 및 전 력	←	잡
잡	←	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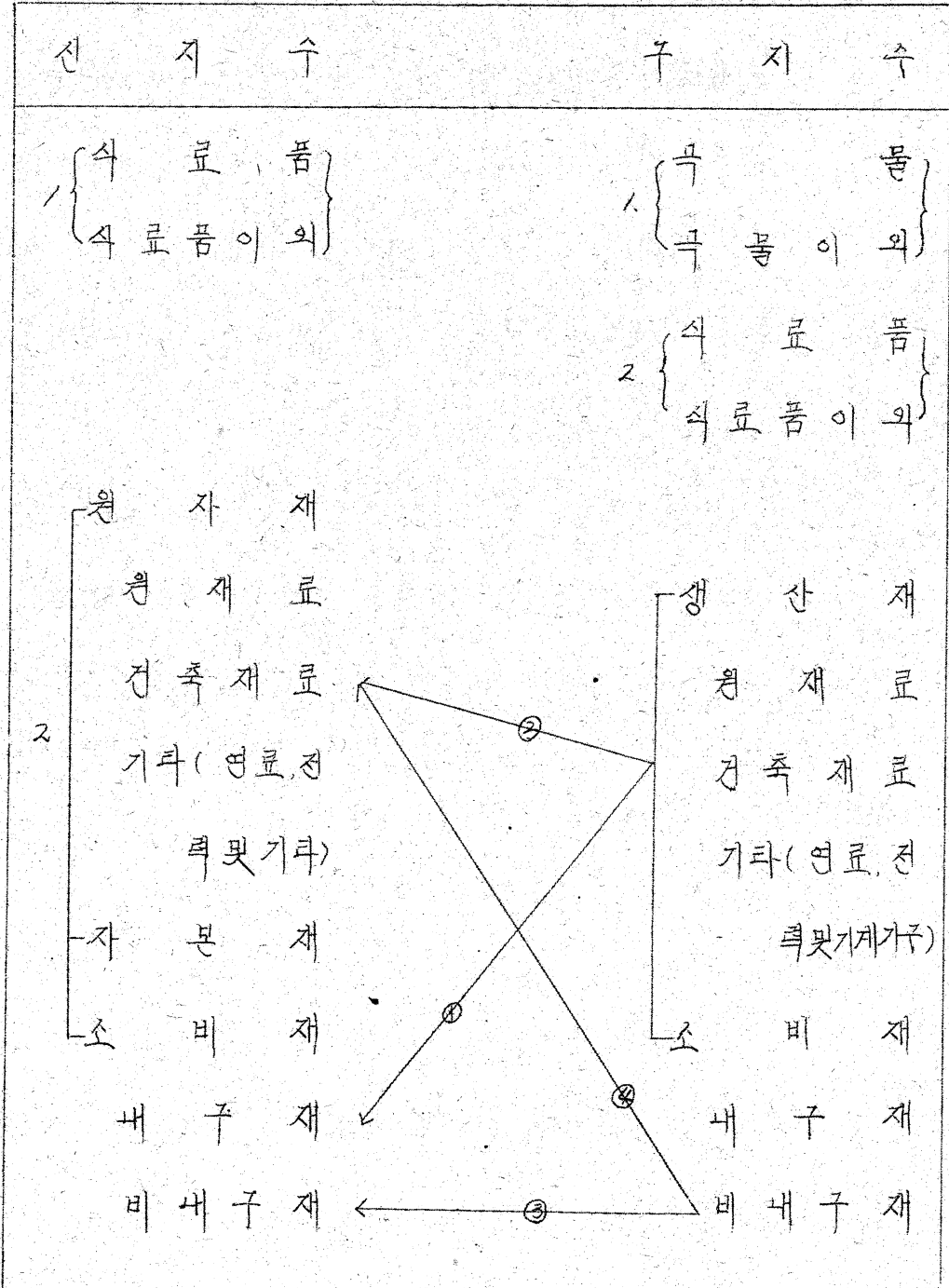
그러므로 합리적인 분류기준에 따라 잡품에 포함되어 있던 품목을 가능한 해당분류에 귀속시켰다. 잡품중의 흑판 및 목재가구류는 목재류에, 철재가구류는 금속 및 그 제품에, 이발용의자는 기계 및 그 부분품에 귀속시킨 것은 그 예이다.

㉔ 현행 요업 및 「시멘트」 제품을 토석 및 유리제품으로 그 개념을 확대시키고 잡품에 포함되어 있던 석고, 석면 연마저석등을 이 분류에 포함시켰다.

㉕) 특수분류

㉑ 제조업 성장에 따라 내구생산재의 중요성이 증대하여 집에 따라 생산재와 소비재로 양립된 현행분류를 원자재, 자본재, 소비재로 정립되었다. <표 4는 그에 나옴>

<표 4> 신구지수 특수분류 비교표



품목이 등의 예

- ① 어망, 일반용기계 전부, 승용차, 화물 자동차, 전동기, 변압기, 활곡기, 응집기, 편직기 이밖용 의자
- ② 아크릴판
- ③ 흑판, 편수탁자, 의자, 호마이카상
- ④ 스폰지

⊕ 곡물과 곡물이의의 분류는 삭제하였다

이는 곡물의 비중이 크게 감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쌀, 보리쌀, 밀의 3개 품목으로 그 구성이 단순하고 가격변동도 정부의 가격안정시책의 영향을 받아 연중 평준화 경향을 보이게 됨에 따라 특수분류로서의 의미가 감퇴되었기 때문이다.

(6) 가격자료

지수산출을 위한 가격 자료는 시점간의 순수한
물가변동을 측정할 수 있도록 가격조사 품목의
품질 및 가격, 거래단계, 거래조건, 조사대상처, 조
사시점등을 명확히 지정하였다.

① 품질 및 가격

대표 품목으로 선정된 품목에는 여러가지
품질가격의 상품이 유통되고 있으며 이를 전부
가격조사하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대표성이 큰
품종을 선정하면 여러 품종의 가격변동을 대표
할 수 있으므로 품목마다 하나의 품종만을 선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품질 및 가격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i) 등품목에서 판매액이 상대적으로 큰 품목과
가격

ii) 가격변동 양상이 소속품목의 가격변동을 대
표할 수 있는 품목과 가격

이 밖에도 주요품목으로서 단일 품질 및 가
격으로 소속상의 가격변동을 충분히 대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복수의 품질 및 가격을 선
정함으로써 소속 상품의 가격변동이 정확하게 반
영되도록 하였다.

② 거래 단계

도매물가지수는 기업간의 대량거래에 적용되는
가격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지수에

있어서도 가격 자료의 수집 단계를 체계적으로
거래규모가 가장 크고 「상업마진」 및 수송
비가 포함되기 이전인 생산자 판매 단계를 기
정하였다. 왜냐하면 이 단계에서 대량거래가
형성될 뿐만 아니라 각 유통 단계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가격 선행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
러나 농수산물이나 수입품 등과 같이 생산자
판매 단계에서 가격 자료를 수집할 수 없는 품
목에 대하여는 생산자 판매 단계에 가장 가까
운 도매상 판매 단계를 채택하였다.

③ 거래조건

가격자료 수집에 있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거래조건은 다음과 같다.

i) 현금거래를 원칙으로 한다.

ii) 포장 및 용기를 포함한 가격을 조사한다.

iii) 간접세는 포함하되 구입자의 원천세는 제외된다.

iv) 배달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모든

품목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커와 같은 거래조건

이 적용될 수는 없으며 이 원칙에서 벗어나는

거래관습이 보편적인 품목에 대하여는 거래조건

에 의하여 가격을 조사하도록 하였다.

이 경우 가격자료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여 품목별로 거래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④ 조사지역 및 조사대상처

지수의 대표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지금까지

~164~

조사지역인 한은본지점소재 10개도시 이외에
산업비중이 크고 지방경제권의 중심지인 제주,
강릉, 마산, 울산, 군산의 5개 도시를 추가한 15
개 도시에서 가격자료를 수집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전 품목을 각 도시에서 모두 조사하
는 것은 아니고 품목별로 전국적인 공급량 중
에서 상당한 부분을 점하고 있는 도시에서만
가격을 조사한다.

한편 각조사품목은 원칙적으로 조사지역마다
3개 대상처에서 수집한 가격의 평균이 그 지
역의 가격이 되며 품목별 전국평균가격은 지역
별 가격의 단순 산술 평균에 의하여 산출된다.

⑤ 조사시점

가격조사일은 매월 5일, 15일, 25일로 월
3회 실시하고 3개 지점의 평균가격을 그달의
대표가격으로 한다. 다만, 가격조사일이 휴일이

든가, 공휴일이면 전일을 조사일로 하며 전일도 휴일이든가 공휴일이 경우에는 원래의 조사일에 가장 가까운 일자가 조사일이 된다.

③ 품목대체 및 품질변화의 처리

이상에서 시점간의 순수한 가격변동만을 추출하기 위하여, 가격 및 거래 조건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나 조사품목으로 선정된 것 중에는 새로운 상품이 출현되고 거래비중이 증대되는 반면 기존품목이 시장에서 퇴거되어 조사품목의 대표성이 상실되는 현상이 일어나므로 품목대체가 불가피하며 그 밖에 거래조건변동, 조사대상처의 변동등에 따라 가격변동에 단층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가격계열의 비교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게 된다.

1) 직접대체법 (Substitution)

상품의 포장방법이나 「디자인」의 변동등

사소하고 부수적인 변화는 본질적인 가격결정 요소로 생각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수정을 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품목으로 직접 대체함으로써 두 품목의 가격차는 물가지수에 그대로 반영된다.

ii) 첩속법 (splicing)

첩속법은 실질적인 품질변화가 일어난 신규 품목이 동시에 같은 시장에서 거래되며 또한 충분히 경쟁적일 때 쓰인다. 신규품종의 대체 시점은 구품종의 중요성이 상실되고 신품종의 거래량이 증대되어 신품종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졌을 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방법에 의하면 첩속시점 현재의 신품종의 가격 (p_{a1})과 구품종의 가격 (p_{b1})의 비율로 구품종의 기준시 가격 (p_{b0})를 조정하여 신품종의 가상기준시 가격 (p_{a0})

$= P_{60} \times \frac{P_{a1}}{P_{b1}}$) 을 산출하고 이 가상기준시
 가격에 의하여 신품종에 의한 가격을 산출한
 다. 접속법은 품질 및 가격의 변화를 처리
 하는 이외에도 조사지역 및 조사대상처의 변
 경에 따라 가격 계열상에 단증이 생길때
 지수계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도 이용
 된다.

iii) 생산비 접근법

접속법은 신구품종이 동시에 동일시장에서
 충분히 경쟁적일때 쓸 수 있는 방법이지만
 때로는 두 품종이 비경제적인 조건하에서 일
 제히 신품종으로 대체될 때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품질의 차가 생산비의 차에 비례하
 는 것으로 보고 신품종의 생산비 (C_{a1}) 와
 구품종의 생산비 (C_b) 의 비율로 구품종의
 기준시 가격 (P_{60}) 을 수정함으로써 처리된다.

<표5> 도시별 가 격 조

	서울	부산	대구	목포	광주	전주
합 계	570	111	57	45	48	42
농 수 산 식 품	30	26	26	25	25	26
가 공 식 품	49	1	4	6	3	4
섬유 및 그제품	64	20	8	2	1	-
무제 및 그제품	20	14	-	-	-	-
지 류	23	-	-	-	-	3
생고무 및 고무제품	16	11	-	3	4	-
화 학 제 품	115	-	-	-	-	-
합성수지 및 그제품	21	1	-	-	-	-
토석 및 유리제품	28	5	6	4	6	6
금속 및 그제품	72	16	3	1	1	-
기계 및 그부분품	86	3	4	3	1	-
연료 및 전 력	19	1	1	1	1	1
잡 품	44	1	5	-	-	2

사 품 목 요

대전	청주	춘천	인천	제주	강릉	울산	부산	군산
48	36	38	52	31	29	30	30	33
25	25	25	25	25	25	25	25	25
4	3	3	6	3	3	3	3	3
7	-	-	4	-	-	-	-	-
-	-	-	-	-	-	-	-	-
-	-	-	-	-	-	-	-	6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6	4	5	2	-	/	-	/
/	/	-	7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7) 산 식

지구의 산식은 Laspeyres 계의 산식인 기준시가 중산술 평균법을 채택하였다.

$$I_{0t} = \frac{\sum (\frac{p_t}{p_0}) p_0 q_0}{\sum p_0 q_0}$$

p는 가격 q는 거래량 첨자 0와 t는 각각 기준시와 비교시점.

다. 농촌물가 및 임료금 지수

1) 연 력

1959년부터 편제하여온 농협의 농촌물가 및 임료금 지수는 우리나라 농촌지역의 물가통계에 관한 유일한 정부지정통계로서 경제분석 및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이제 13년이라는 시계열을 갖게 되었다.

농협에서 현재 편제하고 있는 농촌물가 및 임료금 지수의 기초가 되는 가격 자료는 당초

농업금융의 전담기관인 농업은행이 발족되면서
 1956년 6월부터 주식회사 농업은행이 전국
 15개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65개 주요농산물
 에 대하여 매월 1회 소매가격을 조사하였던
 「지방물가조사」로 부터 시작되었다.

그후 1958년 4월 농업은행이 특수은행법
 에 의하여 특수은행으로 개편됨에 따라 「농촌
 물가조사」로 확대시켰다가 1959년에 이르러
 「농촌물가 및 임료금조사」란 이름으로 본격
 적인 가격조사가 이루어 졌다. 그러나 당시의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1959년 까지의
 가격조사에서는 단순히 가격자료만을 수집하는데
 그쳤으며 물가지수는 작성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때까지는 개별농산물의 가격변동은 알 수
 있었으나 농산물의 전반적인 가격동향을 파악할
 수는 없었으며 농가의 교역조건 또한 파악할

수 없었다.

이후 1961년에 종합농협이 발족되면서 1959년을 기준년도로 하고 1958년 8월~1959년 7월까지의 농가수입, 지출가운데 품목별 수입 및 지출액이 차지하는 구성비율에 의거한 가중치를 산정하여 처음으로 농촌물가지수를 편제하게 되었으며 그후 점진적인 개선과 발전을 거듭하여 왔다.

1964년에는 국내의 모든 물가지수와 생산지수의 기준년도를 1960년으로 통일하게 됨으로써 「농촌물가 및 임료급지수」도 1960년을 기준년도로 하는 지수개편이 이루어졌는데, 1959년 지수의 가중치는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기준년도만 1960년으로 이동하였다.

한편 1966년에 와서엔 정부가 추진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성공적으로 수행

되어 이에 따른 생산구조 및 소비패턴의 변동을 지수에 반영시키기 위한 각종 경제지수의 기준년도 변경계획에 따라 본 「농산물가 및 임료금 지수」도 1965년을 비교 및 가중치 기준년도로 하는 지수개편을 보아 1968년 1월부터 실시하였다.

이와 같이 매 5개년마다 각종 경제지수의 기준년도를 개편하여 온 판례에 따라 1971년 중에도 1970년을 기준년도로 하는 지수개편 작업을 하여 이제 그 발효를 보기에 이르렀다.

(2) 1970년 기준지수의 특징

금번 지수개편에 있어서는 대체로 1965년 기준지수의 방법을 그대로 계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특징으로는 첫째, 농산물거래의 계절성을 물가지수에 반영하기 위하여 농가판매 가격지수의 연평균 지수산출에 있어서 품목별,

~1944~

월별가격을 가중평균한 연평균 가격으로 작성함으로써 연평균 지수에 계절가중치를 적용하였다는 점이다. 대부분 농산물의 생산 주기는 1년이고 특히 청과물은 부패성이 커서 출하기간이 수개월에 한정된다. 또한 수확기에 집중출회되기 때문에 월별지수를 단순평균하게 되면 농가수취가격을 정확히 예측하는데 불합리한 점이 있게 된다.

따라서 본 지수작성의 목적에 비추어 정확한 농가교역조건을 파악하기 위하여 월별지수를 가중평균하여 연평균지수를 산출함으로써 농가판매가격 지수에 거대의 계절성을 고려하게 되었다.

둘째로, 농가판매가격 지수에 있어서는 지수품목수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농산물 가격의 변동은 보다 정확히 측정토록 하고 농가구입가격지수에 있어서도 지수품목을 조정하여 현실에 접근토록 하였다.

셋째로, 농가수입 가격지수의 가계용품에 중분류를 신설함으로써 물가변동의 분석에 편리하도록 하였으며 물가변동의 동질성을 고려하여 일부 분류를 분할 또는 통합 조정하였다.

(3) 비교 및 가중치의 기준년도

비교 및 가중치의 기준년도를 1970년으로 하였는데 그 이유로는 ① 1965년 이후의 농업생산 및 농촌소비구조의 변화를 농촌물가지수에 반영하고 ② 제3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기준년도 (1970년) 와 농촌물가지수의 기준년도를 일치시켜 경제개발계획의 효율적인 분석을 기하며 ③ 산업생산지수 및 다른 물가지수의 기준년도를 일치시켜 상호비교를 용이하게 하는데 있다.

그런데, 농가의 교역조건을 측정하는데 있어서는 1970년이 기준년도로서의 타당성을 갖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겠으나 1965년 기준지수에 의한 페리티콜이 1970년에 99.1로서 비교적 균형을 이루었고 또한 물가 및 농업생산의 변동상황이 비교적 안정을 보이고 있으므로 기준년도로서의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

(4) 가중치의 모집단,

농촌물가지수의 가중치는 개별농산물 및 구입품 가격의 음식입을 종합하는데 있어서 개별농산물 및 구입품이 갖는 중요도이며 기준년도 (1970) 중 농가의 현금수입지출의 총액에 대한 개별농산물 및 구입품의 수입,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계산된다.

따라서 농가판매가격지수에 있어서는 연도중 농가가 농산물을 생산, 판매함으로써 얻은 현금수입 총액을 가중치의 모집단으로 하였고 농가구입가격지수에서는 1970년중 농가가 영농과 일상소비

생활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구입하는데 지출한 현금지출액을 가중치의 모집단으로 하였다.

그러나 농촌임료금에 있어서는 현물지급비중이 크기 때문에 현물지급평가액을 합산하였다.

가중치 개편에 사용된 기초자료로는 농림부 농가경제조사의 표본농가(1182호)가 1970년 1월부터 2월까지 1년간 자체 기상한 일계부 14,184 권중 지구별 농가 번호가 홀수인 612호의 일계부 7,344 권을 전자계산처리하여 이용하였다. 또한 농업용품중 농약 및 비료의 품목별 가중치 확정을 위해서 1970년중 농약 및 비료판매상황을 기초자료로 이용하였다.

항목별 집계에 있어서는 농가경제조사의 항목과 본 지수편제의 항목이 일치되지 않는 것이 있어 일부 항목을 실물거래를 중심으로 조정, 분류 집계하였다.

즉, 농가 판매가격지수의 가중치는 농산물 판매현금 수입액을 기준했으며 이때 축산물 판매수입에는 대동물 매각현금액을 가산하였다. 따라서 임산물을 제외한 겸업수입 및 사업수입은 집계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농업용품에 있어서는 농업경영비의 현금지출액을 기준하되, 가축, 농기구, 건축, 자재에는 대동물, 대농구, 건물구입의 현금지출액을 포함하고 노임, 수리비, 농지임차료, 농업잡지출을 공제하였다.

가계용품에 있어서는 가계비의 현금지출액을 기준하되 주거비에는 건물구입액 (농업과 가계에의 분할은 4:6의 비율)을 포함하였으며 외식비, 교제증여비, 축의비 및 기타 가계잡비를 제외하였다. 다만, 관공상제비는 현물거래비율에 의하여 각 비목별로 분배하여 포함시켰다.

㉔ 품목선정 및 분류

지수편제를 위한 기초가격자료를 수집해야 할 품목으로서는 농가의 거래액이 크게 물가변동을 측정하는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으로 189개 품목을 선정하였다.

즉 농가판매가격지수에서 개별 농산물의 현금수입액이 현금수입총액의 1천분의 1 이상인 품목을 그리고 농가구입가격지수에서는 개별품목에 대한 현금지출액의 1천분의 1 이상 되는 품목을 지수품목으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다만 상품구별의 가격변동을 잘 반영토록 하기 위하여 비중이 1천분의 1 이하되는 품목을 선정할 것도 있다.

한편, 농가구입품중 비료와 농약류의 품목선정은 농협의 비료 및 농약판매상황을 기준해서 선정하였다.

이번 지수개편에서 지수품목으로 채택된 것은 농가판매품이 49개 품목, 농가구입품이 140개로 총 189개 품목이 선정되었다.

그런데 지수품목외에 가격자료를 이용할 목적으로 농산물에 있어서는 23개 품목을 종전과 같이 계속 가격조사하기로 하여 22개 품목이 선정되었으며 농가구입품에 있어서는 지수품목만 가격조사하기로 하였다.

총지수를 구성하는 개별품목은 주로 상품분류법에 의하여 1965년 기준지수의 분류방법을 그대로 이용하되 거래비중에 비추어 약간의 조정을 하였다. 즉 농가구입가격지수중 농업용품 분류에 있어서 광열등력류를 하나의 독립분류로는 비중이 적기때문에 자재류에 포함시켰고 임료금지수에 있어서는 농구입차료를 농업용 요금에 통합시켰다.

가계용품분류에 있어서는 종래의 기호품에 포함

권 연초비를 독립된 소분류로 신설함과 동시에 새로운 중분류를 신설하였다. 즉 식료품, 피복비, 주거비, 광열비 및 잡비를 신설하여 물가변동의 분석에 편리하도록 하였다 (부표 / 참조)

(6) 가격자료

① 품질 및 가격

농산물의 품질과 가격은 품종 또는 지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동일한 품질의 상품가격을 조사하기가 극히 어려우므로 조사지역에서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품질가격에 대한 가격을 조사키로 하였다.

즉 품질은 대부분 증품으로 하였으며 이는 일반농촌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는 품질을 의미한다. 그리고 동일품목에서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품질가격을 채택하여 가격변동을 대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일부품목에 있

에서는 복수의 품질가격을 선정하여 가격변동을 정확히 반영하도록 하였다.

② 가격조사 단계

농산물가 및 임료금조사는 농민이 생산하여 판매하는 농산물의 수취가격과 영농과 생계를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입가격의 양면적인 가격조사를 하기 때문에 지수에 있어서도 가격자료의 수집단계를 두가지 단계로 하고 있다.

즉, 농가판매품에 있어서는 생산농가가 농산물을 수집상 혹은 시장상인에게 직접 제/차적으로 판매하는 가격을 포착 조사하고 농가구입품은 농민이 시장 또는 상점에서 직접 구입하는 소매가격을 조사한다.

이와 같이 거래의 제/차적인 단계와 마지막 단계에서의 가격을 조사포착함으로써 농민이 판매하는 농산들과 구입하는 재화 및 용역간의

교역조건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것이다.

◎ 조사지역

본 지수는 농촌의 전국적인 물가동향을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특별시와 부산직할시 및 도청소재지와 시청소재지 그리고 읍통근을 제외한 전국 137개군 중에서 총농산물 거래액의 약 80%를 차지하는 쌀, 대맥, 콩, 고구마, 한우 육돈등의 주요품목을 중심으로 각 품목별로 생산량의 80%를 차지하는 수준까지 조사하여 최종 69개군을 지정하였으며 조사지역은 종전과 같다.

그리고 각 조사지역내의 조사대상지역은 군, 관내에서 농산물판매량이 가장 많고 농민이 주로 거래하는 5일시장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지역마다 권혁적으로 조사품목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지정점포 또는 상소에서 수집한

가격의 평균이 그 지역의 가격이 되며 품목별 전국 평균가격은 지역별 가격의 단순산술 평균에 의하여 산출한다.

다만, 농촌 임료금은 농촌시장에서 조사할 수 없으므로 조사지역 판매(군 조합판매)의 일반적인 농촌부락에서 조사토록 하였다.

④ 조사일

종전과 같이 월/회 조사하며 매월 15일 또는 15일을 전후해서 가까운 개시일에 조사원이 직접 조사지역에 나가 가격을 조사하였다.

⑤ 계절품목에 대한 가격

농산물의 생산은 대부분이 자연조건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상품의 거래는 계절적으로 변동을 나타내고 있어 계절적인 출회 및 단속되는 농산물의 가격처리가 본지 수산출에 있어 중요한 문제였다.

이에 본 지수작성에 있어서는 모든 품목에 대하여 1, 2개월 공통되는 고정가중치를 적용하는 한편 계절적으로 단속되는 계절품목에 대해서는 가격이 단절된 기간에는 출회되는 초종월의 가격이 매월에 계속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지수에 반영하였다.

계절품목의 지수작성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적용될 수 있는바 그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체품목을 준비해서, 비출회기간의 가격을 이 품목의 가격으로 대체하는 방법.

둘째, 비출회기간에 대하여는 해당품목을 지수계산으로 부터 제외하는 방법.

셋째, 비출회기간의 가격을 다른 동종상품 또는 해당품목이 속하는 상품군 혹은 소구별지수의 변동주세에 따라 대응시키는 방법.

넷째. 해당 품목이 속하는 상품군 또는 소구별의 가중치는 일정하게 하나 비졸회기간의 매월 거래액에 따라 각 품목의 가중치를 정하는 방법.

다섯째. 비졸회기간의 일정기간을 다음과 같은 가격으로 보합시키는 방법.

1) 졸회시기의 최종월의 가격을 다음 졸회기까지 보합시키는 방법.

2) 졸회기간의 평균가격을 다음 졸회기까지 보합시키는 방법,

3) 졸회기의 최초월의 가격으로 보합시키는 방법.

여섯째, 비졸회기간의 가격변동을 파지 수년간 자료로 산출해서 그 평균월별 등기율을 적용함으로써 비졸회기간의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등이다. 농촌물가지수 작성에서 채택한 방법은 위의 다섯번째의 1)의 방법에 해당한다.

미국이나 일본 등 외국의 경우에도 계절상품의

가려처리는 출회기간의 최종월의 가격을 다음 출회기까지 포함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7) 산식

지수의 산식은 라스파이레스의 기준시 가중산술 평균법을 사용하였다.

이를 산식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I_L(t) = \frac{\sum (\frac{P_t}{P_0}) \cdot P_0 \cdot Q_0}{\sum P_0 \cdot Q_0}$$

여기서 P는 가격이고 Q는 거래량임.

(8) 계절가중치 적용

(가) 계절가중치 적용대상

계절적인 상품의 가려처리 방법에 대하여 앞에서 논의한 것은 상품의 거래가 수개월에 한정되는 경우 비출회기간의 월별지수작성에 관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계절적인 상품의 연평균지수를 작성하는데 있어서도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첫째, 1년중에 9개월만 가격이 형성될 때 거래기간의 최종월의 가격을 다음 연도의 종료기까지 포함시킬 경우 그 상품의 연평균 가격을 종전과 같이 포함가격을 포함한 12개월 가격을 단순산술평균해서 산출한다면 그 단순평균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을 대표하지 못하는 모순이 있게 된다. 즉 예를 들면, 복숭아의 경우 6~9월에만 가격이 형성되는데, 월별지수작성을 위하여 그 해의 5월까지의 지난해의 9월가격을 사용하고 10~12월까지는 그 해의 9월가격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12개월을 평균해서 연평균가격을 산출하게 되면 이 가격은 실제가격 (4개월) 보다 거태되지 않는 가격 (8개월)을 더 반영한 결과가 된다.

둘째로, 이와 같은 비종료기간의 가격처리 에

있어서의 모순점을 제거하는 면에서 실제거래기간 (예를들면, 복숭아의 경우 6~9월)의 가격만을 단순평균해서 연평균가격을 산출한다 하더라도 다음의 모순이 있다. 이 방법은 12개월 단순평균법보다는 현실에 접근한 방법이라 볼 수 있으나 출회기간의 월별 거래량에 큰 차이가 있을때는 단순평균으로서 진정한 평균가격이 될 수 없다.

원래 평균가격의 개념은 총거래액을 거래량으로 나눈 값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단순평균에 의한 연평균지수를 산출하는 방법이 불합리한 상품으로는 시장출회개수 개월에 한정되면서도 월별로 거래량에 큰 차이가 있는 청과물은 물론 1년간 계속 거래되는 모든 농산물도 이에 포함된다. 대부분의 농산물은 1년에 한번씩 생산되며 부패성이 커서

수확기에 집중추회되며 단경기에는 거래량이 극히 적기 때문에 계절적 거래량을 고려치 않은 단순평균법에 의해서 연평균가격을 산출하면 불합리한 점이 있게 된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농산물가지수에서는 농가판매가격지수나 농가구입가격지수의 경우 모두 월별지수를 단순평균하여 연차지수를 작성해 왔다. 이 방법을 사용하게 된 것은 ① 월별지수가 월별거래량이 동일하다는 가정에 의하여 (교정된 가중치) 작성되고 있는 만큼 연차지수에 있어서도 동일한 가정에 입각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지수를 작성하자는 것과 ② 계절적인 거래량을 고려하자면 우선 그에 관한 기초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1965년 이전에는 농협에서 조사했던 쌀과 보리에 대한 상품화율뿐 그외의 품목에 대한 자료가 없었다는 점 ③ 그리고

지수작성방법이 간결하다는 이유가 있었다.

그런데 연차지수는 연도별 가격변동을 측정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월별지수작성의 가정과 일치해야 할 필요는 없으며 1966년 이후는 농산물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식량식료의 상품화출통계가 발표되고 있으므로 이번의 지수계열에 있어서는 농가의 표역조건을 보다 정확히 측정하기 위하여, 약간의 복잡성이 있더라도 거래의 계절성을 연차지수에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

거래의 계절성을 고려한 것은 모든 농산물의 농가판매가격인 경우에 한하고 농가구입가격지수는 종전과 같은 방법을 채택하였다. 농가구입품중에도 비료, 농약등과 같이 거래가 계절적인 품목이 있으나 농가구입품 전체에 비하면 그 비중이 크지 않으며, 또한 그 가격변동이 계절적으로 안정적이기 때문에 거래의 계절성을 고려

하더라도 복잡성만 초래할 뿐 그 결과는 종전의
방법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
이다. 그래서 이번 지수개편에 있어서 능가구
입 가격지수는 종전과 같이 월별지수를 단순평균
하여 연차지수를 작성하고 능가 판매가격지수로
월별지수는 종전과 같이 산출하되 오직 연차지
수에만 거래의 계절성을 고려한 것이다.

(4) 계절가중치 적용

계절성을 고려하는 방법은 여러가지 있을수
있으나 이번 지수개편에서 채택한 방법은 다음
과 같다. 증산들의 연차지수는 개별증산물의
월별가격을 월별거래량을 가중치로 해서 가중평
균하여 연평균가격을 산출한 다음 이 가격의
기준가격에 대한 비율로서 개별증산물의 연차지
수를 만들고 이들 개별가격지수에 품목별 소정

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유별 및 종합지수를 작성한다. 이때 기준가격 역시 월별 거래량을 가중치로 해서 기준년도의 월별 가격을 가중평균한 가격이다.

그래서 농산물의 경우에는 월별지수의 연간누계를 12로 나눈 종전의 연평균지수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농산물의 증가판매가격지수를 이용할때 연도별 가격변동은 연차지수를 이용하고 월별지수는 전월대비 전년 동월대비등을 보는 경우에 이용하여야 하며 연차지수와 월별지수를 직접 비교할 수 없는 점에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여기서 사용한 품목별 거래량에 대한 월별 가중치는 농수산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1969년산 주요농산물(식량작물)의 상품화통계를 이용했으며 물량통계를 얻을 수 없는 그 이외의 품목에 대하여는 농가

~194~

경제조사자료의 농산물판매에서 얻은 월별 현금
수입액 자료를 이용해서 산출하였다.

참고로 거래의 계절성을 고려하는 방법으로는
다음의 세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첫째, 유별가중치는 연중교정사켜 놓고 유내의
품목별 가중치를 계절적(월별)으로 변동시키
는 방법.

둘째, 개별품목 및 유별가중치는 계절적인 거
래량에 기준하여 월별로 변동시키는 방법.

셋째로, 개별 및 유별 가중치는 월별로 교정
시키되 연차지수작성에만 월별 거래량을 고려해
서 개별품목의 연평균가격을 산출하고 이로써
연차지수를 작성함으로써 거래의 계절성을 고려
하는 방법이다.

위의 첫째방법은 농산물의 경우 유별속에 품
목이 동질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품목수가 적

기 때문에 유별가중치를 고정시킨다면 사실상은 개별품목의 가중치도 변동이 없게 되어 거래의 계절성을 고려치 못하는 결과가 된다.

둘째의 방법은 매월의 품목별 가중치를 변동시키기 때문에 월별지수의 비교로써 월간 가격변동을 정확히 측정할 수 없는 약점이 있다.

그래서 이번 지수계편에 있어서는 셋째의 방법을 채택하여 월별지수는 고정가중치를 사용하여 월별 가격변동을 측정할 수 있게하고 연차지수에 만 계절성을 반영하여 연도별 가격비교를 가능케 한 것이다.

현재 일본에서도 농업용품과 기계용품의 연차지수는 월별 지수를 단순평균하여 산출하나 농산물의 연차지수는 품목별, 월별가격과 거래량을 가중치로 해서 가중평균한 가격으로 산출하고 있다.

라. 수입상품 도매물가지수

(1) 지수편제연혁

한국은행에서 작성되고 있는 수입상품 도매물가지수의 연혁은 1955년 기준 전국 도매물가지수의 한 특수 분류지수로 작성된 수입상품도매물가지수에 두고 있는바 등 수입상품도매물가지수는 당시의 도매물가지수를 구성하고 있었던 품목중에서 수입(35개 품목)되는 상품의 국내도매가격과 도매물가지수에서 책정된 그 상품의 가중치를 이용하여 산출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단기간에 있어서도 무역구조가 급속하게 변천하는 상황에서 가중치 및 구성품목을 장기적으로 고정화시키면서 지수의

성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1960년 기준
 지수에서는 별도의 가중치를 책정하여 지수를 편
 제함과 동시에 무역구조와 변동률 신속하게 반영
 할 수 있도록 가중기준과 비교기준을 1962년
 과 1964년의 2회에 걸쳐 변경하고 그 결과
 로 얻어진 연환지수를 1960년 기준지수에 접
 속시키는 연쇄지수 방식을 채택하였다. (표1 참조)

<표1> 1960년 기준지수의 분류 및 가중치

	1960년 가중기준		1962년 가중기준		1964년 가중기준	
	품목수	가중치	품목수	가중치	품목수	가중치
총 지 수	63	1,000	53	1,000	48	1,000
연 료	5	133	5	127	3	71
금속및동제품	10	74	7	130	7	110
섬유및동제품	3	119	5	179	3	185
화학섬유	30	498	23	358	25	396
지 류	6	60	4	44	3	58
기 타	90	136	9	126	7	180

이와 같이 수차의 개편을 통하여 획기적으로 발전
선을 거듭하여온 지수이기는 하지만 그 후의 우
리나라의 무역구조는 과거에 볼 수 없었던 급격
한 변화를 보였으며 이러한 구조상의 변화가 지
수편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였을뿐 아니라 품목
구성에 있어서도 순수한 수입상품이 아닌 국내경
쟁상품을 포함한 42개 품목에 불과하여 1960
년 기준의 지수는 전 수입상품의 가격변동을 충분
히 대표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은 사정하에서 한국은행은 1960년도
기준지수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기준년도를
1965년으로 하는 새로운 지수를 편제하였다.

즉, 1965년 기준년도하에서는 202개 품목
으로 네배 확대하였을뿐 아니라 조사품목으로 순
수한 수입상품을 선정하였고 또한 새로운 수입상
품 구조를 반영하기 위하여 가중치를 전면적으로

조정된 쿼에 비중이 가장 큰 화학제품 아래에는 6개의 중분류를 두어 본지수 이용에 편의를 도모했다. 그러나 개발도상에 처해 있는 우리나라의 무역구조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추진과 함께 과거에 볼 수 없었던 급속한 변화를 거듭하고 있으며 수입상품의 국내 대체과정도 빠르기 때문에 지수가 현실을 충분히 반영토록 하교 아울러 3차 경제개발계획의 효율적인 분석평가를 위하여 각종 경제지표의 기준년이 70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들 제지표와 기준년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65년 기준지수를 다시 70년 기준으로 개편하였다.

(2) 지수편제의 목적

수입상품 도매물가지수는 국내시장에 공급된 수입상품의 가격변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작성한다.

(3) 가중치 선정

(가) 수입 상품, 도매물가지수의 가중치 책정에 있어서는 우선 기준년도인 1970년 중의 수입총액 중에서 시장에 공급된 부분만을 가중치의 모집단으로 하였다.

(나) 개별 가중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각 상품의 수입달러를 원화로 환산하고 각 상품이 시장에서 판매되는 단계까지의 총원화금액을 산출해야 하므로 상품별 C/A 달러표시 가격에 먼저 환율을 승하고 관세·물품세 및 정상품용과 이관등을 가산해 주는 작업이 필요하였다.

다행히 특관세 부과를 위하여 안정된 시가대수가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기 작업은 동시가대수를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었다. 즉,

품목별 시가대수를 해당수입상품의 수입액에 승해 줌으로써 국내 총거래액을 측정할 수 있었으며 총거래액을 1,000으로 한 품목별 가중

치를 제산하였다.

(4) 품목의 선정

조사품목의 선정은 본시수개편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작업이었는데 그것은 수입상품 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상품의 생명이 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품목의 선정에 있어서는 일시적으로 거래되다가 없어지는 경향이 있는 품목을 모두 제외하고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거 순수한 수입상품만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는데 선정된 품목수는 도합 438개 품목에 달한다.

(가) 국내시장에서의 거래액이 큰 수입상품 즉 거래액이 가중치모집단총액의 5/10,000 이상이 되는 품목

(나) 수입의 계속성이 있는 품목

(다) 가격변동이 동종상품군을 대표할 수 있는 품목

(5) 대표도

위에서 대표가격계열로 선정된 138개 품목의 수입상품 국내 총거래액에 대한 비율 즉 대표도는 58.3%이다.

$$\text{대표도} = \frac{\text{선정된 대표품목의 국내거래액}}{\text{수입상품의 국내총거래액}} \times 100$$

(6) 지수의 분류

지수의 분류는 전국 도매물가지수의 분류방법 (상품의 속성, 용도, 사용권재료 등) 에 보다 접근시킴으로서 양지수의 상호비교를 용이하게 하였다. 분류의 비유으로는 「금속 및 동제품」 「기계 및 동부분품」 「화학약품」 「의약 및 농약품」 「합성수지」 「고무」 「목재」 「잡품」의 8개 대분류를 두고 구성내용이 복잡한 「한약재」 「집착재」 「필림류」 「기타」로 다시 중분류를 신설하여 지수의 이윤과 분석에 편리하도록 하였다.

< 표 2 참조 >

1970년 기준시수의 분류 및 가중치

분 류	품 목 수	가 중 치
총 시 수	138	1,000.0
금속 및 동제품	10	84.9
기계 및 동부분품	28	191.4
화학약품	35	185.8
화학및 농약품	26	143.2
합성수지	7	92.2
고무	2	63.3
목재	2	107.5
잡품	29	151.7
한약재	9	41.9
집약제	2	20.9
필름	8	27.2
기타	10	62.5

(1) 가격자료

선정품목의 가격자료는 지수의 정확성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수집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함은 두말할 것도 없다.

따라서 시간의 가격차는 순수한 가격변동만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별품목마다 지정된 품질규격과 단위 및 거래조건에 따라 연속적으로 가격을 조사시 계열화 할 수 있도록 한다.

가격자료를 수집하는 거래단계는 이 지수자치가 국내시장에서 변동하는 수입상품의 가격동향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대량거래의 도매상품 가격을 채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조사상의 애로로 도매단계의 가격을 수집하기 어려운 품목에 대해서는 국내시장에서 가격이 성립되는 제1차 거래단계의 가격을 포착하기로 하였다.

가격조사의 빈도는 전품목에 대하여 5일, 15일

25 일의 회회로하고 3 개시점의 평균가격을 월
대표가격으로 한다.

(8) 지수의 편제 및 산식,

한달을 기본 주기로 하여 월간 지수를 산출하며
산식은 Laspeyres - res 식을 이용한다.

$$I_0 = \frac{\sum (P_0 Q_0) (\frac{P}{P_0})}{\sum P_0 Q_0} = \frac{\sum P_1 Q_0}{\sum P_0 Q_0}$$

또한 앞으로 수입규모의 변화에 따른 가중기준
년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는 연대지수방법을 택
하도록 한다.

(9) 결과 공표,

총지수와 유별지수를 한국은행 통계월보 및 물
가연보에 게재하여 공표한다.

2. 뉴질랜드 소비자물가지수

2. 뉴지랜드 소비자 물가지수

가. 총론 (General)

뉴지랜드의 소매물가지수 (Retail price index)는 1914년부터 작성되어 오고 있다.

1909-13년 (=100)을 기준으로 한 처음 계열은 1907년부터 네군데의 주요지역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식료품 집세 광열품목의 가격을 대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식료품과 집세계열만은 1891년까지 카바하고 있다. 1924년에 소개된 1914년 7월로 기준시를 되잡은 새 계열은 장신구 가구용품 및 집기, 요음 그리고 신문 잡지 등을 포함하여 소비자의 소비지출을 더 합축성 있게 대표하였다. 1930년에는 1926~30년 (1000)의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대표도 (coverage)를 늘리고 수정된 가중치와 개선된 계산방법으로 작성한 개편소매물가지수가 나왔

다. 이 계열 역시 과거 1914년까지 연결되었다. 그러나 1942년에 정부의 경제안전계획의 일환으로 전시특별물가지수가 나옴에 따라 중단되었다. 1949년부터는 이 지수가 소비자물가지수 (Consumers price index)로 대체되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1948년에 정부가 개관생계비지수 (revised cost of living index)를 설계하는 필요성과 그 방법을 검토하기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가 건의한데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그 위원회는 "지수위원회 보고서"라는 결의서에 새로운 지수에 대한 상세한 건의사항을 밝혔는데 그 건의 내용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다.

(a) 신소매물가지수는 소비자물가지수로 대체하여야 한다.

(b) 지수는 뉴지랜드 소비자들의 보편성 있는 소비 상태를 대표하여야 한다.

(c) 지수는 가능한 한 근대생활의 "오락"까지 대표

함으로써 가구에서 평균적으로 소비할 상품과 서비스의 전체범위를 대표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d) 지수는 주택소유자의 자가평가액(세든 집의 지불집세는 물론) 내구소비재 그리고 과일 채소 계란 같은 계절 품목(정상적인 계절 가격의 파동은 적절한 방법으로 조정한다)과 서비스의 비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설계된 지수는 1949년초부터 발표되었다. 이 소비자물가지수의 작성목적은 보편적인 소비자에 대한 또는 평균소비자에 대한 또는 평균가구에 대하여 전체적인 소비상품과 서비스 가격(요금) 변동의 전반적인 영향을 측정하려는 데 있다. 다른 말로 해서 이 지수는 개편지수에서 다음 개편시까지 가구의 생활습관이 변하지 않는다는 가상하에서 순수한 물가변동이 평균가구의 생계비에 주는 영향을 측정하는 것이다.

~2/2~

그러나 평균 가구라는 것은 순수한 통계적인 개념이다. 왜냐하면 셋집(셋방)에 사는 가구와 자기 소유주택에서 사는 가구가 있고 어린애들이 없는 가구가 있는가 하면 연령이 각기 다른 많은 어린애를 갖고 있는 가구도 있고 또한 고소득 가구와 저소득 가구 등등의 범주에 속하는 가구가 환대 어울려서 이루어지는 평균이기 때문이다. 엄밀히 말해서 어느 가구나 독자적인 생활형태를 가지고 있으므로 사실은 자기네만이 지출하는 독자적인 지출 패턴으로 가격수준의 변동에 따라 독자적인 지수를 가질 것이다.

그렇지만 소매가격의 변동은 모든 소비자에게 공통적으로 영향을 주고 생활형태는 일반적으로 비슷하다. 그러므로 소비자 물가의 변동을 평균적으로 측정할 것은 모든 가구에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뉴질랜드에서는 대부분의 다른 나라에 비하여 생활습성의 차가 심하지 않으므

로 소득계층별이나 직업형태등의 범주로 특별지수를 작성할 별다른 필요성은 없다고 믿어진다.

나. 개편의 필요성 (need for revision)

물가지수는 정해진 소비패턴에 대하여 그 때 그 때의 전반적인 물가변동을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된다. 지수는 물가변동을 가장 잘 추정하는 것이지만 소비패턴을 구성하는 품목들은 일정하게 변해가고 있다. 반면에 지수상에서는 가격변동외에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지수 목적으로 가계 지출에 포함되는 전체 품목을 뽑아서 품목리스트를 만들고 적절한 통계적 방법으로 이들 품목간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측정하는 것을 기본적인 실무로 삼아야 된다. 상대적인 중요도로 측정된 것을 가중치 (weight) 라고 하고 품목별 중요도의 아울러 전체 품목을 리스트로

정리하여 놓은 것을 "지수의 레지멘" (Regimen of the index) 이라 부른다. 지수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현재의 상태를 잘 대표할 수 있다면 주기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현, 가구당 평균소득증가 등의 변화가 있지만 전반적인 소비패턴은 다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서서히 변할 뿐이다. 소비패턴이 상대적인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믿을 만한 지수의 작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지수는 다만 가격의 변동만이 측정되도록 일정한 두시점간에 일정한 품목의 가격만을 정확히 다루기 때문이다. 새로운 레지멘 (Regimen) 에 따라 지수를 개편한다는 것은 사실상 새로운 계열의 지수를 작성한다는 의미가 되고 또한 장기비교를 목적으로 두 계열의 움직임을 연결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새로운 지수를 설계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발채와 분석이 또한 하나의

큰 과제의만큼 지수를 연결하는데 있어서 생기는
 차에 대해서는 정확히 정의하기가 곤란하다. 그러므
 로 지수 레지멘의 수정은 가볍게 다루어 저서로 알
 리며 또한 너무 자주 해서는 안된다. 한번 채택
 된 "레지멘"은 일반적으로 수년간 유지되지 않으면
 안된다.

과거에는 개편간격이 10년이나 그 이상 기간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통계관들은 일반적으로 생각
 했다. 1947년에 국제노동기구 (International Labour
 office)에서 개최한 제6차 국제노동통계관 회의결과
 필요하다면 가중패턴과 개편에 대한 검정을 10년
 이내의 간격으로 하도록 건의되었다. 최근에는 다
 수 국가에서 임금고용원들의 생활수준이 급속도로 향
 상되어가고 있다는 결과로 해서 가중패턴이나 개편
 에 대한 검정을 더 자주 해야 된다는 의견으로
 돌아갔다. 1962년의 제10차 국제노동통계관 회의에

~216~

서는 지수의 개편은 소비패턴이 현저히 변하는대로
그리고 지수의 가용성의 중요성에 비추어 보아 필
요하다면 보다 자주 하여야 된다고 건의하였다.

뉴지랜드에서는 사실상 실무적으로 최근의 건의에
따랐다. 소비자물가지수가 생긴 이래 정부 통계관들
은 만약 지수의 패턴이 형실을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뉴지랜드
소비자물가지수의 추세 (trend) 에 대하여 계속적인
주의를 기울여 왔다.

1948년의 지수위원회에서는 5년 간격으로 지
수를 개편할 것을 건의하였다. 사실상 1955~56
년에 걸쳐 작업을 한 개편이 소비구조의 변화에
따른 것이라고 규정하기 전 7년 기간은 이미 때
가 지나서 고려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되었다.

1942년과 1949년 개편기간의 간격은 만약 전
후의 정비기간이 1948-49년 이후까지 지속되었다면

아마 더 길어졌을른지도 모른다. 1955 ~ 56 년의
개편 후에는 소비패턴이 현저하게 안정을 시사하였다
는데 그것은 신개편지수(1965년 기준)의 기준년과
구지수(1955년 기준)에서 1965년의 소비지출의
백분비분포가 아주 근사하게 접근되어 있음을 명
백히 표시한 것이다. 최근(1985년)의 지수개편
은 1955년 기준지수가 가중패턴의 차질로 전반
적인 물가변동을 측정하는데 적합치 않다는 판단에서
이루어졌다기 보다 오히려 통계성에 설치된 전자계
산기로 지수를 편제하려는 계획을 포함하여 품목의
확대 개선된 가격조사 방법과 지수 편제 기술면에서의
필요성에 따라 수행된 것이다. 동시에 개편간격을
10년 이상의 기간으로 잡는 것은 현재의 상태에
서는 너무 길다고 느껴졌다.

다. 지수산식 및 지수계열

(Index fomula and Various index series)

수학적인 기호보다 말로 표현한다면 지수는 1965년 기준시의 생계비를 1000으로 보고 정해진 지수가중패턴의 비율로 특정한 상품과 서비스의 바스켓 (Basket) 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현재의 생계비를 상대적으로 표시하는 것인데 가중패턴은 1963년 3월 31일까지의 연간 물량소비율을 가지고 다만 1963년과 1965년의 물가변동에 따라 조정된 것이다.

수학적으로 지수계산에 사용되는 산식은 아래와 같이 표시된다.

$$\text{현시점의 지수} = 1000 \times \frac{\sum P_n Q_0}{\sum P_0 Q_0}$$

단 Σ = 전 품목을 합친것

P = 가격

Q = 물량

밑에 기입한 n = 현 시점

“ 0 = 기준시 = 1965년 평균

물량 Q_0 는 반드시 기준시에 소비한 실제적인 평균 물량을 표시하는 것은 아니다. 물량 가중치를 유도하는 것은 다음에 설명이 된다.

이러한 형태로 소비자물가지수는 보통 기준시를 고정하여 가중한 소비지출총계형의 라스파이레스 (Las-peyres) 물가지수가 된다.

위의 산식에서 P 와 Q 는 소비지출한 전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즉 기준시의 물량과 기준시 및 비교시의 가격이 지수가 때문하고 있는 전소비지출면에 포함하고 있는 모든 상품 및 서비스 품목에 대하여 상료별 규격별 등급이나 기타 다른 품질별로 수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필수적인 것은 아니고 각 품목의 대표적인 것만의 한 가격만 있으면 (광범위하게 대표적인 한 품질가격) 그것이 산식의 P 에 해당하는 가격이 된다. 물량 Q 는 개별 품목에 대한 소비지출액을 광범위하게

특정하거나 좁은 분야에서 소비지출액을 측정하여 가격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높은 특정품목으로 전환시킨 다음 소비지출액을 그 특정품목의 1965년 평균가격으로 나누어 줌으로써 구하였다. 합성불량이 조사품목의 실제소비량과 정확한 관련을 갖는 것은 다만 몇 가지 경우에 지나지 않는다.

지수산식은 소비자물가지수에서 15분류의 소비지출을 계산하고 단순총화로써 6대분류와 총지수를 계산하는데 이용된다. "집세" 분류와 대분류 "교통"은 예외로 (뒤에 설명된다) 가중치에 있어서는 오클랜드 (Auckland)에서 인버카질 (Invercargil)까지 같이 취급되었기 때문에 전도시가 다 같다.

산식은 또한 25개 도시를 종합한 계열 (전국지수)과 아울러 각 도시의 지수와 분류지수를 계산하는데 사용된다. 종합지수를 계산할 때에 사용되는 도시별 가격은 각분류별로 인구수에 따라 가중평균된다. 그러나 분류별로 인구수로 가중평균하거나 소분류

대분류 혹은 총품목의 소비지출 총액으로 가중평균하여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되며 이것이 전자계산기로 지수를 산출하는데 실제로 사용한 방법이다. 계산기에서는 품목별로 지역별 인구수로 가중 평균한 지수와 소비지출액으로 가중 평균한 두 가지 지수를 지수의 심사와 분석을 목적으로 분류별로 같이 비교 있다.

위의 산식에서 볼 때

(a) 각 지역의 기준시 가격을 총합하여 사용하는 경우나 또는

(b) 전 지역(분류)에 대하여 인구수로 가중 평균한 기준시 가격을 사용하는 경우나 다 같이 각 지역(또는 전체 지역)별로 비교시의 소비지출 총액(어떤 소분류나 대분류 또는 전체분류)은 기준시의 소비지출 총액과 비교될 수 있다는 것이 명백하여졌다.

각 지역별로(혹은 각지역과는 다른 전체 지역)

~222~

지수는 두가지의 지수계열이 나오게 되는데 하나는 자가와 자가의 비교 다른 하나는 전체와 자가와 비교를 취하여 작성되는 것이다. 전자는 같은 지역에서 기준시로부터 일어나는 물가변동을 시간적으로 측정하는 계열인데 역시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물가변동율을 비교할 수도 있다. 후자의 계열은 모든 동일 시점에 있어서 전국과 지역간의 상대적인 가격수준 (지역차 지수)을 직접 측정한다. 지역별로 좀 다른 형태의 생활을 하게 되므로 그 지역차지수는 다른 지역에서 의 상대적인 생계비를 측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지역간에 상대적인 가격수준을 측정한다 할지라도 지역차지수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몇 가지의 제한이 있는 것을 알아야 된다.

(α) 지역별로 교통의 수단과 그 필요성이 다르기 때문에 교통비에서는 공통된 품목을 잡지 못하였고

기준시의 총소비 지출액은 지역별로 교통수단이 제
각기 다르지만 도시별 기준시 소비 지출액은 동
일하게 추정하였다.

(b) 집세는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각지역별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집세는 쿠틀에 설명된다)

(c) 몇 품목은 큰 지역에서만 조사가 되므로 이러
한 가격이 타지역에 작용되었다

통계 작성에서는 각 주에서 몇개 지역의 지수를
산출하여 각 지역에서의 물가동향을 시간적으로 만
나타내는데 비하여 확인되는 대로 다른 각 지역간
의 상대적인 가격수준을 나타내는 지역차 지수를
독자적으로 작성 발표한다. 자기와 자기를 시간적
으로 비교하는 지역별 지수는 지역별 조건에 맞추
어서 조사품목의 품질규격이나 또는 품목까지도 달
리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다. 이 나라에서는 가능한
한 모든 지역이 전국에 대하여 자기 지역을 비교

~224~

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동일한 품질규격을 선정하여 엄격하게 고정시켜 놓을 필요가 있다.

라. 대상 지역과 인구수가중치

(Centres covered and population weights)

1955년 기준지수에서 사용되었던 "town"

이라는 용어는 개편지수에서 "centre"로 대체되어 사용된다. 오클랜드 (Auckland), 웰링턴 할 (Wellington-Hutt) 와 내피어 해스팅 (Napier-Hastings) 과 같은 몇 군데의 큰 지역은 서너개의 독립된 큰 도시 자치도시와 작은 도시등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지수목적으로는 하나의 실체, 혹은 지역으로 본다.

개편지수에서 가적은 25개 지역에서 수집되는데 이것은 1955년 기준 계열추성시보다 네 지역이 더 많아진 것이다. 테임스 (Thames) 와 카탄

(Whakatane), 하워라 (Hawera) 와 고레 (Gore) 등 새로히 포함된 지역은 도시별로 실제 인구수의 중요도로 보아서만 아니라 또한 도시내의 인구에 대한 봉사와 아울러 많은 인접 농촌지역 인구에 대한 시장지역이 되는 다수의 작은 도시를 대표한다는 견지에서 선택한 것이다. 1955년의 기준지수에서는 큰 자치도시의 인구만이 고려되었지만 개편지수에서는 전국총인구가 시장지역처럼 각각의 상대적 중요도에 따라 조사대상지역에 배분되었다. 인구가중치와 조사품목표는 이 책자의 뒷편 "표 6"에 나타나 있다.

조사지역은 더 확대되었지만 지수로 발표하는 지역은 4군데의 주지역과 10군데의 대지역으로 이루어져서 총 14지역으로 줄어졌다. 주도시와 대도시의 지수와 아울러 남북도시의 작은 지역의 지수 계열이 각각 있고 25개지역 전체를 종합한 계열은

~226~

산출하고 있다. 이렇게 됨으로써 25지역을 각각으로
보지 않는다면 각지역과 지역구별로 자기에 대한
자기의 비교와 전체에 대하여 자기를 비교하는 계
열이 있는 것으로 계산해서 (25개지역종합지수는
제외) 총 37개 계열이 나오게 된다.

따. 가격 조사 (price collection)

어느 물가지수에서나 정확한 대표 가격을 수집한
다는 것은 기본적인 필수조건이며 최근의 소비자물
가지수개편에서도 가격조사 범위의 확대와 방법, 절
차의 개선에 깊은 주의를 기울였다. 예로써 가격
사정청 (Valuation Department)에서 수집한 가격
을 기준으로 한 가구재산의 새로운 측정방법이
"주택소유비" (Home ownership) 소분류에 적용되
었다. 개인 집과 방세를 조사하기 위한 표본 조사
방법도 또한 수정이 되고 규모가 확대되었다. (위에

두가지가 다 후에 설명된다)

가격 조사를 하기 위한 대표 품목의 수가 늘었고
품질규격은 현실에 적합하도록 결정하였다. 조사
대상 지역이 네 군데가 추가되었고 특정 품목의 가
격조사가 전에는 대도시만으로 제한되었던 것이 가
능한 한 많은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각 조사지역
내에서도 1962~63년의 분포센서스 (Census of
Distribution)의 결과를 참고로 사용하여 시내와
교외 점포, 백화점 등채상과 독립적인 전문상점 등을
균형 있게 추가함으로써 조사대상처를 확대하였다.
연도별로 볼 때 매년 수집하는 가격수는 대개
2배로 늘어났다. 부록의 "표 7"에는 조사가격수와
조사빈도가 표시되어 있다.

모든 나라의 중앙통계기구의 실무적인 경험으로
보아서 접세의 경우를 제외하고 조사대상처를 임의
추출 (random sample) 하여 가격 조사를 한다는

것이 업무적으로 편리하다는 것이 증명되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이 절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대상체를 유의표본 (purposive sample) 으로 선정할 때에 어떤 의문이 생기지 않고 믿을 만한 평균가치가 나올 수 있다고 확신이 되도록 깊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통계성은 가격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일선조사원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은 조사품목의 품질이나 등급이 양조사시점간에 일정한 상태로 조사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적절히 환산하여 정정하는 엄격한 책임을 지고 있다. 상품의 양이나 질적인 변화에 따라 나타난 은폐된 가격의 변동도 지수에 따라 나타난 은폐된 가격의 변동도 지수에 반영되는 것이다. 품질 검사를 하기 위한 기초적인 재료도 지수가 포함하고 있는 모든 품목의 품질규격을 정확하고 세밀하게 정해 놓아야 된다. 근본적인 문제로서 품질은

현재의 실제판매거래에서 지배적인 대중성을 갖고 있는 상표나 품질이 지수에 반영되어야 한다. 만약 어떠한 다른 상표나 품질의 상품이 출현하여 대중성을 가지고 거래된다면 가상적인 가격을 내세운 다른가 품질변화에 따라 생긴 가격의 변동을 억제할 것이 아니라 기술적인 방법으로 품질가격을 대체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가격조사를 면접식으로 하게 되면 조사의 목적과 의의를 설명할 수 있고 조사대상처의 질문에 답변을 해 주며 상인이 필요로 하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그들을 도와 줌으로써 대상처에 이득을 줄 기회를 갖게 되고 따라서 보다 신빙할 수 있는 가격을 수집할 수 있게 된다. 가장 주의를 하여야 할 것은 개별적인 상인이 제공한 정보는 엄격히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렇게 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가격이 수집된다는 것을

~230~

믿어 마지 않는다.

주별로 조사하는 파필, 채소, 그리고 계란은 통계성 소속 일성조사원이 담당하지 않고 통계성의 지시에 따라 사회안전청 (Social Security Department) 의 직원이 수행하는데 거기에서는 조사방법과 품질 기준에 있어서 지역과 지역간 시점과 시점간에 통일성 (Uniformity) 이 유지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있다. 사회안전청에서도 특정분야의 가치는 다른 청이나 기관에 의뢰하게 되는데 기관별로 담당하게 되는 조사품목은 아래와 같다.

가액사정청 (Valuation Department) — 가구재산과 건물부분의 가액

가액사정연구소 (Institute of Valuers) — 건축비

업체조사 (State Advances Corporation) — 집(방)세

우정청 (post office) — 우편, 전신, 전화료 및 자

동차, 라디오와 텔레비전의 면허 (인가)료.

각종보험회사 (Various insurance company) — 보
험수수료,

철도청 (Railways Department) — 철도 육로
도서관의 교통요금

교통청 (Transport Department) — 도시와 장
거리 육로 교통요금

보건성 (Health Department) — 의료비

신문협회 (Newspaper proprietors Association)
— 신문가격

도시내에서 품목가격은 같은 기준으로 평균된다.
즉 도시별로 품목대표가격은 조사된 전체가격을
단순 산술 평균한 것이다. 대상처별로 특정 품목의
판매액의 크기로 상대적으로 나타내어 기준치를 부
여한다는 것은 실무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예를
들어 일반 식료품점에서 파는 감자와 채소점에서
파는 감자와 같이 품질 양에 대해서 가격이 달리

~232~

나을 가능성이 있는 품목과 대상치의 형태가 있다면 그 품목에 대하여는 각형의 대상치수를 균형있게 선정하여 가격조사를 함으로써 거의 정확한 상대적인 가중치가 적용된 결과가 된다.

바. 조사 및 지수 편제 주기

(*Periodicity of collection and index compilation*)

계절 품목인 과일, 채소 및 계란의 가격은 주별로 수집하고 그 외의 모든 식료품류의 품목은 월별로 매월 15일에 수집한다. 여기에서 식료품지수는 주별조사 가격에서 월 평균가격을 단순 평균으로 계산하여 적용함으로써 월간지수로 작성할 수 있게 된다. 식료품 이외의 품목 중에서도 소비지출액(주가중치)이 크고 전반적인 물가변동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즉 물가변동에 대표성이 있는 몇품목은 역시 월별로 가격을 수집하여 3개월간의 가격을

평균함으로써 분기 평균 가격으로 지수 작성에 이용된다. 그 외의 모든 품목(뒤에 설명되는 몇 품목은 제외)의 가격은 분기의 중앙일에 조사되고 식료품을 제외한 모든 대분류의 지수도 분기 별로 작성한다. 분기별 총지수는 식료품비의 3개월간 각각의 월간총계치를 단순 평균한 것과 식료품 이외 품목비의 분기 총계를 단순 총계함으로써 산출한다. 분기별 소비 지출 총계액을 평균하여 연간지수도 구한다. 반면에 "3월까지의 연간" 등과 같이 별력(Calendar year)과 다른 연간지수는 그 연간을 구성하는 분기 지수를 평균하여 얻는다. 즉 1966년 4월부터 1967년 3월까지의 연간 지수는 1966년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와 1967년 1.4 분기의 지수를 단순 평균한다.

사. 기준 소비패턴의 유도

(Derivation of the basic expenditure pattern)

위의 제3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지수의 기준 패턴은 1962년 4월 1일부터 1963년 3월 31일까지의 연차동안 지수가 대표하고 있는 분야에 속한 소비상품과 서비스품목의 총소비지출액에다 일차적인 기준을 두고 있다. 총소비지출액 계산자료 중 어떤 것은 연도가 지난후에도 일년 후 또는 그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수집되므로 품목별 총소비지출액의 계산은 그 후라야 된다. 이리함으로 해서 만약 1966년 초부터 지수를 발표해야 된다면 1955년의 계수를 기다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 이었고 그 당시에는 1963년 3월까지의 연차자료가 최선의 것으로 준비될 수 있었다. 소비지출액은 국민생산액에다 수입액을 합치고 수출액을 빼 데다 산업생산이나 가공에 들어간 금액과 가계지출 이외

의 지출액을 배서 계산하였다.

자료의 수집가능성에 따라서 물량적으로 그리고 결과적으로 소매단계에서 소비지출한 금액을 계산할 수 있었으며 그리고(혹은) 할인의 금액 기준과 각기 다른 가격수준간에 정상적인 마진(margin)을 계산할 수 있었다. 총소비지출액의 계산은 개별상품 및 서비스품목별로 그리고 동종 품목의 유별로 계산을 하였다. 지수개편에서 주된 작업이 되는 그 계산은 통계청에서 가지고 있는 생산과 무역에 관한 상세한 통계 자료를 이용함으로써 작업이 촉진되기는 하였으나 또한 그 외에도 다른 청이나 기관의 기록자료를 많이 조사검토할 필요가 있었으며 백화점이나 다른 기관 또는 개인무역업자 등 많은 곳에 걸친 특별 조사를 필요로 하였다. 가능한 한 어느 곳이든 1962~63년의 분포센서스와 같은 다른 조사와는 관계없이 특별 조사를 하였다. 집행원

~236~

과 후권의 가금류등에서 나오는 비상품생산의 혜택도 평가할 필요가 있었지만 할 수 있는 한 아래의 것에 대하여 할인금을 조사하였다.

(i) 주택 구입

(ii) 가구에 할인가격으로 판매한 것 (마료, 구매조합, 특매 등)

(iii) 직권에 대한 무상공급 등

자기소유의 상점에서 상품을 공급받았다던가 직권들에 대하여 무상으로 이루어진 공급은 소량 단위와 소매가격으로 평가하지 않고 대량적으로 또는 특혜판매로써 할인가격을 평가하였다.

개별상품 및 서비스와 동종품목의 유별지출액은 결과적으로 총인구의 1인당 평균액으로 표시되었으며 그것을 1955년 개편시의 1952~53년 추계치를 1962~63년의 물가수준으로 조정한 소비지출액과 비교하였다.

아, 내구소비재 - (특수한 문제점)

(Consumer durables - special problem)

내구소비재의 기준년지출액을 잡아주는 문제에 있어서 즉시 소비하기 위한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와는 달리 기준년 이전에 구입하여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어느 기간에 내구소비재를 구입하였다면 그 경비는 사실상 그 기간의 필요성을 보충하기 위한 경비보다 큰 것이다. 즉 내구소비재는 오랜 기간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구입한 기간에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상품의 가치는 오랜 기간을 두고 서서히 상실되어 가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지출액과 소비액의 차는 가구나 식육 주택의 설비 등 내구소비재가 구입한 기간 중에 다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는 점에서 생각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새로운 내구소비재를 구입하게 되고 주택 및 가구가 일반적으로 개선되어 가고 있는 데에서도

생긴다. 예로써 1956년과 1961년의 주택센서스에서 생활고를 가진 개인주택은 54%에서 81%로 늘어났으며 세특가를 가지고 있는 개인주택은 57%에서 78%로 늘어났다. 1955년 기준 구지수에서 이러한 상품 분류의 가중치는 필요가치(사용가치)만큼 주어졌다. 즉 소비액접근법(consumption approach)에 의하여 가중치가 부여되었다. 대부분의 모든 다른 나라에서는 소비물가지수 가중 패턴의 기초자료로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가계조사결과에서 가중치를 직접 유도하는 편이 작업의 곤란성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사실에 입각하여 내구소비재(주택은 제외)의 가중치는 지출액접근법(expenditure approach)을 적절하게 적용하여 측정하였다. 제10차 국제노동통계관회의에서도 지출액이나 소비액이나간에 내구소비재의 가중치를 유도하는데 있어서는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고

인정하고 뉴지랜드의 거품소비자물가지수에서 내구소비재의 가중치를 책정한 실무방법을 정상적인 방법이라고 확인하였다. 이렇게 되어서 개편지수에서는 내구소비재품목의 가중치가 지출액에 기준을 두고 있으며 또한 이 방법이 국제적으로 통일 적용되기를 바란다. 이러한 개념적인 차이의 영향으로 해서 거품지수에서 소분류 "가구집기"와 대분류 "잡비"의 "기타 잡품비"의 품목들은 가중치가 좀 늘어났다.

앞의 경우와 비슷한 특수한 난문제가 텔레비전의 출현과 더불어 일어났는데 지수기준시의 지출액을 계산하자니 시간이 흐름에 따라 지출액이 증가되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1962년 4월 - 1963년 3월까지의 지출액과 1964년 1965년의 지출액과는 텔레비전의 교체와 전체 가구가 텔레비전을 구입할 때까지의 증가시장의 개입정도등으로 해서 직접 비교하여 이용할 가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준년의 지출액은 지수의 통용에 연관이 큰 해 즉 1964~65년의 지출

액으로 잡았다. 텔레비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영화 관람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영화관람료의 가중치는 앞으로의 예상치보다 더 적게 책정하였다.

뉴저랜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내구소비재는 주택이다. 대개 모든 다른 나라에서는 특히 임금 봉급 생활자에게는 소유주택보다 집세가 훨씬 중요하지만 몇 나라에서는 "주택소유비"까지 파악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다른 내구재가구의 가중치를 부여하는데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지출액접근법은 주택소유비의 가중치를 책정하는데에는 적합하지 않으나 집세의 가중치를 책정할 때는 적용하도록 권고한다. 이것은 구소비자물가지수에서와 마찬가지로 개편지수에서도 적용한 기준이다. 이 품목에 대하여는 제 10 절에서 주택소유비 (Home ownership) 란 제목으로 더 상세히 설명된다.

자. 물량가중치의 의미 및 계산

(meaning and calculation of the quantity weights) 상세하게 기입, 정리한 품목별 지출 구조표를 가지고 다음 단계의 조정은 지출액을 물량가중치 (quantity weights) 로 환산하게 된다. 이렇게 계산한 물량가중치는 꼭 필요하다기 보다 오히려 지수작업에서 편의상 이용하게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지수는 물량가중치없이 개별품목의 가격지수를 기준시의 지출액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하고 있다. 이 계산절차에서 선정된 품목의 대금가격은 그 품목의 기준시가격으로 나누어 짐으로써 기준시를 1로 한 가격비율 (price relative) 로 바꾸어진다. 각종 또는 유사상품 (서비스) 의 비교시 유별지출액은 해당류 (group) 의 기준시 지출액에다 가격비율을 곱함으로써 구할 수 있다.

~242~

한편 다른 계산방법으로 해당품목의 기준시지출액을 기준시가격으로 나눔으로써 물량가중치를 유도할 수 있는 것도 명백한 사실이다.

이 물량가중치를 해당품목의 대표가격과 승함으로써 직접적으로 비교시의 분류별 지출액을 계산할 수 있다.

지출액은 모두 1인당 평균으로 표시되었다 동시에 이러한 절차로 계산된 품목별 물량가중치는 만약 여러 품종과 유사품목에 지출된 금액을, 지수에서 정한 대표품목에 지출한 것 이라고 가정한다면 1인당 구입한 대표품목의 물량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 물량은 여러 경우에 있어서 특정품목의 1인당 실제구입량과 매우 근사하게 접근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해당기관의 지출액을 당시의 가격으로 나누어 물량을 추정하는 정

우 추정치와 실제물량의 관계는 바다와 같이
 특수한 한가지의 품질만 있고 단위가 일정하
 고 거의 같은 가격으로 거래되며, 유사품질로
 같이 어울려서 파악되는 것이 없다면 매우
 근사하게 될지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도 예
 외가 있다. 대개의 경우에 상세히 정해진 가
 격 등급과 상표에 따른 소매가격은 특 품질
 의 차는 여러가지로 달리 나오는 가격의 범
 위를 이루고 있으며 어떤 것은 소량의 소매
 가격이 아닌 대량거래가 되고 또한 어떤 것
 은 동종의 품질이지만 가격조사가 되지 않았
 다든가 해서 물량가중치는 절대적인 물량구입
 의 특징치가 되지 못한다. 그러나 지수에서
 이 가중치를 사용하는 것은 전적으로 효과가
 있는 일이다. 왜냐 하면 그 가중치의 사용은
 단순히 가격조사가 안된 품질이나 품목도 가

~244~

격이 조사된 품목과 같은 비율로 움직이고 있다고 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절차에서 볼 때 지수가 대표하고 있는 분야의 전체지출액을 조사 품목의 가중치로 나타낸다는 것을 확실히 알수 있으므로 그 방법으로 대분류와 총지수의 가중치는 태양소분류와 대분류의 각각의 가중치를 합해서 나타내지 않아도 독립적으로 직접 부여하게 된다.

물량가중치를 구하는 실제적인 절차는

- (a) 1962 ~ 63년 지출액이 가격을 수집하기 위하여 선정된 대표품목에 전환된다. 여기에서 위상분류간에, 관군데 또는 그 이상 여러 곳으로 지출액을 할당해야 되는 일이 자주 일어난다. 새로운 품목이 많이 추가되었는데 그 이유는 구지수에 포함된 지출분야의 대표성을 늘이기 위하여 또는 새로히 포함된 지출분야를 대표하

기 위해서이다 (구지수 품목중 많은 품목의 품질규격을 현실에 적합시키기 위하여 수정 하였다)

(b) 대표품목별로 정리된 1962~63년의 지출액은 1965년 (당력년)의 물가수준으로 작업을 하여 1965년의 지출추정치를 구하였는데 그 작업은 구전국지수의 품목과 분류의 가격변동에 기준을 두었다.

(c) 1965년의 지출추정액이 지역별·가격을 신인 국가중치를 사용하여 합성한 동년의 새로운 전국평균 가격으로 나누어 진다.

계산된 가중치의 결과는 이 보고서 표 2에 전국평균 기준시가격 및 지출액과 같이 나와 있다. 1967년 7월부터 화폐제도가 십진법으로 변천되므로 그 후에 비표를 빨리 할수 있도록 가격과 지출액을 페스 (pence) 와 아

~246~

을러 센트 (cents) 로 표시하였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물량가중치는 품목별로 실제소비량을 정확히 표시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었으나 알아보기 편리하도록 1인당 소비량의 단위로 나타나 있다 또한 물량가중치는 특수품목의 지출액이 특수급의 인구에게만 제한되는 경우가 있지만 대개가 전체 인구의 1인당 연간 평균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수품목의 지출액이 특수급의 인구에게만 적용되는 예로는 "대인용 의복류" "주간의 집세" "자동차를 사용하는 가구의 월간가스비" 등이 있다 월간가스비의 예를 들것 같으면 월간청구서 0.64에다 뉴지랜드의 평균가구인원수 3.8을 곱하면 2.3이 되는데 이것은 연 12개월에 걸쳐 가스를 사용하는 인구수가 2.3인 밖에 안된다는 것을 표시한다 (지수가중치는 개별적

으로 연간소비액을 이용관 것이다) 청구서 가격
(1,600 임방휘트당)은 전형적으로 나타나
있지만 가구당 전국평균의 월간청구서는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위의 비율은 정확한 것이
아니다. 그 외에도 같은 예는 많다.

물량을 고정시킨다는 개념은 어느 가중치나
일정한 금액으로 표시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
한다. 예를 들면 보험료를 대표하고 있는 정
해진 금액의 양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나타나
는 물가변동에 따라 움직임을 보이게 되며 일
정한 금전량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이점으로 해서 연간 할당금이 붙고 있는 "가구
지원" 세분류내의 "가구보험" 품목의 요금
(price)은 정해진 위험도에 따른 할당율과
또한 "가구지원" 세분류지수의 움직임에 따른
보험료의 변동등 두가지 요인에 기인하여 움직

이게 된다. 이 보험료의 대표도는 "가쿠지원" 세분류 지출액의 상대적인 수준에 따라 지역별로 다른 것은 확실하지만 이 점을 확실히 구분하자면 상대적인 지역별지수에 주는 영향이 별 의미가 없으면서 지수작업을 하는데 까다로운 문제점을 야기하게 된다. 그러므로 전국지수의 "가쿠지원" 세분류지출액은 전지역의 보험금액의 움직임을 가지고 잡았다.

다른 두가지 보험품목 즉 주택보험과 자동차보험도 같은 경우가 된다.

주택보험에 있어서는 지역별 보험금액이 지역과 지역간에 분기와 분기간에 다르게 움직이는 것을 보이기 위하여 각각 다른 주택가격에 따라 지수계열이 작성된다.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신형차의 출현으로 가격이 변동될 때에는 보험액이 변하지만 고정된 제3종 재해보험액의 최

대역이 적용되었다. “주력소유비” 세분류의 거의 모든 품목에 있어서도 가격변동을 측정하는 두가지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방법을 적용하였다.

지수의 가중페턴을 잡는데 있어서 특별한 기술적인 문제가 개입하고 있는데 계절성이 강한 과일이나 채소 난류, 집(방)세 주력소유비 가스 공급이 안되는 지역 및 교통에 있어서 적용된 특수한 기술적인 방법은 다음에 설명된다.

차. 특수방법

(Special procedures)

(i) 계절품목 (Seasonal items)

가중치를 고정하여 높은 소매물가 지수에 있어서 계절품목의 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큰 난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연중의 계절에 따라 공급량이 매우 큰 파동을 보이고 몇달

동안 전혀 제외하지 않는 품목들도 많은데
연중 매월 고정된 가중치를 계속 사용한다.
는 것은 확실히 불합리한 것이다. 또한

그와 비슷한 문제로 계절적인 가격의 파동이
있는데 계절품목의 가격을 조정하지 않고 설
제 거래가격을 지수에 적용한다면 지수는 매
년동시점과 시점간에 거취적으로 올라갔다. 내
려갔다. 더 올라갔다. 더 내려갔다 하는 파동
을 보일 것이다. 그러한 계절을 보고 단기간의
근본적인 물가추세를 파악한다는 것은 불가능
한 일이다.

소비자 물가지수에서는 1949년에 계절식
료품목이 지수에 삽입될 때부터 그것들에 대
한 특별한 방법을 적용하여 왔다. 개편지수에
서는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 바꾸지 않았다.
그러나 새로운 계절품목이 조사대상품목으로

추가되었고 기본적인 계절물량과 가격패턴이 최신의 것으로 대체 되었다 계란 품목은 전에는 계절성 과일 채소와 같이 취급되었고 분류 전체에 대하여 단일계절조정방법으로 조정하였으나 개편지수에서는 분리하여 조정하였다. 지수로부터 가격파동의 영향을 제거하기 위하여 감자와 양파를 계절성 과일과 채소류에 포함하였다. 전에는 감자와 양파가 비계절성품목으로 취급되었었다

원칙적인 계절조정의 방법은 아래와 같다.

(a) 매월 정상적으로 가능한 양의 상품이 들어 있는 "바스켓" (Basket) 으로 연간 12개의 각각 다른 "바스켓"이 있다.

(b) 월별로 1달의 바스켓의 지출총액 (해당월의 가격으로) 을 구하여서 기준년도의 해당월의 바스켓비용과 비교한다 기준시에 사용된 가격은 해당

월의 실제가격은 아니지만 1965년의 평균가격과 차가 심할 때에는 정상적인 계절가격 패턴으로 조정할 것이다.

(c) 이 비표에서 나오는 물가지수는 1965년 평균 물가수준에서의 변동을 측정하는 것이다. 지수내에 계절요인을 포함하지 않는 기준지의 정상계절가격 수준과 현재의 계절가격수준을 비교한 것이므로 이 비표의 결과 나온 지수는 역시 현재가격의 정상계절패턴을 나타낸다.

(d) 산출된 각각의 매월의 지수는 1965년 평균 수준에 대한 현재가격수준의 정확한 측정치이므로 월별 월별지수의 비표는 비록 월별지수가 기준년 해당월의 각각 다른 바스켓을 기준으로 계산된 것이지만 현재물가수준의 변동을 측정하는 것이 된다.

(e) 이 월별지수는 가격조사가 되는 그리고 안되는

전 계절품목의 연간 지출액으로 나타난 기준시 지출액 가중치와 곱한다. 그러므로써 더 광범위한 분류의 지수를 내기 위하여 비계절품목의 총계치를 구하게 된다.

여기에서 사용한 작업방법은 단순 12개월간 각각의 계절조정물량가중치를 사용한 개념적인 측정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물량가중치는 비교시의 물가와 관련해서 비교시의 지출액을 산출하게 되고 비교시의 지출액은 비계절품목의 지출액과 직접 합하여 세분류와 대분류의 총계치를 구하게 된다. 이 총계치를 기준시에는 가격조사가 된 것도 있고 안된 것도 있는 계절품목의 연간 지출액을 포함한 기준시 총계치로 나누어 줌으로써 지수가 나오게 된다.

기준가격 (1985년 평균에서의 정상계절가격)
과 아울러 계절조정물량을 구하는 절차는 아래와

같다.

(2) 월별 평균가격이 1980년 7월부터 1985년 6월까지 5년간에 걸쳐 계산되었다. 이것들은 매월을 계산기간의 중간시점인 1982년 12월 31일로 집중된 가격수준으로 만들기 위하여 추세치로 계산되었다. 추세치는 1981년 6월 30일을 마지막으로 하는 연중 월간에 추정이 되었는데 여기에는 각 품목별로 4년간의 추세가 나오고 연별로 12개의 수치가 나오게 된다. 현재의 어느 달의 추세는 현재의 실제가격 추세를 반영할 뿐 각각의 달이 같은 시점으로 집중되지 않는 5년간의 월평균의 영향이 지수계열에 나타나지 않도록 그러한 조정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한 조정작업은 12개월에 의한 평균치로 대표되는 기간에 영향을 주는 어떠한 추세도 제거하고 1982년 12월 31일의 추세수준에다.

모든 가격을 집중시키게 된다.

(b) 과잉공급 과소공급등의 임시적인 상태가 주는 영향을 제거하기 위하여 같은 5년간에 걸친 가구당 평균물량이 계산되었다. 가구재배 (양식) 물의 지수를 다른 것들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사실상 실제 구입된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구입된 것처럼 주로 공급될 시기의 달에 포함시켰다. 달갈의 소비량은 약간의 상승추세가 명백하였으며 이것도 가격계열로부터 추세를 제거할 때 사용한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제거하였다.

(c) 위의 2패턴을 서로 비교함으로써 어느 품목은 특정한 어느 달에는 가격포착의 곤란상 무시할 정도의 시장철회량등의 이유로 계산해서 제외하게 된다. 장군물과 온실도마도의 가격은 1956년부터 수집되어 왔기 때문에 그들 품목의 계절패턴을 계산할 수 있다고 따라서 지수에 포함시킬

수 있었다.

그들 품목은 지난번 개편시에는 품목의 중요도는 상당하였지만 그 당시 과거부터의 가격자료가 정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지수에서 제외하였었다.

(d) 그 다음에는 지수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한 품목들의 물량과 가격을 서로 품해서 월별로 12개월간의 각기 다른 "바스켈"의 지출총액을 구한다. 월별로 계산된 지출총액은 모두 1962년 12월 31일을 중심으로 집중시킨 1960~65년 평균 가격수준이라 12개월간의 지출액을 합치면 그 가격수준에서 12개 "바스켈"에 대한 연간 지출액이 된다.

(e) 1963년 3월까지의 12개월간에 대하여 월별 가격에다 같은 물량을 품해서 산출된 금액을 (d)절에서 설명한 월별지출총액과 서로 비교하여

12개의 지수를 구하였다.

(f) 위의 12월의 지수를 단순산출평균한다 이것이 1960 ~ 65년의 평균가격수준 (1962년 12월 31일을 중심으로 집중시킨) 에서 1962 ~ 63년 3월까지의 연간평균물가수준 (1962년 9월 30일을 중심으로 집중시킨) 으로 한 기준계절가격패턴으로 전체적으로 가격을 조정하는데 사용한다 그러나 필요한 것은 1962 ~ 63년 3월까지의 연간 평균가격수준에 의한 12개월간의 월별바스켈지출액과 연간지출총액이며 이것은 (d) 절의 연간지출액에다 위의 12개월 평균지수를 곱하여 구하게 된다.

(g) 전 계절품목에 대하여 1962 ~ 63년 3월까지의 연간지출액에 의한 가중치는 지수 전품목 (분류) 의 기준지출패턴을 정하는 큰 작업의 일부분으로 독립적으로 수행되었다 그 계산은

지수 작성목적으로 가격조사를 하는 품목이든 안 하는 품목이든간에 전 계절품목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가구재배 (양식) 물과 대량구입 등의 구입가격은 할인가격으로 잡아서 계산하였다.

(h) (f)절의 수치와 (g)절에서 미리 정해 놓은 수치와 비교하면 대표도조정계수 (coverage correction factor) 가 나오는데 이것은 특정품목의 12개월별 지출액으로 이루어진 연간지출총액을 가지고 가격수집이 되는 그리고 안되는 계절품목들의 완전한 연간지출총액을 유도하는데 필요하다.

(i) (d)절의 계산으로 돌아 가서 12개월별 지출액은 연간지출총액 (위의 12개월 지출총액을 합한 것) 을 가지고 나눴으로써 월별로 계절조정계수 (seasonal correction factor) 를 구하였다.

이) 이들 계산조정계수 (Seasonal correction factor) 와 대표도수정계수 (Coverage correction factor) 를 월별로 표해서 계절 및 대표도조정계수 (Seasonal-cum-Coverage correction factor) 를 구하였다. "계절 및 대표도수정계수" 를 유도하는 이 계산은 한편으로 계절성파일과 채소에 대하여 다른 한편으로는 달갈에 대하여 각각 독립적으로 이루어졌다 (각각의 월간수치는 연간수준으로 조정된다).

계절및 대포도수정계수

월	계절성 과일 및 채소	계 관
1	12. 60	12. 77
2	12. 38	12. 38
3	13. 37	11. 49
4	15. 34	11. 21
5	15. 37	10. 35
6	13. 79	10. 36
7	14. 64	10. 63
8	16. 03	11. 48
9	12. 53	13. 64
10	11. 77	13. 93
11	12. 14	13. 38
12	11. 53	12. 15

(K) 이 계절 및 대표도수정계수는 "표 3"에 나타나 있는 물량가중치를 구하기 위하여 (b) 절에 기술한 정상계절물량과 곱해 진다 그것은 연간수준에서 가격조사가 되어 있지 않은 품목에 대한 계절 및 대표도 조정계수라고도 말할수 있다.

(9) 1965년의 실제가격에다 수정된 가중치를 적용하게 되면 1965년중 각월간에 계절변동을 조정한 가격수준에 따른 변동을 반영하는 12의 각기 다른 월간총계치가 각 지역과 분류별로 나오게 된다 각 지역과 분류별로 12개월치를 평균함으로써 지수의 기준시총계치가 되는 것이다.

(M) 25개지역 전체에 대하여 그 평균치를 합한 것이 과일과 채소는 36670 이고 계란은 10830 인데 이것은 표 1, 2, 와 3에 나타나 있다.

(N) (a) 절에 기술한 기준가격패턴 (Basic Seasonal price pattern) 이다 위의 수정된 가중치를

~262~

사용하여 표준으로써 12월별로 동일한 총계치를
즉 계절성 과일과 채소는 3.386d 계란은 1030d
를 얻게 되었다 이것들을 (m) 절의 수치와 비교
함으로써 (나는다) 1960-65년 평균물가수준
(1962년 12월 31일을 중심으로 집중시
킨)에서 본 1965년 평균물가수준 (1965년
6월 30일을 중심으로 집중시킨)의 물가변동
을 나타내는 지수가 된다 위의 지수는 "기본정
상계절가격" (basic normal seasonal
price prices) 을 가지고 1965년의 물
가수준으로 설명할때에 이용되었다. 그것들이 "표
3" 에 표시한 바와 같이 1965년의 기본 정
상계절가격이며 품목별 지출액을 계산하는데 이용
되었다.

위의 설명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확실히 알려
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a) / 2개월간 월별로 계절성을 조정한 가중치는
그 품목이 시장에서 월별로 가중치 만큼의 상대
적인 비율로 정상적으로 구입가능하다는 것을 표
시한다. 지수에서는 매월별로 구입가능한 계절품목
의 가중치가 정확한 비율로 책정되었다.

(b) 비교시점에 있어서 그때 그때의 가격에다 이들
가중치를 곱함으로써 모든 (가격조사된 그리고 안
된) 계절품목의 지출총액을 연간단위로 나타낼수
있으며 이것은 역시 연간단위로 비계절품목의 지
출액과 직접 합산할 수 있게 된다 지수에서 계절품목과
비계절품목의 가중치는 각각의 지출액에 따라 정확한
비율로 중요도가 나타나 있다.

(c) 현시점의 지출액을 기준시의 지출액에다 비교한
다는 것은 계절품목분류프로 본) 이나 비계절품목
이나 막론하고 1965년 평균과 비교하는 것이
된다. 계절품목이나 비계절품목이나 지수에서는

렌시점의 가격수준을 상대적으로 1985년 평균 가격수준에 대하여 비표 측정하는 것이다.

(d) 지수에서 계절품목에 대한 12개월 전체의 기준시지출액은 월별로 월정상계절가격수준(1985년 평균수준)을 나타내게 되므로 역시 계절가격을 사용한 렌시점지출액과 비표하게 되면 그 결과치에는 계절성 요소가 포함되지 않게 된다. 이렇게 되어서 지수는 계절성이 조정된 것이다. 계절가격패턴이 기준시에 접해 놓은 기본패턴에서 변화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서 지수에는 계절적인 파동(U)이 없는 것이다.

(U) 이것은 계절성파일과 채소 그리고 계란에 대해서는 사실이다. 그러나 지수에는 계절성을 약간 보이면서도 의미있는 계절가격동향을 보이지 않는 몇 품목이 산재되어 있다.

위의 기술적 방법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또 하나

의 문제는 매년 봄과 여름에 적용하는 낮은 값의
 묵은 감자를 신출회하는 고가의 감자로 교체하는 방
 법이다. 공급상태가 정상적이라는 조건하에서 묵은
 감자와 햇감자의 가격은 보통 아래와 같은 비율로
 합성된다.

감자가격 비율

	북도 (North Island)		남도	
	구	신	구	신
	백분비 (%)		백분비 (%)	
11월	75	25	100	-
12월	25	75	50	50

1월부터 10월까지 당시 출회하는 것 - 100 퍼센트

이들 비율은 특수한 공급상태로 인하여 때때로 달라진다.

(ii) 집세 (Rents)

지역이 다름에 따라 주택은 여러가지로 각기 복잡한 상태를 이루고 있으므로 지수에서 전지역에 대하여 같은 "레지멘"을 적용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집세의 가중치는 여러 지역에 있어서 각기 다른 범주의 주택에 따라 어느 정도 다른 유희성을 반영한다.

1981년 주택센서스의 통계치를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은 백분비분포가 전국범위로 결정되었다.

(a)	백분비 (%)
주 택 (Houses)	75
프 램 (Flats)	25
	100

(b) 공공주택	
방 4 개	43

백분비 (%)

방 5개 44

방 6개 13

100

(c) 개인주택 -

방 4개 41

방 5개 45

방 6개 14

100

(d) 공공주택 -

방 2개 30

방 3개 25

방 4개 45

100

(e) 개인주택 -

	백분비 (%)
방 2개	27
방 3개	40
방 4개	33
	<hr/>
	100

그러나 공공주택과 개인주택 그리고 공공프랭과 개인프랭의 분포는 지역별로 다르다 이들 분포는 14개 지수지역과 남북도서 2개의 적은 지역군에 대하여 각각 12개 범주의 주택으로 구분하여 백분비 분포로 환산되었는데 이들 각지역은 지수(집세분류) 목적에서는 단일실체(지역)로 취급되었다.

모든 범주에 속하는 주택의 가장된 1965년 평균주간세는 많은 범주에 속하는 주택의 각각의 평균적인 집세를 연 4분기를 통하여 분포백

분비 가중치를 가지고 가중 평균하여 계산하였다.

그리고 전체지역 전체범주의 평균집세는 각
기 해당인구수를 가중치로 하여 가중평균치로
계산하였다. 미리 정하여진 1965년의 1인당
연간평균집세 지를액이 위의 수치로 나누어져서 6463이라
는 전체범주의 가중치가 주어졌다. 이 수치가
각 지역별 집세의 가중치로 정하여졌
고 다시 전에 계산되어 있는 전 범주
에 속하는 주택의 평균주간 집세의
수치를 이용하여 각 범주의 가중치를
배분하였다. 각 범주별로 주어진 가중
치는 "표 4"에 나타나 있다.

~270~

지역별 간 집계 분류의 가중치는 지수에 포함된 전지역의 인구에 대한 지역별 인구수를 가중치로 책정하였다.

공공주택과 "프렐"에 대한 집세는 "업체 회사 (Stats Advance Corporation)"에서 제공하는 자료로 이들 범주의 것을 평균한 것이다.

개인주택과 프렐에 대한 집세는 특별표본조사에서 얻어진 평균치이다. 표본 프레임 (Sample frame)으로 가격사정청에서 응답하는 등급 가격 사정 기록부를 포함하고 있다.

지수 지역 내에서 재산조사를 하기 위
 한 무작위 표본 구역 (Random
 sample blocks) 이 선정되었으며
 각 구역은 기록부상에 계속적으로 번호가
 주어진 약 30의 주택으로 이루어 졌다.

이들 표본구역에서 어느 주택이 새로 들어
 왔는 주택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기록부를
 가지고 조사하였으며 매분기별로 주택의 소유
 주에게 우편조사표를 보내어 방수와 방세
 를 확인하고 있다.

가격사정청에서는 표본구역내에서 세 놓기
 위하여 건립한 주택의 유무 또는 주택소유주
 가 거주하던 주택이 셋집으로 변한 주택의 유무

~272~

등 표본구역에 대한 자료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이 표본을 최근의 실정에 맞게끔 관리하기 때문에 개별표본추락을 대상으로 계속적으로 조사를 하여도 집세에 있어서 문제가 될 만큼 하향편기 (Downward bias)를 나타내지는 않을 것이다.

개편지수에서는 개인셋집의 지수적용방법이 현저하게 수정되고 조사규모가 확대되었다 집세에 있어서 지수지역간의 그리고 각형태의 범주간의 변동에 대한 연구를 하여서 표본조사에서 획득한 평균 집세추정치의 신뢰한계 (confidence intervals)를 계산할 수 있었다. 이러한 방법으로 조사의 정확성을 계속 유지하였다. 불응담 관리불충분등 특별한 경우에 일어 날수 있는 비표본오차 (non-sampling error)를 억제하기 위하여 일선 조사원을 동원한 두드러진 특별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iii) 차구소유 (Home Ownership)

빛으로 주택을 저당잡힌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하여간 차구소유의 집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나라에서는 가장 일반적인 주택보유형태이다. 1949년부터 소비자물가지수가 나오기 시작한 이래 지수에서는 주택소유비를 측정하여 왔다. 가중치를 부여하는데 있어서 임대료금을 전국적으로 표시되었지만 수리비를 구성하고 있는 품목들이나 보험, 지방세, 주택의 감가상각 및 재산소득등에 대하여는 독립적으로 추정하였다. 이러한 개념의 접근방법이 신지수에서도 유지되었으나 이들 비용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상당수의 새로운 품목이 추가 개선되었고 일반구매나 특매에서 일어나는 가격에 의한 비용과 기타 일반비용과 아울러 주택선립비등이 또한 추가되었다. 뉴저랜드국민은

높은 기동성에 따라 재산물을 자주 대체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삭제를 할 경우가 생긴다.

수리비에 있어서는 3가지의 특징 수리노임이 대표적인 조사품목으로 추가되었다. 지방세에 대한 조사는 1년에 단 한번 연간지방세의 고지서가 나오는 8월경에 조사된다. 지수에 적용한 가격은 거주재산에 대한 기본세와 아울러 특별세와 수도요금인데 가격사정청에서 제공한 전형적인 거주재산에 대한 평가액을 파운드 (£)로 계산한 것이다. 가격사정청에서 제공한 평가액은 가끔씩 지역별로 동일한 형의 주택으로 표시하였고 각 지역별로 5년에 한번씩 재평가를 하여 최근에 맞도록 표시하였다. 한편 새로 발급한 지방세 고지서에서 세액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변동액을 세금의 납부기인 두분기, <12월 및 3월로 끝나는 분기에 공평히 분

배하여 적용한다.)

신재산액지수 (new index of Property Values) 개편지수에서 가장 큰 혁신은 주택의 감가상각, 재산소득, 보험 그리고 재산표체에 따른 비응등에 대하여 각지역별로 수립한 가구재산 판매자료를 근거로 별도로 측정하여 지수에 적용한 것인데 현재 가격사정청에서 지역별로 이 자료를 수집 종합하고 있다.

현재 가격사정청에서는 지수지역을 이루고 있는 거의 전지방에서 가구재산과 건축부문의 이전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가구재산을 건축시기에 따라 6범주로 분류하였는데 그것들은 1914년경 이전에 건립된 고층주택형 1915년부터 1929년 사이에 건립된 주택과 1930년대, 1940년대, 1950년대, 1960년대에 건립한 주택등 4범주까

있다. 지역별 범주별로 일어 나는 이전 (transfer) 은 6월 또는 12월까지의 6개월동안에 축적 된 상태로 명부에 의한 평가와 판매가격이 계산된다. 지역별로 명부에 기입되어 있는 모든 금액은 동일한 가격조정기준에 의한 것이므로 명부에 기입된 금액에 대한 판매가격비율의 변동은 즉 시장가격의 변동이 되는 것이다. 통상 지역별로 금액을 재평가 할 때에는 보고서에 투신의 두가지 금액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두가지로 표시된 가격수준에 따라 연결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가격조정청의 자료는 주택건설 시기의 각 범주와 각 지방의 건축부문을 만들기 위한 그리고 과거 10년 이상으로 확장을 위한 시장물가지수와 금액지수를 작성 가능하게 하였다.

그리고 대표적인 가구재산에 대한 지수계열은

시장가격에 의한 금액의 시계열로 환산되었다.
주어진 범주에 속하는 대표적인 가구재산에 대한 최근의 시장가격은 최근 5개년의 모든 판매가격을 고정가격(최근시점 기준)의 파운드(鎊)로 환산하기 위하여 기수를 사용하여 구하고 그리고는 이들의 평균적인 가격을 계산한다. 다음에는 이 최근의 시장가격이 기수(최근시점 = 1)와 곱해져서 시장가격계열이 나오게 된다. 건축부문에서는 대표적인 부문의 금액을 단 2년기간을 가지고 계산하였다. 한 지수지역이 1개소이상의 지방 주체지역으로 이루어 졌을 경우에는 각지방의 판매전수를 가중치로 하여 건립연도에 따른 범주별로 그 지수지역의 가중평균치가 계산된다.

지수작성을 목적으로 가격을 조사할 때에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가능한 한

가격조사 품목의 특성(품질가격)이 어느 조사시점에서 그 후의 다른 조사시점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변화가 없도록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같은 특성에서 가격이 조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상태에서 구입되고 판매된 실존하는 주택의 가격을 조사하는데 있어서 어느 주택이나 (또는 어느 주택전립시기의 범주나) 한 조사시점에서 그 후의 다른 조사시점에 이르는 동안 바뀌어지고 있다. 이 문제로 말미암아 주택의 연령을 포함하여 모든 특성을 고정하여 놓은 가구재산가격에 대한 자료를 사용하게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용한 방법은 때때로 달라지는 가중치로써 주택전립시기의 여러 범주를 가중평균하여 그 가중평균한 주택의 연령이 일정하도록 유지시킨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 가중치를 변경

하는 것은 여러 다른 시기에 주택을 건립하였으나 만차 주택의 연령도 그렇지만 다른 점에서도 달라질수 있을 것이므로 평균적인 주택 (Average house) 의 특성속에는 다른 변화요인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인식된다. 사실상 가격사정청에서 작성한 계수를 보면 1930년대의 불황기에 건립된 주택은 위치, 규모, 질 등에 있어서 그 전에 또는 그 이후에 건립된 주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주택만이 평균수준보다 높은 것을 알려 주고 있다. 그렇지만 하여간 주택의 연령은 주택가격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주택연령을 무시하기 보다는 그것을 중요한 요인으로 고정시켜 놓은 것이 옳다고 사료된다.

가격사정청의 주택건립 시기의 범주에 따라 1965년의 전국주택분포의 추정치가 작성되었다.

여기에서 전주택의 평균연령은 27.5년이라는 것이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1960년, 1955년, 1950년의 주택분포추정치가 작성되었고 또한 1970년, 1975년에 대해서도 가격시정침에서 개인주택에 대한 연구작업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예상분포추정치를 계산하였다. 1965년에서 시작하여 앞으로 6개월간격으로 아래와 같이 되도록 새로운 분포치를 계산하는데 수학적공식이 채용되었다.

(a) 모든 시점에서 있어서 전주택의 가중평균한 연령이 27.5년이 되도록 고정시킨다. 단 최근 범주의 주택연령은 3개월 간격으로 계산하고 그 외는 한시점에서 다음 시점까지 6개월의 간격으로 파악한다.

(b) 10시점의 간격(5년)에서 분포결과는 위에 기술한 추정분포치와 비슷하게 된다.

이러한 분포치는 일정한 연령의 주택에 대한 단일 시장가격계열을 만들고 지역별로 기타 특성치를 계산하기 위하여 각 지수지역별로 6개의 주택전립시기에 따른 범주별계열을 가중하는데 이용되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이용될 것이다. 지역별로 이 계열은 6개월간격을 기준으로 하였지만 소비자물가지수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분기별 자료는 보간방법(interpolation)으로 구하게 된다.

주택을 감가(depreciation) 하는데 사용된 물량가중치는 연도별 총인구에 대하여 주택소유주가 거주하여 소비하는 주택의 수를 나타내게 된다. 관련되는 그 주택의 가격은 당시의 점유자가 그들의 주택을 구입할수 있는 가격을 연도별로 나타낸 평균적인 가격이다. 주택은 평균 10년 또는 12년에 한번씩 소유권이 이전되는데 이

평균은 그 기간으로 보아 다양성이 크다 즉 같은 소유주가 40년을 점유하고 있는 주택이 있는 반면 어떤 주택은 그 기간동안 2회 또는 3회씩이나 팔린다. 그러므로 현재의 주택점유자에게 그들 주택의 장기간에 걸쳐 나타난 평균적인 가격은 장기간을 통한 가중평균으로 표시되어야 하나 필요한 통계자료의 결핍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저해당하고 있다. 따라서 가능한 최근의 40분기(10년)에 걸친 주택가격의 시장가격계열을 단순(가중된것이 아님) 이동평균하여 이상적인 측정치에 근사한 추정치로써 사용한다.

재산소득에 대하여 사용된 물량가중치는 소유주 점유주택에 있어서 연간 1인당에 해당되는 개별적인 지불이자를 분수로 나타내고 있다. 위에 포함된 계통은 소유거주자(Owner-Occupier)가 그의 집을 샀을때 그는(자본주인 그 자신에

계) 그 존재상태를 벗어난 것이며 그가 그 주택을 점유하여 살고 있는 한 근대 신축주택의 저당이자율로써 구입당시의 주택가격과 같은 연간지불이자율 (그 자신에게) 지불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지수에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격은 현소유 거주자에게 해당되는 그러한 개념적인 연간지불이자액이다. 위에 설명한 바와 같이 감가 (depreciation) 에 있어서 는 지불이자액의 평균치가 주택가격과 약 40년기간의 새로운 저당이자율을 곱한 수치로 가중편찬 되었다. 다시 이상적인 측정치에 가장 가까운 추정치로서 주택의 시장가격에다 새로운 주택저당이자율을 곱하여 나온 수치를 단순 (가중편찬 것이 아님) 40분기 이동평균하는 측정방법이 적용되었다.

주택보험의 가격은 최근에 알맞은 주택의 시장가격에다 정해진 위험도에 따른 현재의 보험율을

품해서 나온 액수이다. 감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적절한 순주택금액 대신에 총자본금이 사용되거나 사실상의 보험액보다 늘어나지 않도록 관련되는 가중치의 조절은 확실히 하여야 한다. “재구입, 판매, 주택관립, 비용” 중에 있는 한 품목이외의 모든 품목가격은 두가지의 번량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것은 단순히 비례적인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재산액이나 가격에 적용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단계에 따라 결정되고 있는 적절한 량의 수수료나 소개료이다. 최근에 쓰고 있는 가구재산액수에는 주택이전에 따른 토지 소개료, 가격사정료, 인지료와 주택 판매구입에 따른 변호사수수료가 사용된다. 위의 수수료중 세번째의 인지료를 제외한다. 나머지 수수료가 또한 지방시의 변호사수수료로 사용되고 원칙적으로는 지방환불보험료로 사용된다. 가격사정청에서 수집하여 최근에 쓰고 있는

건축부문에는 이전하는데 있어서 인지료와 변호사수수료가 사용된다.

입체회사의 주택대부금은 주로 주택을 신축하는데 재정적인 뒷받침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입체회사예약거금에 대한 기준시의 기여금액은 대표적인 입체회사의 주택건설대부금에 대하여 그 당시의 월인 2%로 잡았다. 이 수치는 뉴지랜드 가격사정연구소에서 수집한 평방회당 당 주택건축비의 상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지역별로 그리고 시점과 시점간에 있어서 조정이 된다. 주택건축에 관련하여 변호사의 봉사료금은 실지로 봉사한 시간에 대한 일반적인 변호사료금에 따라 변동된다. 재산이전에 따른 지방세나 인지수수료등 항목을 추가하는 것은 대지에 대한 직접세가 소비자물가지수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그러한 세금이 측정가능한 상품이나 서비스와 같이 취급될

수 없다. 그러므로 가격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정해진 원칙에 모순되는 것이라고 처음에 알핏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보는 관점은 이
품목들이 주택을 점유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주택
을 구입한다는 전제에서 피할수 없는 비용으로
그렇게 까지 직접세라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조
사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다 같은 문제로 지당권
설정자가 어떤 상태에 사망하였을 경우에 지당부
채의 차액을 환불하기 위하여 마련한 지당환불보
험은 저축의 형태인 생명보험을 제외하는 원칙에
따라 모순이라고 볼수 있다. 여기에서의 관점은
이것이 주택개원을 마련하기 위한 일반적인 비용
이라는 것이다. 이 품목에 부여한 지출가중치는
다른 종류의 보험에 있어서는 권리주장에 따른
요구에 대하여 지불해야 될 보험액이다.

(IV) 광열비 (Fuel and light)

조사지역으로 선정된 6개소의 지역에는 가스의 공급이 안되기 때문에 이들 지역에 있어서는 이 빠져있는 품목을 나타내기 위하여 기준시 지출액을 주었고 그림으로써 다른 지역과 비교가능하도록 광열비소분류의 기준시총지출액을 보존하고 그리고는 이 관념적인 기준시지출액에 대한 가격변동을 측정하는 절차가 취해졌다. 기준시에 있어서 만약 이들 6개도시에 가스공급이 되었었다면 그 가격비율 (price relative) 은 나머지 19개지역을 종합하여 나라 내 전기요금의 가격비율과 같을 것이라고 가상하였다 이것이 이들 6개지역 각각에 관념적인 가스로금 기준시 지출액을 부여한 근지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전기에 대한 기준사가격을 사용하였으므로 이들 지역의 기준시지출액은 2개의 보조적인 가중치로 환산되었다. 하나는 각

형태의 전기료금 청구서로 구분 환산하였다. 정해진 가정 (assumption) 때문에 두가지의 보조적인 물량가중치는 6개도시가 다 결계 되어있다.

그 다음에는 이 두가지 보조물량가중치는 비교시의 가상적인 카스비지출액을 만들기 위하여 비교시의 전기료금에다 적용하게 된다. 환언하면 만약 카스가 그들 각 지역에 공급이 되었었다면 그것은 기타 19지역과 상대적으로 전기료금과 같이 싸거나 비싸거나 하였을 것이라고 계속적으로 가상하게 되는 것이다.

(V) 교통 (Transportation)

일반적으로 지수는 비록 고정된 가중치로 줄여서 나타냈지만 각 지역에서 시점과 시점간에 들러간 비용된 하나의 지출패턴을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자기가 자기를 비교하는 지수로 여러 지역내에서의 그리고 지역간의 가격변동을 측정할

뿐만 아니라 전제와 차이를 비교하는 지수로 지역간의 상대적인 물가수준도 측정한다는 (약간의 제한을 가지고) 것을 가능케 한다 여러 지역에 따라 다른 유용성과 다른 교통방법의 사용때문에 전지역에 대하여 동일한 가중치의 원칙을 적용한다는 것은 이 분야에서는 실행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지역간에 교통수단이 다른 것과는 별개의 문제로 교외의 철로교통은 4지역에서만 중요하고 또 뒷근대의 작은 지역에는 배스서비스가 없다. 따라서 이 분류에 있어서는 전 도시의 기준시의 총교통비용을 일정하게 놓고 도시별로 교통비분류 내에서 여러 교통수단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달리 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였다 위의 상대중요도는 교통청에서 제공된 자료에 따라서 할당되었다. 이 지역내의 품목간에서의 변동은 개별지역의 집세가중치와 유사하다. ~ 단지 교통비 내에서는

가중치가 (본래의) 상대지출액이면서 분류별도는 전국지역이 다 같은데 반해 집계내부의 품목가중치는 기준시의 각기 다른 지출액을 나타내기 위하여 물량으로 표시하였다.

지수가중치를 추정하는 과정은 아래와 같다 교통성에서는 철도청에서 추정치를 구하게 되는 교외철도 서비스만을 제외하고는 여러 지수지역의 1963년 3월까지의 연간 지출액 추정치를 각기 다른 교통형태별로 제공한다 방문객이나 경유자의 추정지출액이 제공되었고 그 결과치는 다시 그 지역내의 관련인구수로 나누어져서 1인당 지출액으로 환산되었다 그 다음은 이 수치들이 기본지역인구가중치로 가중평균되어 전지역(전국)의 평균치가 나왔는데 이것은 독자적으로 그리고 또한 교통청의 협조로써 계산된 한가지 교통수단에 있어서의 뉴지랜드인 1인당 지출액과 비교가 된

다. 그 두가지의 수치는 매우 가깝게 접근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개별지역에 대한 교통량의 수치는 약간의 수정을 가한 후에 지출액가중치의 기초자료로 채용하였다. 전뉴지랜드의 편간계산에는 지수에 포함하기로 결정한 중거리 및 장거리 철도와 버스교통, 도시간 교통(도시간 개인 자동차 화물을 포함)에 대하여도 또한 계산되었다. 이 지출액은 교통량의 개별지역추정치내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모든 수치는 알맞는 가격측정치를 가지고 1965년 평균가격수준으로 바꾸어졌다. 이렇게 수치를 전환한 후에 지역별 기준시총지출액에서 제외하였던 것과 같이 장거리, 등등의 여행비를 제외한 인구수가중, 전지역평균, 전교통수단에 대한 총지출액으로 잡았다. 이 수치는 1965년 가격에서 여러 가지 다른 교통형태의 지출구조에 따라서 각 지

역별로 여러가지 다른 교통형태로 분포되었다. 모터링 (motoring) 과 사이클링 (cycling) 의 형태에 있어서 그 분포는 품목별로 전지역을 종합한 수준에서 결정하였다. 동일 품목에 있어서는 개별지역의 분포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중·장거리철도 및 버스여행 (조사품목에 할당되는), 섬과 섬 사이의 요금과 자동차화물료의 전국평균치는 이 보고서의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동등한 수준으로 표시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합산되었다.

이들 지출가중치는 각 지역별로 기준가격으로 나누어 줌으로써 물량가중치로 환산되었다. 대개의 경우에 있어서 그 기준가격은 전국표준가격이나 또는 어느 큰 지역의 가격만을 수집하여 다른 지역에도 적용한 것이다. 도시의 시내버스와 철도 요금은 각지역별로 조사를 하였는데 그 가격은

대표적인 거리에 대한 평균적인 것으로 잡았다.
택시요금과 회발유가격은 전 지역에서 조사한다.
장거리철도 및 버스요금, 섬과 섬간의 교통요금과
자동차화물요금은 전지역의 주민들에게 공통성이
있는 일요일의 것을 포착하고 대표적인 거리에
대하여 전국수준으로 조사하는데 이 가격은 전지
역(전국)에 대하여 사용된다.

공중교통수단에 의한 그러한 일요일 여행은
1955년 기준지수에서는 포함하지 않았고 또 그
기준지수에서는 "motoring" 도 제외하였는데
신개편지수에서는 이것을 고려하였다. 모든 배구소
비재와 같이 자동차와 싸이클의 가중치는 구지수
에서는 단지 연간 교체만 있었는데 비하여 신개편
지수에서는 지금 상당히 지적되어 있다.

이와 같이 부득이 특수한 절차를 적용하였기
때문에 교통비의 지수는 엄격한 의미에서 전체에

대한 자기를 비교하는 지수 ("each on all" index)가 될 수 없고 단지 자기에 대하여 자기를 비교하는 지수 ("each on each" index)가 될 뿐이다 그러나 전지역에 대하여 기준시 지출액을 같다고 가산하여 책정하였으므로 그 분류(표통비)의 비교시 지출액은 다른 분류의 비교시 지출액과 같이 총지수의 "전체에 대한 자기비교"의 지수를 산출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단 전지역에 대하여 동일한 기준시 지출액을 사용한 지수임) 그렇게 가격수준의 전지역에 대한 지역간 비교를 하는데 있어서는 표통비 지수 실제의 특수성을 명심해야 된다.

카. 지수와 품목군의 대표성

(Coverage of the index and grouping of items)

소비자물가지수는 정상적으로 반복해서 일어나는 가구경비 지출에 있어서의 물가수준의 변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설계한 것이다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있는 표시로 아직까지 적은 고소득층에만 제한되었던

지출분야와 지출품목이 점점 더 많은 가구에 해당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서 과거부터 내려오는 뉴지랜드의 소매물가지수에서는 지출분야를 더 추가하여 왔다. 최근의 개편에서는 그 개편작업이 구지수에 이미 포함하고 있는 지출분야에 대하여 주로 가중치의 수정과 가격조사절차의 확대와 수정에 있기 때문에 추가된것은 별로 많지 않다. 추가로 포함된 부문은 아래와 같다.

(a) 구입에 따른 비용 및 주택친립

(b) 내구소비재에 대하여 연간교체와 아울러 집적
을 나타내기 위한 추가가중치 텔레비는 그 자체가 산지출부문은 아니지만 내구소비재와 오락 서비스분야의 개선임.

(c) 원예공급품

(d) 짐차운임 (가구운반비 포함)

(e) 철도, 버스 및 개인차와 섬간 배수의 장거리

및 휴일 - 교통비

(f) 아동의 문화교육비 - 음악, 강연 및 댄스

(g) 애완동물용 음식 및 수의사진료비

(h) 장례식 지출자 요금

(i) 배부소비재 (주택이외)와 준배부소비재의 분
납식응이자. 이것은 직접 가격조사는 하지 않으나
해당품목의 지출가중치에 포함하였음. 일반적
으로 그러한 신용에 대한 비용은 같은 조건하
에서는 직접적으로 물품가격에 비례한다. (주택에
대한 환불신응이자는 항상 전체금액에 거상적인
연간이자지불액이 일부분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견지임)

이 새로히 지수에 포함한 모든 것들은 지수지출
액에서 전에 1955년 개편시에 처음으로 적용한
건축부문의 분류에 속하고 있으며 이것들의 포함으
로 말미암은 분류 세분류간의 실질가중치는 비교적

적은 변화를 보였다. 이것은 아래의 문에 나타나 있는데 새로운 분야의 추가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구지수 개편 이후의 소비습성의 변화도 역시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 표는 다른 분류와 세분류간의 지출액백분비분포를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내고 있다.

(a) 그것들이 1955년지수를 기준으로 한것처럼

(b) 그것들이 특수한 가격변동의 결과로 1965년지수에 있게 된 것 처럼.

그리고

(c) 개편지수에서 같은 1965년 가격수준으로 결정된 것처럼.

구·신 지수의 대분류·세분류별 지출백분비 분포 비교표

대분류 와 세분류	1955년 기준 구지수		1965년 기준개편 지수
	1955년 가격 에서의 기준분량	1965년 가격 에서의 기준분량	
	전체에 대한 백분비		
과일 및 채소	6.12	5.83	5.89
육류, 가금 및 어개	8.24	9.04	9.22
기타 식료품 (계란포함)	17.90	15.26	14.98
전 식료품	32.26	30.13	30.09
집세	4.66	6.27	5.50
주택소유비	10.74	12.58	12.49
주거비	15.40	18.85	17.90
광열	3.20	2.99	2.82
가구지원	4.70	4.14	5.59
가내공업 및 서비스	2.70	2.63	2.80

대분류 와 세분류	1955년 기준 구지수		1965년 기준개편지수
	1955년 가격 에서의 기준분량	1965년 가격 에서의 기준분량	
	전체에 대한 백분비		
가구 운영	10.60	9.76	11.21
의복	13.06	11.04	10.91
신발	2.37	2.51	2.21
피복비	15.43	13.55	13.12
공중교통	2.48	2.53	2.38
개인교통	6.28	6.49	7.06
교통비	8.76	9.02	9.44
변초 및 주류	8.53	8.53	7.64
기타 잡품	4.90	4.90	5.66
기타 서비스	4.12	5.26	4.86
잡비	17.55	18.69	18.15
총 지 수	100.00	100.00	100.00

구지수에서는 계란이 과일 및 채소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비교를 하기 위하여 개편지수에서 포함되고 있는 기타식품에 포함하였다.

앞의 표에서 현저한 변화를 보인것은 정상적인 주택보유 형태로서 자가소유비로 계속 이동됨에 따른 결과로 집세비율이 적어졌고, 많은 내구소비재를 갖고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가구지원과 기타 지원의 비율이 높아졌고 공중교통이 줄어들었는데 장거리교통을 새로 추가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늘었을 것이다. 개인교통의 비율증가는 휴일의 여행비 포함과 자동차의 취득에 대한 개별적인 변화와 아울러 개인자가용이 널리 보급되어 있기 때문이다. 연초와 주류의 감소는 그것들을 소비하는 절대량이 줄어든 것이 아니고 단순히 가중치모집단이 더 넓은 분야를 포함한 관계로 상대적인 비율이 적어진 것이다.

구지수와 개편지수에서 다 같이 포함하고 있는
지출분야에서 다수의 신품목이 추가되었다 그것들은
아래와 같다.

식품품에서 : 냉동 및 편리식품이 추가 : 짜른
포장한 빵, 톨다 표준, 표준이 아닌 탕어리 : 즉석
거피 : 단비스켈 초코렐비스켈 : 대형 중형계란 :
경식사 및 그릴식사

주거비에서 : 특정 주택수리비에 대한 상인의 시세
가구운영비에서 : 이천 열병장고, 회전전조기, 세탁
기, 헬레비 셀 및 잔기작는 기계등 추가한 내구재:
수리가구 : 녹슬지 않는 강철합금주발 : 살중제분무기

피복비에서 : 테크론, 헬리켄등의 상표로 팔리는
폴리에스터 섬유지를 포함하여 피복과 신발류품목의
추가다.

교통비에서 : 횡발성 높은 개소린과 이류수리비

잡비에서 : 식탁용 맥주(병맥주는 구지수의 기준

사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가 후에 포함하였다) : 여
행용품 : 천연색사진 : 운동기구 및 스포츠클럽가입
금 : 텔레비허가

전품목, 분류별등에 대하여 구지수와 개편지수에서
1965년 지출액의 상세한 비표는 이 보고서의
"표 1"에 나타나 있다 "표 7"은 개편지수의 조
사품목수와 조사주기를 나타내고 있다.

다. 지수에서 제외한 지출분야

지수가 물가의 변동을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조사가 불가능한 분야의 지출액을 포함할수가
없다. 즉 가중치자료로서의 금액(지출액)은 파악하
고 있을지언정 가격조사가 불가능한 품목은 지수에
포함시킬수 없다. 따라서 증여금 도박과(흔티) 직
접세와 같은 경비는 제외된다(반면에 통관세나 물
품세 판매세등과 같은 형태의 간접세는 가격에 내
포되어 있고 가격의 일부분이 되기때문에 지수에

반영시킨다. 간접적인 것으로 소비자보조금 역시 지수에 반영된다. 저축 저당부채의 환불을 하기 위한 저축 자본지출과 (흔히) 생명보험도 역시 제외한다. 정상적으로 계속 경비지출을 하는 품목중에서도 몇 품목은 아직도 지수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그것은 주로 가격조사면에서의 난점 또는 극히 적은 특수 가구에만 제외되는 사치품목이기 때문이다. 광범위한 분야중 아직도 지수에 포함하지 못한 지출분야는 아래와 같다.

(a) 부채의 환불을 포함한 저축, 투자, 노령퇴직연금과 생명보험.

(b) 도박

(c) 현금증여액

(d) 개인사고보험

(e) 법적수속상의 수수료 판매구전 등 (주택소유 이전이나 주택전입에 필요한 수수료 및 구전은

제외)

- (f) 직접세 (주택소유이전세와 지방세는 제외)
- (g) 잡건의 수수료와 번허 (출생증명, 결혼, 개(犬)등)
- (h) 교통위반 및 우사과료
- (i) 호텔 모텔 케스트하우스등, 휴일숙박
- (j) 항공 및 해외여행 (Boarding school)
- (k) 사립기술학교 입학금, 수험료 유치원 그 이상, 기술제, 성인교육등 모든것 (교양 및 일반교육)
- (l) 초상화·사진포함
- (m) 가내종사자임금, 가내교문, 가내 간호원, 정원사등.
- (n) 정플사 약초상 수족의치사등에 대한 요금.
- (o) 주류 (지수는 맥주만 포함함)
- (p) 보석류
- (q) 화초
- (r) 개인응접 및 가정접대를 위한 음식조달비 및 기타 서비스료

(CIS) 문화회 및 클럽회비 (체육비 제외)

지수에서 제외된 부분은 1965년 가격으로 전
소비지출액의 약 10%의 양으로 추정된다.

~ 307 ~

3. 캐나다 소비자물가지수

3. 캐나다 소비자물가지수

가. 캐나다 소비자 물가지수의 개편요인

캐나다 소매물가지수의 역사는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1910년에 처음으로 1900~1910년의 소매물가지수가 발표되었다. 그때부터 필요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수품목과 가중치를 개정하여 계열을 연결하여 왔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경제지출구조가 변화하고 또한 지수에 포함된 품목가격의 대표성이 희박해짐으로써 지수개편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러한 변화는 승용차의 사용이나 소유관계의 증가등 시간적으로 잠기간에 걸쳐 서서히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텔레비의 출현과 같이 급작스러운 경우도 있다.

캐나다에서는 지수품목과 가중치 (즉 가중기준시)의 개편은 아직까지 비교기준시의 변경에 따라 움

~3/10~

직여 왔다. 비교기준시는 단순히 지수를 100으로 놓은 기간이며 가격변동의 백분비를 측정하여 나타내는 기준기간이다.

지수의 비교기준과 가중치기준은 1910년이래 4회에 걸쳐 개편되어 각각의 신지수가 작성되어 왔다. 이렇게 되어서 캐나다 소매물가지수의 전체 계열은 1900년, 1913년, 1926년 1935~39년 그리고 1949년의 기준에 따라 다섯가지의 지출구조가 반영된 것이다.

이번 제5회 소비자물가지수개편은 가중치 기준시를 1948년에서 1957년으로 변경하고 비교기준시는 1949년으로 계속 유지하여 그 방식을 100으로 지속시키는 것이다.

비교기준시를 1949년으로 개편하는 작업이 끝난 다음 1953년에는 소규모로 2년에 한번씩 조사하는 가계조사의 지출액 계열을 마련하여 그

후 지수개편의 필요성이 있는가를 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하였다.

그 조사는 지수개편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1953년의 조사는 1955년 조사결과가 지수개편의 필요성을 명백히 나타내주지 못하는데 반하여 의미있는 결과를 보였다.

1957년의 가계 조사가 앞에 결과를 더욱 확실하게 뒷받침하였고 따라서 개편계획을 세우게 되었다. 개편계획의 일차적인 목적은 지수품목과 가중치의 수정이었고 또한 개념과 방법문제까지 검토되었다.

최근의 개편 지수에서는 지수에 포함된 품목수가 확대되었고 품목별 실질가중치가 1957년 도시가계 조사결과에 나타난 가계 지출에 따라서 수정이 되었다. 기구나 자동차와 같은 내구재 처리방법의 수

~ 3/2 ~

경과 계절식품 처리방법의 기술적인 개선이 이루어졌다. 또한 전통적인 소비자물가지수의 분류수가 늘어났고 처음으로 부차적인 분류방법을 취하였다.

후장에서는 여러가지 기술적인 관점에서 소비자물가지수를 다룬다.

지수 작성 원칙은 “소비자물가지수 소개 (1952년)” 중에 상세히 설명되었다. 특자의 편의를 위하여 적절한 장은 이 책자에도 인용하여 지수의 충분한 설명사로 되어 있다.

소비자물가지수 명칭과 정의는 수정 그 전에 오랫동안 잘못 이해되어 사용하였던 생계비 지수라는 명칭을 1949년에 소비자물가지수로 바꾸었으나 이번 개편 지수에서도 공식명칭으로 소비자물가지수라고 부른다.

그 남시에 지수가 생계비의 변화를 측정해내는 것으로 널리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을 피하기 위

하여 명칭을 변경한 것이다. 사실상 현 소비자물가지수권의 생계비지수는 가구에서 구입하는 일정량의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변화만을 측정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된 것이다.

동시에 양지수가 생계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만 물량에 변동이 없이 소매가격에 변동만 있을 때이다.

위의 두 지수는 모두 물가지수인 고로 소득의 증감, 가구권의 증감이나 가구에서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물량이나 품질의 변화등과 같이 생계비에 영향을 주는 비가격 요소의 영향은 측정할 수 없다.

특히 소매물가지수는 특정시점에 특정인구집단에서 구입하는 고정 "바스켓"의 상품과 서비스비용의 변동을 시간적으로 100분위로 나타내준다. "바스켓"은 고정적인 일정량과 품질의 상품과 서비스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다만 가격을 형성하는 상품과 서비스수량
특정단위의 시장가격을 가지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가격조사가 될 수 있는 품목만이 지수에 포함되었
다. 현행 지수개편에서 지수에 포함된 품목바스케
트는 1957년중 캐나다의 도시거주에서 구업한 상
품과 서비스로서 계속적인 가격조사가 가능한 것들
로서 구성되었다.

위의 정의는 지수를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한 그
리고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한 본질적인 절점요소이
다. 이 지수는 물가지수인 고로 가격변동에 따라
서만 지수가 변동하게 된다.

이 지수는 광범위하지만 그러나 특정도시 거주에
적용되는 것이며 어느 한 특정거주에 적용되는 것
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 지수는 소득 거주원 주
모나 거주지역의 특성이 다른 인구집단에 대하여는
그 물가변동을 올바르게 반영한다고 기대할 수 없

다. 결과적으로 이 지수는 소득이나 지출 또는
가구와 인구집단별의 변화를 나타내 주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그런 종합적인 변동은 물가변동 외에도
여러가지 요인의 적(積)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지수에서 대상으로 하는 집단의 특성에 대한 더
함축성있는 집단은 릿장의 "가구모집단"에 포함되
어 있다.

나. 가구모집단

지수를 대표하는 가구의 선정이 즉 지수와 관련
된 인구집단을 나타내게 된다. 그것은 또한 지수
의 범위와 가중치의 결정인자가 된다.

왜냐하면 이들은 가구에서 구입한 상품과 서비스
의 종류, 양에 따라 결정되며 또한 환경에 따라
각각 다른 방법으로 지출하는 가계 지출형태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현재의 그리고 전에는 소비자
물가지수의 개편에서 지수가 대표하는 가구를 선정

~316~

하는데 있어서 그 일차적인 목적은 도시가구의 광범위한 대표성을 확보하고 가구의 소비습성이 유사한 것으로 일치시키려는데 있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편지수에서는 대상가구집단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가구소득, 가구규모, 지역등 세가지 기준을 사용하였다.

이것들은 1947~48 자료를 기준으로 한 구지수에서도 대상가구집단을 정의하는 요인으로 사용하였다. 1947~48년 이래 가구규모에는 별로 현저한 변화가 없는 반면 도시가구의 소득수준은 얼마간 상승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대상가구집단의 소득범위는 1957년의 대상가구를 1947~48년의 대상가구와 비교상있게 하기 위하여 수정하였다.

1947~48년 기준 지수에서 대상으로 할 가구를 결정하고 구분하는 기준을 정하는 원칙과 절

책은 “소비 지불 가치수 (1949. 1月 ~ 1952. 8月)”라는 책자에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그것은 그 당시와 마찬가지로 현재에도 적용되므로 그 책자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발췌한다.

“적절한 표본 가구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가구에서 어떻게 지출하는가” 하는 엄밀한 결정요인으로서 세가지 요소를 관찰하였다.

세가지 요소는 가구소득, 가구규모 그리고 지역이다. 소득원천 인증 가구주의 연령등 추가적인 기준이 사용될수도 있지만 가계 지출부의 변밀한 검토와 전국의 본국 및 외국의 가능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위에 말한 세가지 기준만이 분명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소득범위의 한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소득 범위, 가구 규모 그리고 지역이 고려되었고 지출구조 역시 결정요인으로서 지

~318~

출 패턴이 평균적인 구조에서 현저히 적체가
있는 가구는 제외 되었다.

반약 예외적인 지출패턴을 가진 가구가 포함된다
면 그것이 평균에 영향을 미쳐 지수가 대다수의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 많은 가구를 대표하지 못하
게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불거의 변동에 따라 생계비가 거의 유사
하게 변화하는 지출패턴을 가진 중간시의 가구로써

(1) 캐나다내의 27개 시에 거주하는 30,000 명의
인구

(2) 가구규모는 두사람의 성인과 아동 4인을 가진
두사람의 성인의 범위

(3) 조사연도의 연간소득이 \$ 1,650 부터 4,050
범위로 결정을 하였다.

위에 제시한 대상집단은 도시의 산업과 직업의
전체범위를 가마하는 것이며 기본자료인 임금 및

봉급차 소득임에 따라 임금 및 봉급차 가구원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

지수에 포함된 가구중 임금 및 봉급차 가구는 90%인바 검사결과 임금 및 봉급차 가구가 아닌 일반가구의 지출패턴도 전자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원 규모로 보아 2인가구로부터 6인 가구까지 구분하여 검사한 결과 단독가구와 대가구는 지출구조가 현저히 달라서 이들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이 충분히 증명되었다.

대가구는 총지출액 중에서 피복비의 지출구성비가 큰 반면 단독가구는 일용품의 지출구성비가 크고 가구운영비에는 적은 지출을 하고 있음이 들어났다. 선정된 가구는 전가구중 66%에 해당하는 도시가구이다. 이들 가구의 평균 가구원수는 3명이다.

1,650 불 미만의 소득 가구에서는 총가계지출액 중 식료품과 광열비의 지출비 중의 큰 것으로 보고 되었으며 한편 4,050 불 이상의 소득가구에서는 이들 두 범위의 소득가구에 비하여 식료품피에는 적게 그리고 잡비에 큰 비중으로 지출하였다.

소득은 1,650 불과 4,050 불로 절사하였으며 그 결과 가구원 규모로 보아 중간시에 해당하는 도시가구 중 약 9%가 저소득으로서 제외었으며 약 14%가 고소득으로서 모집단에서 제외되었다.

이와같이 하여 모집단에는 중간 가구규모의 전 도시가구 중 소득규모로 보아 75% 이상을 포함하였다. 소득액은 주로 2,000 불과 3,000 불 범위로 45% 이상의 가구가 집중되어 있다.

대상가구집단의 범위를 넓게 해서 주요 지출비목 별로 지수를 산출하는 의미가 있도록 가계 지출습성이 아주 유사한 가구집단을 선정하는 것이 확실히

실용적일 것이다.

이전에는 1947 ~ 48년부터 1957년까지의
기준 1951년과 1956년의 센서스자료의 검사
결과 가구원 규모에는 현저한 변화가 없었고 대상
가구의 가구원수는 성인 2인으로 부터 아동 4인
을 가진 성인 2인의 범위에 머무르고 있음을 나
타내었다.

반대로 도시가구의 소득 분 조사결과로는 1차적
으로 임금 및 봉급의 인상에 따라 1947 ~ 48
년 이래 도시가구의 소득이 상향성을 나타내고 있음
을 명백히 나타냈다.

따라서 대상 가구의 소득 규모가 \$ 2,500 에서
\$ 7,000 까지를 포함하도록 수정되었다. 1947 ~
48년 이래 소득변화에 따라 소득상한선은 \$ 4,050
에서 \$ 7,000로 올라갔고 하한선은 \$ 1,650에서
\$ 2,500으로 올라감으로써 상한선이 하한선 보다 더

올라 갔다.

1957년의 대상가구의 소득범위는 앞에 기록한
역년에 따라 수행하는 가구조사결과 수치적으로 나
온 계열의 변화에 따라 설정된 것이다.

1953년, 1955년 그리고 1957년의 가계
조사에서도 1947~48년에 선정된 가구와 비
교성있게 대상가구를 커버하도록 설계되었다. 그러
므로 조사가구의 소득범위도 임금 및 봉급의 인상
에 따라 상승추세를 보인 가운데 수정이 되었다.

동시에 매 조사에서 지출구조의 동질성을 검사하
고 앞으로의 조사에 수정을 가능하게 하였다. 조
사결과를 대상가구집단을 도시별로 5이상의 소득
시별로 그리고 8개의 가구원 규모별로 구분하여
제표하였다.

1957년에는 캐나다내의 5대 시부지역에서 식료
품비를 월별로 조사하여 12개월별 계열을 마련하

였고 9개시에서는 전품목에 대하여 연간 지출액을 조사하였다.

7,200 부의 식료품비 주별 조사부와 1,100 부의 전품목에 대한 연간 지출부가 1957년 중에 수집되었다. 조사요령 및 방법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 조사결과보고서가 발간되었다.

1957년 조사에 포함된 도시는 St. John's, Halifax, Montreal, Three Rivers, Toronto, Kitchener, Waterloo, Winnipeg, Edmonton 그리고 Vancouver 등이다.

지수의 대표도와 가중치의 수정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이 위의 아홉 도시에 제한되어 있으므로 인구 30,000 이상의 모든 도시가구를 대표하여 사용할 수 있는 지를 점검하였다.

검정자료로는 27개 도시를 커버한 1947~48년의 가계지출자료로 하였다.

5대 중요도시의 지출구조와 27개 전도시의 지출구조를 비교하였고 그것으로 하여 제한된 도시의 가계지출구조와 전체도시가구의 지출구조가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 명백하여졌다.

다소의 예외가 있다 하더라도 지출패턴은 커주도시의 특성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개편 지수는 인구 30,000 이상의 캐나다내 도시의 특징가구 규모와 소득을 가진 가구를 대표하는 것이다.

따, 현행 지수의 가중기준시와 비교기준시 어떤 지수를 추심함에 있어서도 그 시간이 흐름에 따른 변화를 결정하기 위하여는 2개의 참고시점이 필요하다.

그 하나는 비교기준시로서 지수가 100이 되고 그것을 기준으로 가격의 백분비 변화를 측정하는 시점이다.

다른 하나는 가중기준시로서 지수에 사용 하는 가중치의 자료기간이다.

비표기준시와 가중치 기준시는 흔히 일치하나 자주 다른 시점이 되어 불일치하게 되는 수도 있다. 예로서 지난 10년간에 있어서도 소비자 불가지수의 가중기준시는 1947 ~ 48년이었고 비표기준시는 1949년이었음을 들 수 있다.

비표기준시를 선정함에 있어서 실무적으로 처리해야 될 것은 가능한 한 국내외적으로 다른 통계계열과 일치시키는 것이다.

1949년으로 소비자 불가지수의 비표기준시를 정하였던 것도 일치적으로 그러한 점을 고려하여서였고 또한 같은 이유로 개편지수에라도 비표기준시를 1949년으로 유지시키고 있는 것이다.

비표기준시가 같은 시점으로 유지되어 있으므로 현행지수에라도 지수의 수준은 차가 나지 않으며 월별지수는 상대적으로 1949년 가격에 대한 현재와 가격변동을 백분비로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다.

여러가지 통계계열을 비교하는데 있어서 만약 비교 기준시와 가중치 기준시가 일치하면 더욱 정확히 비교가 되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중기준시가 각 계열에 따라 충분히 선정된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더우기 가중기준시는 정상적인 가계지출패턴을 가진 때로 잡아야 된다.

만약 지출의 경향선이 이전의 지출경향과 일치한다면 특정시기의 지출패턴은 정상적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또한 가계지출에 큰 영향을 미칠만한 비정상적인 경제적 사회적 요인이 없다면 정상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1957년은 그와 같은 정상적인 해로 볼 수 있다. 이 결론은 생산과 판매에 관한 점 통계와 아울러 1953년과 1955년의 가계조사 결과에 기준을 두고 용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1957년은 가중치기준시로서 적합한 해로 생각된다.

다. 따라서 개편지수에 품목의 대표도와 품목별가중치는 1957년 도시가계 조사결과에 기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다. 개편지수의 품목대표도

개편지수에서 품목대표도를 결정한 원리는 1947~48년 기준의 지수에서 품목바스켈을 결정한 원리와 같다. 이미 발간된 해살집에서 해당부분을 발췌하여 아래에 적어 보기로 한다.

‘지수에서 가격변동을 측정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바스켈을 이들 품목을 결정한 요령은 “지수의 정의”론에 아주 명백하게 나타나 있다.

거기에 주어진 정의에 의하면 지출포에는 가격을 갖는 품목 그리고 가격변동이 측정가능한 품목을 포함하게 되어 있다.

반대로 가격이 매겨지지 않는 품목이나 가격변동을 측정할 수 없는 품목은 제외하였다.

~328~

이렇게 하여 가격표가 지수를 상징하게 되고 소비재 물가지수에 충분히 포함된 품목과 포함되지 않은 품목과의 한계선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위의 두 기준이 절점의 기준이 된다.

셋째로 그 품목이 가격이 매겨질 수 있는가. 둘째 그 상품이나 서비스의 일상량에 대한 가격이 동일한가. 첫째 기준은 물가지수에서 삽자가 되는 것이다.

· 만일 두번째 기준에 어긋난다면 가격은 금액과 구분할 수 없으며 그러한 품목은 지수에 포함하여서는 안된다. 대부분의 상품과 다수의 서비스품목에 있어서 일상량에 대한 가격을 계산하는 것은 비교적 용이한 일일 것이다.

주어진 일상량의 우유 가격이나 극장요금 등의 가격변동은 지수에서 명백히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반면에 저축은 가격이 없기 때문에 현시점의 저축액과 그것으로 동시에 구입할 수 있는 일정량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설정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다.

저축이나 년금과 같은 형태의 저축은 소비자 복지 지수에 사는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이러한 한계 내에서 건강보험의 프리미엄은 가중치의 원치요인 지출액에 포함되고 있다.

신불환 의료세는 그러한 보험프리미엄의 가격이며 그것은 약정된 의료서비스의 불량과 관련된다.

지수품목의 결정은 사실에 기점을 두고 이루어진 것이다. 사치품과 필수품을 구분하기 위한 시도는 하지 않았으며 또한 도덕적 사회적 관점에서 어떤 특정비용을 인위적으로 가한 것도 없다.

이제 설명한 바와 같이 지수품목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일차적인 문제로는 대상가중집단에서 그러한

~930~

품목을 실제로 구입하는가 하지 않는가 하는데 달려 있다. 대상 가구 집안에서 그러한 상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보거나 된다면 지수품목으로 포함하였다.

그러나 지수가 “표 4”에 기록된 품목만의 가격변동을 측정한다고 생각하여서는 안된다. 이들 품목이 측정되고 지수는 이들 품목과 유사한 동종 품목군의 전반적인 가격변동을 측정하도록 실제 되었다.

구지수와 개편소비자 물가지수에서 포함하고 있는 품목이 다른 것은 1947~48년대와 1957년대의 가계구입 습성이 변화함에 영향을 받았고 또한 가격조사 품목의 표본을 확대하여 구지수에서 보다 더 적절히 나타내려는데 있다.

1947~48년 이래로 가계구입 품목중 비중이 커진 예로는 냉동식품 항공여행 텔레비 구입 및 개선이다.

가격조사품목포분을 확대한 예로는 식량음식, 운동기구 보석 및 완구 등이다. 전체적으로 26개 식료품목과 17개 비식료품목이 가격조사 품목으로 개편지수에 새로히 추가되었다.

구 지수에서 몇 품목은 가계소비에서 없어졌거나 실질가중치가 현저하게 줄어들어서 개편지수에서 제외하였다.

제거품목의 예로는 비, 얼음, 세탁비누, 남자용의류, 남자용작업화 신발병원료 및 병원세 등이다.

바. 개편 지수에서의 품목가중치

지수에 포함된 각 품목에 대하여는 지수에서 상대적인 중요도를 표시하는 가중치를 부여한다. 품목가중치의 목적과 중요성은 다음의 발췌문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 지수에서 품목가중치는 그 품목의 가격변동의 영향을 지수에 반영시키는 측정치이다.

가령 어떤 품목이 다른 품목보다 가중치가 10배 크다면 두 품목의 가격이 같은 비율로 변동된다 해도 총지수의 변동에는 10 : 1의 비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품목에 부여한 가중치는 각 품목 또는 품목군에 지출한 것으로 보고된 금액으로서 결정된 것이다.

예를 들자면 1957년에 가구에서 피복비로 지출한 비용보다 식료품비에 2배로 지출한 것으로 보고 되었는데 피복비의 가중치 11, 식료품비 27이라는 것은 바로 이 사실이 반영된 것이다.

가중치의 증오도는 같은 비율로 상승하더라도 식료품지수의 상승은 피복비지수의 상승보다도 총지수의 등커에 2배의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참고로 한다면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지수가 주어진 상품과 서비스바스켓을 구입하는

비용의 변동을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품목가중치가 크다면 작은 가격변동률에서도 "바스켈"을 구입하는 비용에 큰 변동이 올 것이고 품목가중치가 작다면 가격변동이 커서 총비용의 변동은 작게 된다. 아래의 가상예가 그 점을 설명하여 주고 있다.

품 목	년간 비용	가격상	추가 비용	비 교
	\$	%	\$	
개 소 린	130,000	50	65,000	
타 이 어	10,000	100	10,000	
	140,000		75,000	

위표에 설명된 바와 같이 각각 50%, 100%의 가격상승이 합쳐서 \$ 140,000의 원비용이 53.6%가 늘어나서 \$ 70,000의 추가비용이 생겼다. 50%, 100%의 가격상승을 단순 평균한다면 75%이다.

그러나 153.6이라는 정확한 가격지수는 130:10의 비로 각각의 상승을 가중함으로써 계산된 것이다.

175 라는 불정확한 지수는 가격변동을 가중하지 않고 평균하여 산출한 결과이다.

그러나 가계에서 구입한 모든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요율)을 전부를 조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또한 그럴 필요도 없다.

그러므로 지수에서는 가격조사품목을 가계에서 구입한 불품중에서 표본을 선정하여 조사하고 있다.

그렇지만 가격을 조사하지 않은 품목도 인플레이션을 통하여 그들의 고유가중치를 가격조사하는 관련 품목의 가중치에 부가함으로써 지수는 이들 품목까지 대표하게 된다.

이렇게 됨으로써 한 품목의 가격변동 또는 품목군의 가격변동은 유사품목의 가격변동을 대표하게 된다. 이 방법은 캐나다 그리고 외국의 모든 물가지수 설계에서 사용하고 있다.

"imputation" 과정에서는 가격조사품목의 선정은

신중히 결정하게 된다.

가계에서 구입한 품목과 서비스품목을 먼저 목적에 따라서 예를 들면 식료품, 주시, 피복 등으로 구분한다. 이러한 대분류를 다시 중분류하여 예로서 피복비내에서 남자용 의류, 여자용 의류, 아동용 의류, 신발류, 그리고 기타로 5개 중분류를 형성한다.

이들은 다음에 다시 예를 들면 남자용 의류에서 수트 (Suits) 와 셔츠, 스룻 등과 같이 소분류로 나누어진다.

결과적으로 가격조사품목의 선정은 가계에 접하는 품목의 중요도의 기준과 관련품목과의 가격변동의 유사성 등의 기준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개편지수에서 조사품목과 그들 가중치를 나타낸 상세한 표가 "표 4"에 나타나 있다. 예를 들어 남자용 피복을 보아도 전분품목이 그 표에 나타나 있지 않음이 명백하다.

그러나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1957년중 가
구에서 구입한 남자용 피복중 그 표에 특별히 나
와있지 않은 품목의 가중치는 거기 나타나 있는
품목에 추가 되었다.

그러한 품목들은 타품목에 인풋트 (by imputa-
tion) 함으로서 지수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가중치표는 역년 1957년중 캐나다의
도시 가구에서 구입한 상품과 서비스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지수에 포함하는 품목과 가중치에 대한 다른 견
토는 뒤에 계절성 소비내구재와 세금, 보험과 보건
위생비의 처리요령등으로 검토된다.

4. 산식과 지수의 연결

원칙적으로 지수는 기준시에 구입한 일정한 장바
구니속의 상품과 서비스품목의 구입비와 현재의
구입비를 비교하여 백분비로 나타낸 것이다.

1957년을 기준년으로 한 현재 "n"월의 지수는 다음과 같이 수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I_n = \frac{\sum p_n Q_{57}}{\sum p_{57} Q_{57}} \times 100$$

I_n : n월의 지수

Q_{57} : 한 품목의 1957년 물량

p_{57} : 1957년의 가격

p_n : n월의 가격

\sum : 전품목 총화

그래서 $\sum p_{57} Q_{57} = 1957$ 년 장바구니의
1957년 가격 $\sum p_n Q_{57} = 1957$ 년 장바구니의
"n"월 가격

위의 식에서 1957년이 비교기준년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개관지수에서는 1949년이 비교기준년으로 되어 있고 1949년 이전의 가격을 현 가격과 연결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식이 사용된다.

~ 338 ~

1949년 기준 지수는 1949년부터 1961년 1월까지의 가격변동의 예상치로서 고정시키고 그 지수는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I_{j61} = \frac{\sum P_{j61} Q_{49}}{\sum P_{49} Q_{49}} \times 100$$

그리고 1957년 기준 지수는 1961년 1월 이후의 가격변동을 측정하는데 사용된다.

1961년 1월과 그 이후 특정월의 가격변동을 1957년 기준 지수로 측정하자면

$$\frac{I_n}{I_{j61}} = \frac{\sum P_n Q_{57}}{\sum P_{57} Q_{57}} \times 100 \div \frac{\sum P_{j61} Q_{57}}{\sum P_{57} Q_{57}} \times 100 = \frac{\sum P_n Q_{57}}{P_{j61} Q_{57}}$$

1949년 기준 지수의 1961년 1월과 그 이후 월의 변동을 1957년 기준으로 측정하자면 1949년 기준으로 현월 n (I_n)의 지수는 100이 된다.

$$I_n = \left\{ \frac{\sum P_{j61} Q_{49}}{\sum P_{49} Q_{49}} \times 100 \right\} \times \frac{\sum P_n Q_{57}}{\sum P_{j61} Q_{57}}$$

이러한 관제에서 볼때 지수품목과 가중치의 개편은 다만 1961년 1월 이후의 지수의 움직임에만 영향을 줄뿐이며 그 이전의 확정된 지수는 계속 1949년 기준지수의 움직임과 같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절차로서 1957년 기준지수는 1961년 1월에 1947~48년 가중지수에 연결되었다. 그 말에는 1947~48년과 1957년 기준가중지수가 틀다 나와 있다. 1957년 기준가중지수와 1947~48년 기준가중지수가 1957년 1월부터 1960년 12월 사이에 있어서 지수의 수준이나 변동이 근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식료품비에 있어서의 두 지수가 그 기간중에 가격변동 추세는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계절때편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1947~48년 기준가중지수의 계절변동은 월별 식료품 바스켓에 들어

~340~

있는 제철식품의 총량의 상태와 가격변동의 순수한 영향을 반영하고 있다.

이미 발표되어 있는 1947~48년기준 가중지수와 비교하기 위한 목적으로 1961년 1월에 연결된 1957년 기준 가중지수가 1957년 1월 이전기간까지 계산되었다.

총지수와 주곡비, 피복비, 보건비용 위생비 그리고 연초, 주류에 있어서는 1957년 기준 가중지수는 월별로 불량의 상이함이 없고 지수는 가격변동만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수정의 영향이 특별히 명백하게 나타난 때는 1957년 1958년초 그리고 다시 1959년과 1960년이였다.

각각 12%, 5%의 가중치를 가진 교통비와 교양오락비의 1957년 기준 가중지수는 1947~48년 기준 가중지수에서 보다 계절변동이 이상하게

나타나고 있다.

두 지수의 변동정향은 1957년 기준 가중지수가 다소 클뿐 지의 비슷하다.

아. 소비자 물가지수에 적용하는 가격

지수제산에 적용하는 가격은 특매와 불품세를 포함하여 최근 구입자가 지불하는 소매가격이다. 그러나 특, 정상, 재고정리 판매등 다양한 거래조건에 있어서는 소비자 물가지수에 적용하는 실제 소매가격을 더 상세하게 귀찮하였다.

적용되는 각상품 가격과 서비스 요금은 조사일에 있어서 각 점포에서 거래된 실제 가격이다. 실제 가격은 조사일에 있어서 일반대상이 특매가격이든 정상가격이든 관계없이 실제로 구입한 가격이라고 정의한다.

아래의 가격조사요령이 이 가격정의에 명확하게 하여 준다.

(1) 조사하는 품목은 일반적인 상품이며 특매목적으로 특별히 제조한 상품이 아니다.

(2) 상당한 량이 판매 되어야 한다. 상당한 량이라는 의미는 품목에 따라 다르다. 20개의 냉장고는 상당하지만 20 1/2 파운드의 메이론은 상당한 량이라고 할 수 없다.

(3) 대상처에서 가격조사하는 시간이 월별로 일정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보고된 가격에 따라 실제 조사일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직용가격의 상태에 관련된 다른 요소는 특히 식료품, 약품, 가구용품과 개인용품 등으로 복수단위 가격이다. 복수단위 가격은 상품을 들 또는 그 이상을 같이 구입할 때 이루어지는 가격이다. 실무에서는 일반적으로 판매되고 있을 복수 단위를 잡

으며 극단적인 상태는 제외한다.

(또한 실무에서 복수단위를 잡는 것은 품목에 따라 다르며 대개의 단위는 둘 내지 세 단위이고 많은 것으로서 고정된 경우는 6까지 잡은 경우도 있다.

그러나 상자로 판매되는 장통상품이나 바구니로 거래되는 도마도 등은 예외적인 상태로 생각된다. 복수단위의 가격에 대하여는 개별 단위의 가격을 계산해서 지수에 적용한다.

복수단위 가격은 일정상품을 여러개 모아서 판매함으로써 생기기도 하고 특정 상품으로 쿠폰 장난감, 그리고 소원 따위의 다른 상품이 모여서 판매되는 데에서 생기기도 한다.

단일상품이 여러개 같이 거래될 때에는 단위 가격을 산출하도록 되어 있다.

~344~

이종의 상품을 모아서 거래할 때에는 개별가격이 나와있지 않으므로 단일상품에 되어있는 가격을 단 순히 적용함으로써 비록 다른 상품의 가격이 포함 되어 있다 할지라도 전체상품의 가격변동으로 측정 하고 있다.

여러개 모인 상품과 같이 거래되는 어떤 상품과 그렇지 않은 어떤 상품이 있는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위의 경우 즉 한가지 상품이 복 수단위로 거래되는 상품을 조사하게 된다.

조사대상처 조사방법 및 조사 빈도는 위의 조사 대상처 조사빈도 시점 및 조사활동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자. 지수계산

“소비자물가지수” (1949. 1월 ~ 1952. 8월)에서 발췌한 아래의 내용중에, 많은 가격자료를 지수에 적용하기에 적합하게 정리하는 절차가 기록되어 있다. 피복비지수를 가지고 일반적인 방법을 설명하기로 한다. 이러한 절차는 많은 변화가 있는 가운데 원칙적으로 지금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매월 수집하는 많은 가격자료를 가지고 소비자물가지수의 계산은, 개별가격의 영향이 가중치 체계에 따라 조절되는 평균작업으로 이루어진다. 별모에 있는 가중치는 뒷부분의 계산작업에서 사용되는데 거기에서 개별품목의 기준시점가격지수가 총지수로 합성되는 것이다. 이 표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몇 가지 사전 가중 작용이 개별품목의 가격지수를 얻기 위하여 사용된다. 대다수의 품목은 그 평균

~346~

가격이 각각 다른 여러 도시의 여러 점포에서 수집한 너댓가지 품질규격에 대한 개별가격을 가지고 산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여러개의 가격은 가중평균가격을 산출할 필요가 생기고 가격은 예로서 남자용셔츠의 두 종류라틴가 시트와 세탁비 셔츠세탁비등의 세탁비와 같은 품목에서도 품질규격의 다름에 따라 가격차가 생긴다. 가중치는 개인상점과 단체점과 같은 특징형에 따라 가격을 평균함에 필요할 것이다. 이와같이 하여 전국평균가격은 도시평균가격을 가중하여 산출한다.

지수를 계산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피복비지수를 계산하는 절차를 가지고 아래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피복비는 5개의 분류로 나누어져서 남자용의복 여자용의복 아동용의복 신발류 그리고 장신구로 이루어져 있다. 각 분류는 대분류의 물가변동을 측정하기 위한 품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남자용 의복에서는 각 품목의 하나 또는 둘 이상
 의 품질구격에 대한 가격을 매월 물가조사원이 주
 제하고 있는 8개 시의 일반상점과 백화점에서 선정
 한 대상처에서 수집한다. 각 품목의 각 품질구격
 에 대한 대상처별 가격은 먼저 남자용 의복의 점
 포별 판매액에 따라 가중된다. 최종으로 도시 평균
 가격은 차례로 각 시의 남자용 의복 판매의 상대적인
 중요도에 따라 가중하여 각 품질구격별로 전도시
 평균가격을 산출하게 된다. 그 다음에 원월의 평
 균가격은 전월의 평균가격과 비교하여 상대적 변동
 을 계산하게 된다. 그리고 이 상대적 변동을 가지
 고 1949년 기준지수에 연결하고 품목내의 품질구
 격별로 다른 지수는 합성하여 품목별 단일가격지수
 를 산출하게 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해서 남자용
 의복류중의 각 품목별로 독립적인 지수가 나오고
 기준시점으로부터 현재까지의 가격변동을 나타내게

된다. 이러한 개별 품목 지수는 품목별 가중치에 따라 합성되어 남자용 의복류 지수가 나오게 되고 같은 방법으로 여자용 의복, 아동용 의복, 신발류, 장신구 지수를 산출하여 의복비 지수를 유도하게 된다.

차. 가격 및 가중치의 계절변동

소비자가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에 있어서 가격은 변동을 통하여 시장공급의 계절성이나 수요가 계절성에 따라 변동을 하게 된다.

식료품은 공급의 계절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한편

저울용 효트는 수요의 계절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개별 지수에서 가격의 계절적인 변동을 포함시켜 월별 지수의 움직임에는 계절적인 가격변동을 가계구입에 있어서의 계절 상품의 상대적 월별 중요도에 따라 반영시키고 있다.

월간 지수에서 계절 상품에 관련된 기본적인 문제는

그들 상품의 월별 상대적중요도를 적절히 반영할
 가중치의 선정과 동시에 완전한 생활수준을 측정하
 기 위한 비용에 대한 물가변동을 적절히 측정할
 가중치의 선정문제이다. 1947 - 48 기준지수에서
 식료품에 대한 문제점과 그에 대해 적용한 해결
 방법은 아래의 발췌문에 기록하였는데 그 방법은
 개평지수에서와 거의 같다.

• 만약 도마도를 대부분의 다른 품목과 같이 지
 수에서 취급한다면 그것은 월에 따라 다르지 않은
 고정가중치를 가질 것이다. 이것은 월별로 도마도
 가격의 백분비변동은 도마도의 월별지출액이 변동이
 없는 것으로 전제되어 처리되는 것이다. 그것은
 여름과 가을에 도마도 가격이 낮을 때에는 도마도에
 대한 지출도 적다는 뜻이 되고 동시에 도마도 가격
 이 비싼 겨울과 봄철에 지수가 높은 것에 비하여
 낮은 지수를 나타내게 된다. 그와 같은 고정가중

치와 그에 결과되는 지수는 계절적으로 가격이 높을 때에는 소비량이 적으므로 이 나라에서는 경험상으로 보아 고정가중치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게 표현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본다. 이러한 전지에서 도마도의 지출비용에 따른 계절적인 가격변동의 영향은 가격의 변동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가격변동에 관련된 물량의 변동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렇게 해서 소비자물가지수에서 도마도의 가중치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소비자의 구매실태에 따라 년중 월별로 변동한다. 이와 같이 식료품 지수에서도 월별 가중치가 사용되는데 년평균 지출이 월간 지출을 대표하지 않게 된다.

“ 12개월간을 통하여 사과, 통조림과실 및 신선한 야채, 채소통조림, 우유, 계란 그리고 육류로 구성된 군(群)의 월별 총지출액은 식료품전체에 대하여 고정된 백분비를 부여하고 그 군(群) 내의

품목별 지출액은 월별로 편차가 다르게 된다.

농산물, 곡물 및 기타 식품으로 이루어진 다른 군에 있어서는 지출백분비가 12개월을 통하여 총액변에서나 품목별로나 일정하다. 그러므로 우선 품목별 월간가중치를 적용하여 군의 지수를 산출하고 두 군의 지수를 합성하는 때에는 고정가중치를 적용하였다. 그 결과는 매월별로 식료품의 소비량을 평균적으로 구입하였는데 있어서의 비용변동을 나타내는 지수이다.

이 기술적 방법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야기되는 어려운 문제는 매월 평균적으로 구입하는 식료품의량이 같지 않고 총량면에서 다소 다르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식료품비 지수의 움직임은 가격변화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구입한 식료품의 총량의 변화도 반영하는 것이다. 이것은 계절패턴에는 영향을 받지 않지만 식료품의 계절적인 총량과 추세나 연간평균

가구에서 12개월간 식료품의 총구입비가 $\pm 2\%$ 의 범위내에 변화를 보이고 있다. 1947~48년

기준 식료품가중치에 포함하는 식료품 총량의 이와 같은 차는 단 식료품지수의 계절변동과는 의곡된

것이다. 이러한 지수의 차와 의곡된 상태는 개별 품목의 물량은 월별로 다르게 반영하나 총량은

12개월간 매월 고정시켜 놓음으로써 개편지수에서 는 그 영향을 제거시키고 있다. 이 목적은 식료

품바구니에 들어 있는 각 계절품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조정을 함으로써 해결을 하였다.

특정월의 각 계절품목에 있어서 구입한 물량은 1957년 평균가격으로 추정된 월간평균물량의 비율

을 해당월의 실제 구입물량에 포함함으로써 조정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만약

특정월의 실제구입물량이 평균치보다 높다면 (낮다면) 전

계절품목의 물량은 비례적으로 감소(증가)하게 된

다. 그러면 조정된 월별물량의 총계는 실제구입한

월별평균치와 같게 되고 지수에 포함된 식료품의 종량은 12개월간 일정하게 된다. 동시에 특정월의 바꾸니속에 있는 많은 계절품목의 실제가중치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왜냐 하면 실제구입한 물량을 비례적으로 조정하였기 때문이다. 개편지수에서 계절식료품에 부여한 가중치에는 조정된 물량이 반영된 것이다. 그러므로 개편지수는 식료품내에서 품목별 실질가중치로써 계절변동을 조정하는 것이고 동시에 식료품 바꾸니 전체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물가변동의 충격이 있는가를 측정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기술적인 조정방법으로 복숭아, 딸기, 무수수와 같이 년중 몇달간만 출회하는 계절성이 강한 품목도 지수에 직접 포함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것들은 개편지수에서 처음으로 지수에 포함되었다. 계절품목 바꾸니에 포함된 품목별 실질금액가중치는

별포에 나타나 있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식료품 전체지수의 수준에서는 조정이 조금 가해진 반면에 월별물량의 조정이 훨씬 낮은 분류와 품목수준에서는 더욱 그 결과가 대두되나 그 기술적인 조정방법이 세분류에서는 부적당한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채소류, 과일류와 같은 분류의 독립적인 지수계열에서는 조정된 월별물량이 아니고 년평균물량을 사용하여 계산 하였다. 이 분류지수는 정기적으로 "물가 및 물가지수" (*prices and price indexes*) 라는 간행물에 발표된다.

이와 같이 식료품에 대하여 계절가중치를 적용하는 기술적인 조정방법의 결과로 개별지수의 계절패턴은 구지수의 식료품 계절패턴과 훨씬 더 다르고 총지수의 간격이 매우 작아졌다. 그러므로 현월과 전년 어느 달과의 식료품 가격의 변동을 측정하는

태 있어서도 개편지수를 사용하여야 한다. 총지수의 계절변동의 양도 매우 적어졌고 과거지수와 비교하는데도 큰 차이는 없다. 이번에 조정방법을 달리했다 하더라도 연평균지수에 가서는 차이가 없다.

개편지수에서 식료품의 가중치는 1957년에 시행한 12개월별 식료품조사에 기점을 두고 있는데 그 식료품조사는 매월 두 주일간에 걸쳐 가계에서 구입한 식료품비의 기록을 수집한 것이다. 그 외의 계절적인 구입품(예. 떠부)에 있어서 금액자료가 월별로 수집되지 않기 때문에 계절적으로 변동가중치의 적용은 불가능하다. 식료품을 제외한 모든 계절품목에 대하여는 고정가중치가 사용된다. 현재 실무적으로는 매월지수에서 정상계절구입의 최종월의 가격을 정상적 구입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달까지 끌어 나가고 있다. 그러므로 품절기간동안 일정한 보합가격이 반영되고 있다.

계절 식료품 지수의 계산에 사용하는 산식은 아래와 같다.

$$I_{m,1} = \frac{\sum p_{m,1} q'_{m,0}}{1/12 S \sum p_{m,0} q'_{m,0}} \times 100$$

$$= \frac{\sum p_{m,1} q'_{m,0}}{\sum \bar{p}_0 \bar{q}'_0} \times 100$$

단 $I_{m,1}$ = I 해 m월의 계절 식료품지수

$p_{m,1}$ = I 해 m월의 상품가격

$p_{m,0}$ = 기준년 m월의 상품가격

$q'_{m,0}$ = 기준년 m월의 조정된 상품물량

\bar{p}_0 = 기준년의 상품의 년간 가중평균가격

\bar{q}'_0 = 기준년의 조정된 월평균 상품물량

\sum = 상품에 대한 총화

S = 월별에 대한 총화

소비재화 구매의 개념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개별지수에서 품목에 부여한 가중치는 1957년중에 대상가구모집단에서 보고된 품목별 또는 품목군별 구입액에 따라 결정된 것이다. 1957년이전에 구입하고 1957년중에 그 일부를 또는 전부를 지불한 상품은 제외하였다. 이 구매의 개념은 소유주택 및 아래에서 설명하는 방법을 제외하고 지수에서 전품목의 가중치를 결정하는 기초가 된다. 구매의 개념은 특히 소비자가 생계목적으로 시장에서 구입하는 물건의 가격의 움직임을 측정하는 소비자물가지수에 적합하다.

대다수의 품목이 예를 들어 식품, 세탁비, 주창오, 금과, 담배등은 구매기간내에 사용되거나 소비되기 때문에 구매와 소비가 같게 된다. 피복, 직물, 가계용품, 집기 그리고 자동차와 같은 상품들은 장기

간에 다 사용하게 되고 개인이나 가구에 있어서
 구매와 소비는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수의
 대상집단과 같이 가구의 큰 집단에 있어서는 전체
 적으로 집단에서 구입한 것은 집단에서 소비한 것
 과 일치할 것이다. 이것은 말하자면 전가구원이
 1년간 사용하는 냉장고와 같이 만약 집단에서 구
 입한 것이 한 상품의 양을 변경하는 것이다.
 구입은 사실상 대상집단에서 사용하는 냉장고의 감,
 가관계로 실제 필요량보다 클 것이며 따라서 구입
 은 감가된 량과 재고량을 합한 것이 될 것이다.
 이러한 재고로 가해지는 것이 냉장고의 소비가 증
 가된 것으로 만들며 그러한 소비재의 구입이 소비
 의 증가를 이루게 만든다. 같은 이치로 만약 구
 입이 감가상각보다 현저하게 적다면 감소하는 소비
 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므로 구매개념에 기초를
 둔 개편지수는 가중기준시에 있어서 가구에서 구입

한 것에 따라 일정한 생계수준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물가변동이 그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가를 측정하는 것이다.

구지수의 기준기준년인 1947~48년에 있어서 내구소비재의 구입은 기준시의 공급부족에 따라 비정상적인 상태였으며 구입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였으므로 구지수에서 특정 내구재상품의 가중치는 별로 정상적인 것이 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이유에서 자동차, 냉장고, 세탁기, 전기난로와 주택의 보고된 구입액을 정상소비수준에 맞추기 위하여 구하였다. 1957년에 있어서 구입은 정상 상태로 판명이 되었고 1953년과 1955년의 가계조사 결과도 정상적인 경향으로 일치 하였다. 그러므로 비정상적인 상태가 없는 한 보고된 구입액을 품목별 가중치를 부여하는 기초자료로 하였으며 단 소유 주택은 예외로 하였다.

소유주택 가중치의 기초가 되는 개념은 대상가구 집단에서 소유하고 또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연간 감가상각비로서 측정된 소비액이다. 1947~48년 가중치는 주택구입비에 대한 감가상각분의 가중치가 되나 이론적으로는 개편지수에서 구입비에 대한 가중치가 될 것이다. 실제적으로 그러한 방법의 변경이 주택에 부여하는 가중치에 매우 큰 변동을 초래할 것이므로 감가상각비분의 가중치를 답습하였다. 소비자물가지수에서 구매와 감가상각의 개념의 장점에 대한 일치하지 않는 견해가 이 나라에서나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도 생기고 있다. 현재 시점에서는 그러한 문제점의 제의가 배척되고 개념상의 방법을 변경하지 않는 것이 권장되고 있다.

종교품 판매비는 지수에서 제외된다. 대상가구 집단 전체로 볼 때 집단 내에서 가구간에 구매된 종교품비의 변화는 대상집단의 생계비의 영향을 미치지 않

는다. 가구간에 그러한 교환은 상쇄되며 단지 사
업체부문에서 순수히 구입한 증교품비만이 대상집단
의 생계비에 영향을 끼친다. 이 방법은 전체증교
품거래의 일부분외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그러한
품목들은 지수에 포함되지도 않고 지수계산에 넣기
위하여 가격을 조사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새로운
상품의 구매액에 의한 가중치는 순수히 외부에서
구입해 들여온 것이다.

세금과 보험금의 취급

1947 ~ 48년 기준가중지수에 세금과 보험금을
처리하는 개념적인 문제가 검토되었으며 개편지수에
서도 세금에 있어서나 보험금에 있어서도 아무런
변동이 없다. 그러므로 이 두 품목에 대해 전차
의 개편시에 실질한 요령이 아직도 적용되어 이번
지수에서도 같은 요령으로 취급하였다.

① 세금

세금이 지수에 영향을 미칠 환계에 대하여 결정을 해 두는 것은 역시 지수의 정의(성격)에 따라 개괄적으로 기본적인 고려가 있어야 한다.

지수는 특정한 캐나다거주에서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고정량에 대한 시장가격의 변동을 측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품의 시장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세금만을 지수에서는 포함하고 있다.

상품가격에 포함하여 있지 않은 세금은 제외된다. 판매세와 물품세는 그것이 상품가격에 달려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때에 그 세금까지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수계산에 적용하는 가격에는 연방, 도나 시 수준 어디에서 부과한 것이건 모든 상품세를 포함한다. 이론적으로는 판매세와 물품세의 변동에 따른 상품과 서비스물량변화로 고려

하여 조정을 가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그러한 조정작업이 평균가격을 가지고 평균적인 물량과 품질의 상품 및 서비스를 별도로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었다.

재산세는 주택 소유비용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래서 이것도 지수의 "shelter"액에 포함되어 있다. 재산세로 하는 서비스로는 소방비, 학교, 도로나 기타 유사한 서비스의 형태로서 차가 있으므로 지역개발비를 제외하고 그러한 세금의 변동은 상대적으로 고정된 상품과 서비스의 바스켓의 가격의 변동을 공정히 나타낼 것이다. 자동차 면허세도 구입가격으로 간주하여 역시 지수에 포함하고 있다.

소득세는 상품이나 서비스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므로 지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② 보험

지수의 모집단에 해당하는 가구에서는 아래 형태의 보험을 보고하여 왔다.

1. 생명보험

2. 의료보험

가) 의료비 선불

나) 병고 및 사고

3. 재해보험

가) 가옥

나) 가재

다) 자동차

4. 실업보험

이러한 형태의 보험이 포함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정의는 받는 임금의 형태에 따라 결정된다. 보험이 포함된 특수경비를 잡기 위하여 청구가 된 경우에 그리고 상품 및 서비스의

특정량에 관계없이 지불이 된 경우에 있어서 보험금은 제외하였다. 이렇게 해서 생명보험, 실업보험, 그리고 병이나 사고시에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들은 지수에서 제외하였다. 그러한 보험정책에 있어서 액면가격은 고정량의 상품과 서비스와 구별되지 않는 미래의 구매력을 나타낸다.

지수는 재산보험, 선불 입의로서의 비용을 계산에 넣고 있다. 이러한 타입의 보험은 교환에 따른 걸런티를 나타낸다. 재산보험에 따른 프리미엄의 사고, 화재, 그리고 도난의 경우에, 상품을 보충하게 일정한 한계로 대체할 수 있는 걸런티의 가격으로 취급한다. 이와 같이 선급한 보건의료비는 의료서비스의 최대량의 가격으로 취급한다.

③ 보건의료

1957년 가계지출비에는 사전계획에 들어 있지 않은 중요한 병원의 직접 경비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1957년 이래 병원비용에 대한 문제를 널리 제기함으로써 오히려 이 품목의 병원 직접경비가 제거되었다. 더구나 전주(全州)의 의료비가 연방정부의 수입에서 막대한 량이 누락되었고 가구에서 지불한 프리미엄이 의료비를 나타내지 못한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지불한 가격과 프리미엄은 일정한 또는 동등한 의료량으로 구분할 수가 없으므로 그 품목은 "개명지수의 지수품목"에서 설명한 기준을 잡기까지는 지수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의료비는 개명지수에서 대상품목으로 포함하지 않았다. 지수에 포함하고 있는 보건의료비에는 선찰비 선지불한 의료 프리미엄과 약품가격만을 포함하고 있다.

파. 소비자물가지수의 분류

지수에 포함하고 있는 품목은 대분류로 나뉘어져 별도의 독립적인 지수가 산출되고 발표된다. 전통적으로 분류의 기준은 상품 및 서비스의 형태와 용도이었다. 이렇게 해서 피복비는 소비자물가지수의 대분류가 되고 남자용의복, 여자용의복등은 피복비내의 세분류가 된다. 이 분류방법을 개편지수에 서도 답습하였고 그 분류결과는 가중치표에 나와 있다. 총지수내의 세분류는 마지막란에 가중치가 적혀 있는 것이다. 이번 개편에서는 대분류내에서 두가지 조정을 하여 총지수를 기본분류하는 보다 이용 가치가 있는 세분류를 마련하였다. 이것들은 구지수와 신지수의 대분류 및 가중치비교에 표시되었으며 아래와 같다.

구 지 수	개 편 지 수
대분류	대분류
총지수 100	총품목 100
식료품 32	식료품 27
Shelter 15	주거 32
가구운영비 17	피부 11
피복비 11	교통 12
기타품목 및 서	보건, 미용위생 7
비스 25	교양, 오락 5
	영초 및 주류 8

개편지수에서는 가구운영비와 Shelter가 합해져서 상품의 구입과 자기소유나 차가의 거주비운용을 전부 모아서 나타내는 거주비항목을 이루었다. 반면에 구지수의 "기타상품 및 서비스" 항목에서는

등질적인 분류로 세분류 하였다. 재분류를 함에 있어서 Total을 세분류 지수의 총합으로 오해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총지수를 전품목이라는 어휘로 바꾸었다. 전품목 지수는 사실상 분류별 지수의 가중평균치이다.

위에 기록한 대분류의 지수와 총지수는 먼저 매월 연방통계국에서 발간하는 "물가변동"에 게재하여 발표한다. 그 이상의 상세한 것은 일개월 후에 발간되는 "물가와 물가지수"라는 정기간행물에 게재하여 발표하게 된다.

하. 보조적분류 및 지수

위에서 설명한 소비자물가지수의 분류는 소비자물가의 변동을 알기 위한 이용자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한편 다른 기준에 따라 분류된 품목군의 지수에 대한 요구가 늘어 가고 있어

보조적인 특수분류가 개발되었다. 특수분류는 지수에 포함된 전체품목을 다른 기준으로 재분류하여 놓은 것이다. 예를 들어 전품목이 일차적으로

(a) 상품군과 (b) 서비스군으로 구분되어 이 두 구분류간을 나타내도록 시도하였다. 상품군은 다시 배구재와 비배구재로 나누어졌다. 식료품이외의 품목이 모, 면 그리고 합성섬유가 기본상품분류의 기준으로 나누어진 반면에 비배구재는 식료품과 식료품이외품목의 최종소비로 나누어져 있다. 특수분류의 가중치표가 별표로 표시되어 있고 1949~60년간의 관련지수가 나타나 있다.

최근월의 지수는 5월분에 발간할 계획인 1961년 3월분으로부터 시작하여 정기적으로 "물가 및 물가지수"에 발표할 것이다. 서비스항목에 대한 세분류 작업의 연구가 계속중이며 그 결과가 나온 다음에 "물가 및 물가지수"에 소개될 것이다.

거 조사대상처 빈도 및 조사활동

가격조사는 다양한 대상처에서 지수에 포함하고 있는 상품과 서비스의 상태를 가격패턴에 따라 빈도를 달리하여 조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식료품은 면세 자유연쇄점 및 독립적인 식료품점포에서 그리고 피복품목과 가구용품은 백화점과 특수점포에서 자동차용품은 용품상 주유소 및 자동차판매장에서 조사하고 진료비는 해당사무실에서 조사한다. 유의적으로 선정된 표본점포가 각 시에서 모집단을 대표하도록 잘 선정되어 있다. 지수계산에 들어가는 가격계열수는 광범위하여서 과거 어느 한달에는 75개품목에 대하여 50,000개의 개별 식료품가격이 시별로 20개점포씩 33개시에서 조사되어 전국지수에 반영되었다. 한편 그 반면에 각 시에서 전차, 버스요금이나 자동차면허등품목에 대하여는 단 한개의 가격을 반영시킨다.

조사빈도 역시 조사될 품목의 상태에 따라서 결정하였는데 대부분의 품목이 월별로 조사된다. 이
 군은 모든 식료품, 피복, 가구용품, 세, 주택소유비용
 연료와 휘발유등을 포함한다. 가격변동량이 심하지
 않거나 변동이 잦지 않은 품목은 조사빈도에 따라
 서 자동차는 격월별로, 신문은 년 2회, 그리고 자
 동차는 면허와 재산세는 년 1회 조사한다. 정상조
 사일이외에도 가격이 현저하게 변한 것으로 알려진
 품목에 대하여는 정상조사일 사이에도 특별조사를
 하고 있다.

대부분의 가격자료가 8개도시의 물가조사담당자에
 의하여 수집된다. 이들 가격조사담당자들은 소비자
 물가지수에 포함하고 있는 상품과 서비스품목에
 대하여 소매점이나 기타 대상처에서 계속적으로 가
 격수집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기타 7개도시에 주
 재하고 있는 *part-time* 직원들은 지수품목으로서 상

당한 량을 차지하고 있는 식료품의 가격조사만을 책임지고 있다. 이들 15개 도시의 가격은 식료품과 기타 관련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우편조사로 보완하고 있다.

추가로 집계자료는 노동력조사지역중 도시지역의 세가구 약 10,000 매에서 월간조사로서 수집한다. 빵과 우유의 상점 가격은 이들 두 품목의 가정배달 가격으로 보완한다.

가격조사를 하는데 있어서는 각 상품 및 서비스 품목을 상세히 설명하여 기술한 품질규격이 필요하며 그에 의하여 일정한 품질규격의 상품 및 서비스를 조사함으로써 도시간의 가격비교나 시점간의 가격에 품질규격의 상이에서 오는 가격차가 아닌 순수한 가격차를 유지하게 된다.

지수계산에 적용된 가격은 전부가 월초일에 수집한 것이 아니므로 지수가 꼭 어느 특정일의 가격

을 대상으로 하였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가격이 매월 초일로 집중되어 있고 연세식료상점의 가격은 매월 첫 금요일에 그리고 독립적인 식료품상점의 가격은 월초 5일간의 게시일중에 조사한다.

지방의 전차나 버스요금, 신문, 휘발유 연료와 극장요금과 같은 품목은 모두 매월 초일이나 그날이 공휴일이면 다음날에 조사한다. 피복과 가구용품의 경우에는 전월 20일부터 해당월 14일까지 기간의 가격이 대상으로 된다.

4. 인도 소비자물가지수

4. 인도 소비자물가지수

(1) 조사목적

1. 소매물가지수는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소비자물가지수를 작성키위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소비자물가지수의 성격과 지수작성방법에 대하여 검토해 볼으로써 물가지수의 기본원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본다. 소비자물가지수는 공장노동자가제가 일상구입하는 일반소매상품가격과 「서어비스」요금의 변동상태를 월별로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구입량과 가격의 변동만이 아닌 가격의 변동만을 측정하는 것이다.

즉 공장노동자들이 일반적으로 구입하는 고정적이고 가격화된 상품과 「서어비스」의 사장바구니 (Market basket)의 가격변동을 측정하는 것이 본소비자 물가지수이다. 바구니는 상품과 「서어

비스」가 고정적일 뿐만 아니라 품질에까지도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이 시장바구니의 구성 요소는

(a) 공장노동자 가구에서 일반적으로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품명

(b) 공장노동자 가구들이 대중적으로 구입하는 품질 (품질규격)

(c) 이들 각 품목에 대한 지출액이 가계소비지출 총액중에서 차지하는 비율 (중요도)

(d) 어떤 일정시점에 공장노동자들이 지정한 품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한 가격 (기준시 가격)

1.2. 이제부터는 이 네가지 요소에 의거한 지수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제시하겠다. 지수는 어떤 기준시점에 비하여 얼마나 변동되었나를 측정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비교가 되는 기준시가 있다.

다음 예시에서는 역년 1959년이 기준시이다.

단순하게 간단하게 예시하기 위하여 쌀, 밀크

정육으로서 식료품지수를 1959년 기준(1959=100)

으로 1960년 1월에 작성한다면

품목	품질 가격	가중치	평균 가격 (대상처별, 월별)		가격비	가격비 × 가중치
			기준시가격 (1959)	현재가격 (1960.1)		
1	2	3	4	5	6	7
쌀	정미종품	65	0.50	0.52	104.0	6240
우유	젖소,우유종품	25	0.36	0.40	111.1	2778
정육	염소고기종품	15	1.50	0.75	116.7	1750
						10768

$$\text{식료품지수} = \frac{\text{가격비} \times \text{가중치 의 누적 (7년)}}{\text{가중치 의 합 (3년)}} = \frac{10768}{100} = 107.7$$

이상은 각비목(식료품비, 주거비, 광열비등)에 대한 특정월의 지수산출 방법이고 소비자물가 총지수 산출은 이들 비목별 지수에 비목별 지출

비율을 가장하여 산출된다.

1.3 각 품목에 대한 가중치는 가계생계조사료에서 얻는다. 소매물가자료수집의 근본요건은 본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상품과 「서비스」의 지정된 품질가격의 가격변동을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 조사시점에서 다음 조사시점 동안에 실제 가격변동이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한 변동이 없도록 관리되어야 하며 그러한 허위변동은 품질의 변화 조사대상점포의 변화 조사날짜의 변화등과 실제 조사기술상의 변화등으로 야기된다. 물론 지수변동요인을 고정시킬 수는 없는 것이지만 조사상 이러한 요인들이 미치는 영향을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가격의 실질 변동만이 지수에 포함하도록 하고 또한 실제로 물가조사기술은 이러한 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면

안된다. 간단히 말해서 물가조사에는 다음과 같은 기본조건이 유지되어야 한다.

- (a) 매 조사지점마다 지정된 품질, 규격은 고정되어야 한다.
- (b) 매 조사시마다 고정된 대상점포에서 수집된 가격이어야 한다.
- (c) 조사는 가격수집기간중에 일정한 날자에 실시하며 조사시간도 일정해야 한다.
- (d) 가격은 근로자들이 일정 규격의 상품 및 「서비스」를 구입할 때 실제 지불하는 현금가격이어야 하며 소비자에 전가되는 판매세와 기타 모든 지방세를 포함한 가격이어야 한다.
- (e) 일반시장에서 대중적이고 구매관습으로 형성되는 가격을 정확히 파악하여 수집하여야 한다.

1.4. 이러한 양태에 대하여는 본 지침서의 3.2항에서 3.6항까지 자세히 설명하였으며 특히 위의 조건을

지속시키기 위하여 취해야 할 절차를 취급 설명하였다. 이 지침서의 설명은 가격수집자가 가격수집상의 기본요건을 이해하고 많은 소임을 과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소매물가조사체제

2.1. 가격수집은 설정된 기준에 의하여 이행되어야 함으로 가격조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모든 사항에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같은 자세한 설명비용은 시장의 선정 조사대상점포의 지정 조사할 상품과 「서비스」의 품목지정 각 품목의 품질 가격지정등이다. 이러한 모든 자세한 내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노동통제국은 내무관계 국과 공동으로 각 지방도시에서 시장형성관계 공장노동자 등의 기호 공장노동자가구의 집결상태등을 검토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들 세부사항의 기준을 고정시키는데 필요한 광범위한 이론은

다음 항에서 간단히 기술하여 물가조사원 및 물가조사지도원으로 하여금 물가조사의 근본원리를 이해하게 하고 그 처리과정을 자세히 알게하고 앞으로 이러한 기준이 근본적으로 변화된 상태로 가격수집이 되는 경우에 시계열상으로 적절히 연결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2.2 공장노동자들이 주된 주민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이 서로 인접해 있고 이들이 이용하는 공동시장이나 몇개의 시장을 포함하도록 조사지역을 설정하였으며 이들 각 조사지역마다 정기적인 가격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선정된 조사대상시장은 그 지역내에서 공장노동자들에게 가장 대중적이고 다른 시장의 가격을 주도할 수 있는 시장이다. 이러한 시장내에서 경영상태가 양호하고 공장노동자들에게 가장 대중적인 점포가 각 취급 품목별(식료품상, 어물상, 피복상, 문방구상등)

로 지정되어 있다. 한 지정조사지역내에서 선정된 시장에서 대증성있는 점포를 대상으로 매 품목별로 2개의 점포를 본조사대상처로 그리고 다른 두개의 점포를 예비대상처로 선정되었으며 정기적으로 두개의 지정된 대상처에서 조사를 하고 예비대상처는 필요한 경우에 본대상처 대신 활용한다. 예비대상처의 활용에 대하여는 다음에 설명하기로 한다. 주기적으로 형성되는 시장에서는 조사대상점포를 고정시키지 않았다. 그 이유는 주기적으로 형성되지 않기 때문이며 따라서 지정된 품질규격에 따라 어느 점포에서 가격조사를 하더라도 대표성있는 가격이 될수있는 것이다. 조사대상점포 선정에 고려된 사항은 공장노동자들이 많이 출입하고 취급하는 상품 및 「서어비스」의 종류 시장내에서 대표성이 있는 위치, 조사상의 편의등이다. 행상인들이 모여 일시적으로

형성하는 가점은 조사대상점포에서 제외하였다.
조사일은 매주 일정한 요일로 지정되어 있으며
단지 소수의 경우에 한해 한 조사지역내에 있는
시장별 조사일이 서로 다르기도 하다.

물가조사품목은 각 지방의 공장노동자가구의
소비(패턴)에 따라 선정되었으며 각 품목에
대한 품질은 자세히 기술되었고 그 내용에 따라
매주마다 가격을 수집한다. 품질가격은 품종이름
등급 기타 물리적특성(예컨대: 색깔, 크기, 구조
등)등을 명세한 것이다. 품질명세 즉 품질가격
은 가장 대중적인 점포로 부터 수집한 것이다
품질가격은 공장노동자들에 의해 대상거래되는
상품과 「서비스」의 품질을 통일적으로 지정하
기 위한 것이다.

특히 품질가격은 소비자물가지수를 용이하게 편제
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매 지역

마다 조사구별로 통일시켰다.

가격 조사의 단위(kg, 다투(dozen) 등도 각 지방의 거래상황을 조사하여 공장노동자들이 일반적으로 구입하는 비습에 따라 결정하였다.

2.3 지정된 조사일과 조사품목별 본 대상처 및 예비대상처의 점포명과 주소를 각 조사원이 파악하고 있다.

조사품상의 조사가격 번호 1은 제일 본 대상처의 가격을 번호 2는 제2 본 대상처의 가격을 의미하며 예비대상(본 조대상처의 활용에 대하여는 다음에 설명하기로 한다.)

각 조사원은 매주 지정된 조사일에 조사지침 내용에 따라 품목달 두개의 가격을 조사 기입해야 한다.

(3) 조사요령

3.1 매주 지정된 조사일에 조사원은 지정된 조사

대상처를 방문하여 지정된 품질규격에 맞는 가격을 각 품목당 2개씩 수집한다.

조사표상에 표시된 경우에는 통제가격 자유경쟁 가격등을 기입해야 한다.

조사원이 명심하여야 할 사항은 상인들 특히 지정된 본 조사대상처 및 예비대상처의 점포주와 유대를 건밀히하여 가격조사에 잘 협조하도록 하지 않으면 안된다.

조사의 목적을 응답전에 설명해 주고, 그들이 제공한 가격자료는 소비자물가지수산출에만 이용될 뿐이고 공표되지 않으며, 지수작성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으며 개인의 비밀이 절대적으로 보장됨을 납득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다음은 가격수집상의 기술적인 요령에 대하여 전기한 1.3 항의 다섯가지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사례별로 설명

하겠다.

3.2 매 조사 때마다 지정된 품질가격은 유지되어야 한다.

조사표상에 표시된 품질가격은 이러한 의도하에 동질적인 가격을 계속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조사원은 이러한 품질가격을 미리 검토연구하여 비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조사가 실시되기 이전에 조사원은 본 대상처 및 예비대상처의 상인과 품질에 관하여 예비검사를 해야 하며 실제 형태를 가진 상품에 대하여는 등급이나 품종등을 충분히 검토 확인한 다음 만약 이미 지정된 가격명세에는 누락된 어떤 사항이 보다 더 효과적으로 품질을 고정시키는 요건이라는 것이 판명되면 조정을 하거나 추가하도록 해야 한다.

조사증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가격조사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상품이 지정된 품질규격에 적합한 것인가에 대하여는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지정된 품질이 시장에서 대중적 거래되는 한 조사를 해야 한다.

즉 시장에서 공장노동자들이 손쉽게 구입할 수 없이 많이 출회되지 않아 대중성을 상실하기까지는 조사를 계속해야 한다.

조사는 지정된 조사일 에 본 대상처에서는 특별한 이유(취급품목의 품질 및 일시휴계 등)로 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 때에는 예비대상처를 활용하게 된다.

3.2. 본 대상처중 하나 또는 둘다 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

이 때에는 하나 또는 두개의 예비대상처를 방문하여 조사하고, 만약, 예비대상처에서도

조사할 수 없어서 4개의 대상처중에서 한 곳
에서만 조사가 가능하였다면 같은 시장내에서
다른 점포를 찾아 조사한다.

3.22 본 대상처나 예비대상처 어느곳에서도 조사되
지 않을 경우

이와같은 경우에는 시장내의 다른 점포에서나
조사를 해야 하지만 지정된 대상처뿐만 아니고
전시장의 어느 점포에서도 지정된 품질로서는
조사가 불가능하면 신중으로 조사품목을 대체해
야 한다.

이러한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는 매주 가격조
사시 마다 시장상황을 두루 살피고 연구함으로
써 얻은 지식을 적절히 이용하고 본대상처에서

거래되지 않을 때는 동종상품을 판매하는 다른 상점을 방문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지정된 대상처에서 지정된 품질규격의 가격자료를 수집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다.

(a) 여기에서는 품질이지만 시장내 다른 점포에서 거래되고 있는가?

(b) 거래되고 있을 것이라면 그 점포명은 무엇이고 주소는 어디인가?

이상 두 질문에 대한 지정대상처의 대답에 따라 가격 조사자는 지정된 규격의 상품을 시장내 어느 점포에서는 거래가 되고 있는지의

사실여부와 거래되고 있다면 그중 2-3개의
점포명과 점포의 소재지를 명확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된 내용에 따라 조사원은
필요한 가격자료를 집하기 위하여 그 점포를
찾아가야 한다. 찾아가는 점포에서도 역시 그
상품이 품질이어서 거래되고 있지 않다면 전사
장에서 품상태로 단정하고 유사한 품종으로서
대상적으로 거래되는 한편 유사품종의 가격변동
을 대표할 수 있는 품질구색으로 대체토록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보면 조사원이 이와
같은 절차에 따라 하면 조사품질구색을 대
체하기 까지 2-3개보다 많은 점포를 방문할
필요는 없다. 끝으로 같은 시장이나 이웃시장에
동성의 상품을 취급하는 도매점이 있다면 이
도매점을 방문해 봄으로써 용이하게 그리고 명
확하게 거래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품질구색대체에 필요한 많은 정보
도 얻을 수 있다.

3.23 지정된 규격의 상품이 전시장에서 구할 수 없거나 대상성을 상실하였을 때.

지정된 규격의 상품이 시장에서 대상성을 상실하고 거의 거래되지 않는 경우이다. 자연히 이때에는 조사품질규격을 대체해야 하며 대체품질규격은 대체전의 본래품질규격과 동등한 것으로 시장에서는 가장 대상으로 거래되어야 한다. 품질규격을 완전대체하기 전에 모든 조사원은 대상성을 잃어가는 규격에 대하여 시장연구를 하고 본부에 어떤 이유로 대량줄고되지 않는가 또 그와같은 품질상태는 일시적인가 계절적요인인가 또는 영구히 품질될 것인가를 보고해야 한다. 새로운 대체품질규격으로 조사가 가능한가? 본래의 규격과 대체할 규격의 가격비가 대체직전 4주동안에 어떻게 나타났는지? 만약 신·구규격의 가격을 직접비교할 수 없다면 신·구규격의 차이는 어떤

것인가? 신·구 두 품질의 차 때문에 몇 「퍼센트」 정도의 가격차가 나는지 등을 보고해야 한다. 이러한 보고서는 지수편제에 있어서 경우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택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조사자가 본래의 조사품질규격의 상품이 머지 않아 거래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을 했다면 물론 조사원은 조사의 「참고」란에 새로 대체해야 할 품종과 그 가격을 본래의 규격이 다시 대상거래될 때까지 기입·동시 보고해야 한다. 또 하나 조사원이 명심해야 할 사항은 지정된 규격품의 품질상태가 다만 일시적인 것이었고 얼마 후에 다시 출회가 되면 원상대로 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과 명심해야 할 일반원칙중의 다른 하나는 대체된 신품질규격에 대한 규격조사대상처는 우선적으로 종전 규격의 조사대상처로 하고 만약 본대상처에서 신규제품을 취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조대상처에서,

보조대상처에서도 취급하지 않는다면 시장내 다른 적절한 집포에서 조사해야 한다. 이러한 일반적인 요령에 대한 정확한 절차를 다음 세가지 경우로 구분 설명하겠다.

(A) 현행 품질가격과 질적으로 동일한 대체품질가격이 존재할 때.

(B) 현행 품질가격과 질적으로 동일한 가격은 하지 않으나 비슷한 가격이 공장노동자들에 의해 대상적으로 구입될 때

(C) 공장노동자들이 대상적으로 구입하는 품종이 출현되지 않고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경우

3.23/ 전항 3.21과 3.22 에서와 같이 '추정된

품질가격에 대한 가격조사가 불가능하면 지금까지의 가격과 질적으로 동일한 품질가격으로 대체키 위하여 지정대상처를 재방문해야 한다.

종래의 품질가격과 동질이거나 또는 비슷한

대체구격을 선정하는데 필요한 기본원리를 다음에서 광범위하게 다루어 보기로 한다.

대체의 의미 ; 대체 (Substitute)라는 단어의 뜻은 어느것 대신 다른 것으로 대신 이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예컨대 쌀이 아주 커하게 되면 보통 사람들은 밀가루를 먹게된다. 이때 밀가루는 쌀에 대해 대체된 것이다. 그러나 가격조사에서의 "대체 (Substitute)"는 이러한 의미로 쓰여지지는 않는다. 가격 수집상에서 쓰이는 대체라는 말은 품목간의 대체가 아니라 동일 품목이되 질이 다른 것으로의 대체를 의미한다. 질적요준은 비슷하나 전품질과 똑같은 짓을 얻을 수는 없는 경우에 대체라는 말이 쓰인다. 예컨대 "허리띠"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자. 허리띠는 수계의 공장에서 여러 종류의 품질을 생산해 내고 시장에서 대체로 구입할 수 있다. 가격조사품

목으로 채택되어 조사자가 조사에 편리하도록 메이커의 이름, 상품번호, 등급등 자세한 품질내용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품질가격의에도 동질적인 것으로서 다른 품종의 허리띠가 시장에 출회될 수도 있다. 만약 지정된 품질가격의 허리띠가 어느 점포에서 판매되지 않는다고 할 때 조사자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지정된 품질가격과 동질적인 다른 품종을 찾아내고 그 품종의 가격과 품질가격의 자세한 내용을 함께 기록 보고해야 한다. 이것은 곧 비슷한 품질가격대체가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유사한 품질가격으로 대체할때 주의해야 할 요소는 무엇보다도 기존 가격의 품질과 동일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두품종 사이의 동일성은 가격수준에 의하여 파악될수 없고 물리적 특성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따라서 가격 소자는 대체시킬 신품질은 종래의 품질과 동질적인 것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상품의 물리적성질 (예컨대, 식칼
직조방법, 크기, 모양, 포장등등)에 대한 정보를
명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기록부를 비치하여 조사품목의 품질을 관찰하고
시험해본 모든 사항을 명확히 기록해 둠으로써
또한 경험이 풍부한 점포수로 부터 많은 조언을
들음으로써 동질성의 품질구격으로 대체할 수 있
도록 하는 것이다.

품질구격 대체시 유의해야 할 두번째 중요한
요소는 대체품질의 시장에서의 거래량이 풍부해야
한다는 점이다. 일단 한번 대체된 구격은 오랜동
안 시장출회가 지속되고 대중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으므로 자주 구격대체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는 시장에서 다량으로 거래가
가능한 품질로 대체를 해야 한다.

세번째 중요한 요소는 특히 남여용 허리에 두

르는 옷감의 경우, 기존조사 품질규격품을 생산해
온 동일공장이나 회사의 제품중에서 대체규격을
선정토록 한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특정한 물자
적이거나 다른 어느 특성은 재고공장과 관련이
있으며, 만약 공장직영의 소매점포가 시장에 있다
면 그들에게 문의하여 쉽게 비교성있는 품질규격
으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같은 공장
이나 회사의 제품으로 대체품목을 선정할 수 없
을 경우라면 대체이전의 원품질규격품을 생산한
공장이 있는 지역에 있는 타공장의 제품을 선정
해야 한다. 본래의 품질규격을 생산하는 공장이
봄베이에 있다면 대체품질규격도 봄베이에 있는
어느 다른 공장의 제품으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이것도 불가능이라면 결국 시장에서
가장 활발히 거래되는 규격을 선정해야 할 것이다.
대체품질규격의 가격보고요령 대체되어야 할 규

격과 새로 대체할 가격에 대한 가격조사가 일주
동안에 다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실사면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기 위하여는 어떻게 해야
하나를 설명 하겠다. 대체해야 할 품질가격을 선
정하기 위하여 지정된 제일 대상처를 방문했을
때 가격조사라는 앞 문장에서 언급한 바 있는
요소를 고려하기 위하여 하나의 대체품질가격만을
선정하지 않고 3-4개의 대체가능성 있는 품질
가격을 선정하고 그 품질가격과 가격을 노트에
기록해 둔다 두번째 가격조사를 하기 위하여 제
2의 대상처를 방문했을 때 조사원은 제1대상처
에서 선정 노트에 기입해 놓은 3-4개의 품질
가격중에서 어느 것을 조사할 수 있는지를 조사
해야 한다. 만약 조사가 가능하면 대체 전의 가
격에 대한 가격을 조사 보고하면 되지만 제1대
상처에서 기록해 놓은 품질가격 3-4개중에

어느 하나도 찾아볼 수 없다면 여기서도 대체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3-4개 선정하여
노트에 기록하고 가격도 조사해야 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제1 제2 대상처에서 조사, 선정된 가
격으로서 가능한 한 대체가격을 결정하여 조사표
에는 대체전, 후의 가격 즉 구가격과 참고란에는
신 가격 및 참고사항을 기입하여 보고한다.

대체품질의 가격을 처음 보고할 때에는 기준
품질가격이 시장에서 자취를 감추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그와 같은 품질상태가 일시적 또는
계절적 또는 영구적인 것으로 예측되는 것인가?
만약 일시적 또는 계절적 품질상태라면 언제쯤
다시 시장에 출회할 것인가? 대체품질가격은 어
느 점포(본조사 대상처인가, 변동대상처인가 또는
다른 어느 점포)에서 선정을 하였는가? 대체품질
가격이 래의 품질가격과 동질적인 것인가?

등등에 관한 설명서를 첨가하여야 하며, 최종적으로 대체품질규격으로 채택된 품질에 대한 4주 동안 (보고시점 이전)의 가격을 기업 보고해야 한다 (만약 지난 4주 동안 대체품목에 대한 규격과 가격을 참고란에 계속 보고해왔다면 다시 보고할 필요는 없고 다만 이미 보고된 조사료를 참고토록 주의를 환기시켜주거만 하면 된다.

3.232 대체할 품질규격이 현재규격의 품질과 같은 품질의 상품을 발견할 수 없고 질적으로 좀 다른 새로운 상품이 공장노동자들에 의해 대중적으로 구입될 때의 경우

앞절 3.231 에서와 같은 상태에서 동질적인 대체품목의 가격을 포착할 수 없는 경우를 생각해 볼 때 이때에는 대중성을 잃은 기존 품질규격과 질적으로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공장 실무자들에 의해 대중적으로 구입되는 품질규격으로 대

체해야 한다. 이 때에도 3.231 에서의 요령으로 기존 조사가격과 새로 조사하게 될 가격에 대한 가격을 조사한다.

우선 본 대상처에 대체해야 할 유사품질가격을 선정하고 그 가격을 기존가격과 동시에 조사해야 하며 본대상처에서 발견할 수 없으면 보조대상처에서 또 보조대상처에서도 유사가격을 발견할 수 없으면 시장내 다른 어느 점포에서 찾아내야 한다. 이 경우에도 동질적인 가격으로 대체할 때와 마찬가지로 맨처음 새로운 가격의 가격을 보고하게 될 때에는 신가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지난 4주간에 형성된 가격을 동시에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에 더욱 부가설명해야 할 사항은 대체하는 신, 구품질가격사이의 순수한 품질차이에서 오는 가격차가 몇%나 존재하느냐 하는 문제다. 예컨대, 삼자리리에 두르는 옷감 (Dhoti modhusulam

제품, No. 992, 48 x 10 yds)의 가격이 지난주 조사에서 10.50 루피였다고 하자. 그런데 1주 동안에 이 지정된 품질규격이 시장에서 완전히 품절되어 자취를 감추게 되고, 이에 상응하는 가격을 전혀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품질은 좀 다르지만 공장노동자들에게 대상으로 구입되는 품질규격인 Muir 제품 (No. 101, 48 x 10 yds)을 조사한 결과 그 가격이 12.25 루피였다면 두 품질규격에 대한 가격의 차 1.75 루피는 일주 동안에 발생한 실제 가격변동은 결코 아니다. 왜냐하면 가격변동의 일부분 또는 전부가 품질변화에 기인된 것이기 때문이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순수한 가격변동만을 반영한 것이어야 함을 이미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조사원은 상기 가격 차이중 얼마만큼이 품질변화에 의한 것인가를 파악하여 보고하여 줌으로써, 나머지 순수한 가격변동만이

지수에 포함될 수 있다. 가령 이 경우에 가격차이 중 80% 즉 1.75루피의 80%인 1.40루피는 품질변화에 기인한 것이고 일주동안의 실제 발생한 가격변동인 0.35루피 (1.75루피 - 1.40루피) 만이 지수계산에 반영되어야 한다. 조사원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개략적인 비율만을 알 수 있을 뿐이지만, 이러한 개략적인 비율도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집포주와 협의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조사원은 이 가격변동과 질변동의 비율을 결정할 때 일반시장세를 고려해 뉘을 수도 있을 것이다. 상기 예에서 한 주동안에 $Dhoti$ 의 가격변동은 실제로 없었는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발생한 가격차 전부 가 품질차이에서 온 것이라 본다. $Dhoti$ 의 가격은 실제로 일주일동안에 10%가 떨어졌다고 하면 110%가 두 신·구구격의 품질차이에서

오는 가격차라고 볼 수 있다. 좀더 상세한 설명은 다음에 하겠다.

비교성 없는 품질임을 판단하는 방법

대체 품질구격의 품질간 비교성 여부를 판정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은 기본적인 품질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예컨대 피복품목의 경우에 외관상의 기본적인 품질내용은 날의 굵기와 직조방법등이다. 위의 품질특성에 있어서 두품질사이에 물질적 차이가 있으면 그 차이점은 피복품목의 질적 차이에 고려해 넣어야 한다. 기본적인 품질의 물질적 특성을 경험의 풍부한 상인과 공장직명점포 및 생산자등으로 부터 파악할 수 있다면 조사원은 대체할 두 품질구격 사이에 어떠한 질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명확히 결론지을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그와 같은 품질의 특성을 알 수 없

는 경우에는 매우 드문 일이지만 조사원은 품질의 비교성을 판정하는데 외관상 나타나는 품질특성으로써 개략적인 방법에 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에 관하여 주의해야 할 사실을 절 3.2에서 설명한 바 있으며 그 내용은 조사원은 지정된 품질규격의 품질에 대하여 물리적인 조사를 해봄으로써 외관상의 특성 즉 색, 직조방법, 미려함, 모양등, 이외의 사실을 명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함을 말한 것이다. 따라서 지정된 조사품질규격이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음으로써 다른 대체규격을 선정했을 때 각 조사원은 지정된 품질규격의 물리적 특성을 염두에 두고 대체품질규격의 특성과 연결이 되도록 해야하며 그 선정된 대체품질규격이 비교성이 있나 또는 비교성이 없는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두 품질규격 (즉 신·구 품질규격) 사이의 가격차는 두 품질규격이 표시된 차이에서

을 수도 있다 (즉 두 품질구격이 짝은 같다 하더라도 표시된 내용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상이한 이윤율이나 공급과 수요량 등과 같은 품질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요인들에 의해 가격차가 날 수도 있다. 예컨대 만약 신·구 품질구격의 가격차가 상당히 크다면 두 품질구격 사이에 질적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 가능성은 기 품질구격과 대체품질구격의 품질특성을 알아보고 이 품질을 비교해 봄으로써 더욱 확고해질 것이다. 이 방법을 실제면에 적용하기 위하여는 조사원이 경험이 풍부한 상인들로 부러 많은 조언이 필요할 것이다.

이상에서 논의한것은 물리적인 특성만을 기준으로 하여 두 품질구격의 품질비교성에 관한 것만에 한하고 있다. 그렇지만 넓은 의미에서 품질은

대 얻고자 하는 모든

만족감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요소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는 맛, 냄새, 내구성 등 육안으로 파악할 수 없는 특성들도 대체품질가격의 비교성 여부를 판단에 물리적 특성(육안으로 파악할 수 있는)과 함께 고려해야 할 점이다. 이와같은 경우는 동일품목의 동일품질가격이 재고품과 헛것 출퇴로 종종 발생한다. 즉 동일 품질가격 쌀이 재고품과 헛것 출퇴로 또는 동결의 옷감일지라도 오래된 재고품과 새로 생산출하된 것으로 발생하는 경우등이다. 예컨대 어떤 특정가격의 옷감이 만약 팔리지 않고 수년간 재고품으로 남아 있었다면 그 옷감은 내구성이라는 관점에서 본 품질이 나빠졌거나 또는 더럽혀졌

을 것이다. 고로 이러한 오래된 재고품은 비교성 있는 품질규격으로 채택할 수 없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경우로서 새로 헛것으로 출회된 쌀은 묵은 쌀과 비교하여 (같은 품질규격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맛과 소화성이 다른 것이며, 사실 다르다면 그 햅쌀은 비교성 있는 품질규격으로 간주될 수는 없다. 이러한 품질차이 및 가격차에 대해 조사원은 경험이 있는 점포주에 문의하여 결정 조사도 참고안에 기입 보고할 수 있어야 한다.

비교성 없는 대체품질규격의 선정기준

동질품질규격으로 대체를 위한 모든 시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품질 면에서는 기존 품질 가격
과 아주 정확하게는 비교성이 없는 것일지라
도 공장 노동자들에 의해 대중적으로 구입되는
유사 품질 가격을 선정토록 해야 한다. “공장 노동자들
에 의해 대중적으로 구입되는” 라는 말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특정 일주간
동안에 어떤 특정 품질 가격이 공장 노동자들에
의해 대중적으로 구입되었는가를 정확하게 결정
하기 위하여는 매우 자세한 시장 조사가 선행되
기 전에는 어렵다. 특히 공장 노동자들이 자주
구입하지 않는 피복류 품목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
하다. 실제로 비동질적이면서 공장 노동자들에
의해 대중적으로 구입되는 품질 가격으로의

대체품목 선정에서 취해야 할 기준은 다음과 같다.

(a) 그 품질가격은 특정주관에 시장에서 아무런 불편없이 자유로이 구입할 수 있어야 한다.

바꾸어 말하면 그 품질의 입수가능성은 대상성의 지분도 볼 수 있다.

(b) 실용면에서 그 품질가격은 기존 품질가격의 질에 가장 가까운 것이어야 한다. 이는 기존 품질가격이 증품인 경우에는 비동질적인 대체 품질가격은 가능한 한 비슷한 품질범위 즉 증품보다는 약간 좋거나 낮은 품질 (상품이나 하품이 아니고) 을 선정해야 한다.

(c) 그 대체품질규격은 기존품질규격과 동일한
최수 (크기)로 선정되어야 한다. (특히 의복
류의 경우에)

이상의 설명한 사실을 지키기 위하여는 기
존품질과 질적으로 동일한 대체품질규격을
신청할 수 없어 비동질적인 대체품질규격을
신청할 때, 3.23.2에서 설명한 절차를 따라
야 할 것이다. 이러한 대체품질규격은 우선
적으로 기본대상처에서 선정해야 하고 기본대
상처에 없으면 보조대상처에서 보조대상처에
서도 불가능하다면 그때는 시장내 어느 정
포에서든 선정해야 한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3.23에서 설명한바 있다.

품질차이로 생기는 가격차의 비율을

보고하는 방법

대체품질규격을 선정하면 기존품질규격과

~ 416 ~

대체품질가격에 대한 가격을 어느 특정주에 보고할때 두 품질가격의 차이에서 오는 가격차중 몇%정도가 질차이에서 발생하는가를 결정할 문제가 야기된다. 이 비율을 구하는 목적은 비동질적인 품질가격으로 대체하므로 일주사이에 생긴 가격차중 순수한 품질차이로오는 가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 비율을 계산해내는 대략적인 방법을 이제부터 논해보고자 한다.

이제 주에 조사한 Dhoti 의 가격이 기존 품질가격 또는 이와 동질적인 가격의 가격이

10.00 루피였고 다음주에 새로 대체선정된 가격의 가격이 12.50 루피라고 가정해보자 (물론

이때 동질성 있는 대체품목가격을 선정할 수

없다고 할 때) 두 품질가격사이에 존재한 가격

차는 2.50 루피인데 문제는 이 가격차중 몇퍼

센트가 품질차에 의한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이 총가격차이 2,50 루피는 두가지 요소로 구성되어있다고 설명할 수 있도록 일주 동안에 발생한 실제의 가격변동과 또 하나는 품질변화라고 크게 말할 수 있는 수 많은 요인이다.

만약 두 요인중 하나가 분리될 수 있다면 품질차이로 설명할 수 있는 비율을 쉽게 찾아 낼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채택할 수 있는 세가지 방법을 우선 순위로 설명하겠다. 만약 제1의 방법을 채택할 수 없으면 제2의 방법이 적용될 수 없으면 제3의 방법을 채택하면 된다.

제1 방법 : 가격조사라는 항목에 의하여 비동질적인 대체품질구격을 포함해서 2~3개의 품질구격에 대한 가격을 조사해야 할 것이다.

이는 물론 전주에는 물론 금주에 걸쳐 두 점포 (지정대상처를 우선적으로) 에서 지정품질규격의 등급과 유사한 등급 (즉, 지정된 규격의 등급이 중품이라면 중품보다 조금 낮거나 약간 못한 등급) 을 조사해야 한다. 문제되는 품목이 Dhats' 이며 위 방법으로 조사한 이의 가격조사결과가 다음과 같았다 가정해 보자

규격	전주의 가격	금주의 가격
(1)	(2) 루피	(3) 루피
	제 1 대상처	
A	12.80	12.50
B	13.00	14.00
C	13.00	15.00
	제 2 대상처	
A	12.00	12.50
B	13.50	14.50
C	13.00	12.50
	합 77.30	6780.00 13.33

주간의 평균가격등치를 = $\frac{80.00 - 77.30}{77.30} \times 100$
 = 3.5% 두 점포에서의 각 품질구격이 꼭
 같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너무 구격차가 커서
 는 안된다 위의 예에서 주간 가격등치의 평균
 비율은 3.5%였다. 따라서 전주의 지정품질구
 격의 Dharti 가격이 10.00 루피였다면, 3.5
 %의 등치는 0.35 루피의 가격차 결과를 낳았
 을 것이다 고로 동질적인 지정품질구격과 비동
 질적인 새 대체품질구격 사이에 전제하는 총가격
 차 2.50 루피중에서 0.35 루피만이 실제 가
 격변동에서 오는 차이로 2.15 루피 (2.50 -
 0.35) 는 품질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하여 품질차로 설명할
 수 있는 가격차이 비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frac{Rs. 2.15}{Rs. 2.50} \times 100 = 86\%$$

~ 420 ~

이 방법에서는 지정품질규격과 유사한 여러개의 품질 규격에 대하여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추세를 주간에 걸쳐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실제의 가격변동을 제거하는 방법이다.

제 2 방법 :

가격조사자는 품질규격대체시 대체규격으로 선정된 비동질성품질규격의 가격을 2개의 점포에서 3~4주간 조사해야 한다. 같은 기간동안에 기존 지정품질규격에 대한 가격은 같이 수집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여 지정품질규격에 대한 가격군과 대체품질규격에 대한 가격군 사이의 평균군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다. 가상의 예를 들어 보면.

검 포 주	가 격	
	지정품질가격	패체품질가격
(1)	(2)	(3)
	Rs	Rs

제 1 대상처

제 1 주	10.00	12.50
제 2 주	10.00	12.50
제 3 주	11.00	12.50
제 4 주	11.00	12.00

제 2 대상처

제 1 주	10.00	12.50
제 2 주	10.25	12.30
제 3 주	11.00	13.00
제 4 주	11.50	13.50

계	84.75	100.50
---	-------	--------

~432~

$$\begin{aligned} \text{두 가격군 차의 평균 비율} &= \frac{100.50 - 84.75}{84.75} \\ &\times 100 = 18.6\% \end{aligned}$$

상기 예에서 비동질적인 대체품질 가격에 대한 가격이 지정품질 가격의 가격보다 평균 18.6%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지정품질 가격의 평균 가격이 전주에 10.00 루피 라면 품질차이에서 오는 영향은 $\frac{10 \times 18.6}{100} = 1.86$ 루피이다.

2주 사이에 발생한 총 가격차 중에서 1.86 루피는 품질차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하여 품질차이로 인한 가격차가 전체 가격차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frac{Rs\ 1.86}{Rs\ 2.50} \times 100 = 74\%$

제 3 방법 :

이 방법은 경험이 풍부한 점포주 (상인)의 판단에 의하여 실제의 가격변동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다. 경험있는 상인들은 두주 사이에 이

면 특정품목이 시장에서 대체적으로 얼마만큼
 가격변동을 하였나를 추정할 수 있다 가정컨데
 이렇게 판단한 결과 2주동안에 가격변화가
 0.50 루피가 상승하고 상기에에서 본바와 같
 이 지정품질규격과 비동질성의 대체품질규격 사이
 에 발생한 (2주동안에 발생한) 총가격차가
 2.50루피였다면 2.00 루피 (RS 2.50 ~ RS 0.50)
 는 품질차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
 다 품질차로 인한 가격차는 $\frac{RS\ 2.00}{RS\ 2.50} \times 100$
 = 80%로 계산 보고하여야 한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방법은 전기한
 두 방법을 적용할 수 없을 경우에 채택할 수
 있는 방법이다 예컨데 「모포」에서 이런 문제
 가 발생하였다고 하자 비동질성의 품질규격품
 을 시장에서 거래되고 지정 (기준) 품질규격 시

~ 424 ~

장에서 찾아 볼 수 없다고 할 때 제일 방법은 적용될 수 없다 그 뿐만 아니라 지난주 또는 저지난주 (즉 제1주 제2주 --- 등) 동안에도 지정품질규격과 대체품질규격이 동시에 시장에서 경쟁적으로 거래되지 않은 경우라면 제2의 방법도 적용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 제2의 방법이 채택될 수 있는 방법이다.

정상가격과 통제가격이 존재하는 경우 두 품목사이의 차에서 비롯되는 가격차를 보고하는 방법

가격차중 두 품질규격차에서 비롯되는 비율을 계산 보고해야 하는데 동일품목 이외 정상적인 공제시장에서 거래되는 지정품질규격과 공정 또는 통제대상 집포에서 분배하는 규격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가격차를 계산 보고해야 하는 특별한 경우도 있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매월 보고해야 한다.

만약 공개시장 점포와 통제시장 점포에서 동시조사보고한 품질가격이 다른지의 여부를 이러한 여건에 있는 각각의 모든 품목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전기한 제1의 방법을 채택할 수 없다. 왜냐하면 두 가격의 가격차 공개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과 통제(또는 공정)점포에서 배분된 가격과 가격차는 동일주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가격변동만을 분이시키는 문제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어떤 특정주에 공개시장점포 2개에서 지정품질가격을 조사한 쌀 가격의 평균이 $\text{kg 당 } 0.75$ 루피였고 지정품질가격보다 질이 조금 낮은 공정가격점포의 방출가격은 $\text{kg 당 } 0.50$ 루피였고 가정하자 두 품질사이에 존재하는 가격차는

~426~

0.25 루피이고, 문제는 이 가격차중에서 품질차이에 의한 것이 과연 몇%나 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가격조사원은 경험이 풍부한 점포주(상인)과 협의하여 두 품질구격품에 대하여 물질적성질을 비교해보고 두 품질구격사이에 어느정도 품질차가 있는가를 판단해야 한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맛에 있어서 방출살로 밥을 했을때 나쁜 냄새가 나지 않는지 불순물이나 틀이 섞이지 않았는지등 관찰하여 품질차를 판단해야 한다. 조사원은 이런 경우에 다음에 열거한 방법중 작일하여 품질차를 증액으로 평가한다.

방법 I

가격조사원은 공정가격점포에서 방출하는 쌀의 품질구격과 등질인 물품구격이 공개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가를 조사해야 한다.

만약 그와 동질품이 공개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지정품질규격에 대한 가격조사를 해오던 공개시장내 점포에서의 방출미 가격이거나 또는 지정품질이외의 품질을 취급해온 점포에서의 방출미 가격을 앞서의 제1 제2 제3 주동안 조사해야 한다 그런 다음 이미 보고된 조사포상의 지정품질규격과 공개시장에서의 방출미가격(통제가격) 사이의 평균가격차 비율을 전기 제2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공정가격으로 방출되는 품질과 같은 품질이 공개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은 공개시장에서의 지정품질규격에 대한 가격보다 25% 낮았다.

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공개시장에서의 지정품질규격에 대한 가격과 공정가격제의 품질(방출미의 품질)에 대한 가격과의 차액 0.25 루피중 0.19 루피

$\left(\frac{0.25 \times 25}{100} \right)$ 가 품질차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때 보고해야하는 백분비는 $\frac{Rs\ 0.19}{Rs\ 0.25} \times 100 =$

76%이다.

방법 II

변약 공정가격으로 방출되는 품질과 동일한 품질이 공개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가격조사자는 이러한 방출미와 질적으로 일치하는 최저 품질이라도 이에 가장 가까운 품질의 것을 공개시장에서 찾아내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공개시장내에서의 지정품질규격과 방출미와 비슷한 품질규격의 가격차중에서 얼마만큼의 비율이 품질차에 의한 것인가를 상기 방법공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다. 이렇게 하여 평균가격차가 0.1% 루피로 계산되었다 하자 조사원은 공개시장에서 조사대상으로 한 신규규격과 지정(기준) 규격 사이에 존재하는 미세한 품질차는 감수를 해야 한다 이는 경험있는 점포주와 협의하므로써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다. 공정가격으로 방출되는

품질규격보다 양질인 규격에 대한 가격이 방출
품질규격의 가격보다 KG당 0.04 루피 비쌌다
면 지정품질규격과 정공가격제로 방출되는 규격
사이에 존재하는 품질차로 발생한 가격차는

0.20 루피 (Rs 0.16 + Rs 0.04) 이며 비율은

$$\frac{Rs\ 0.20}{Rs\ 0.25} \times 100 = 80\% \text{ 로 보고되어야 한다.}$$

방 법 Ⅲ

이 방법은 매우 경험이 풍부한 상인이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충분한 고시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지정품질규격과 통계가격제품질규격사이의 품질차를 가격차면에서 지정토록 해야 한다 일반사항 이와같이 어떤 품목의 비동질적 품질규격을 대체규격으로 선정해야 할 때 (지정품질규격이나 비교성있는 품질규격을 선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자세한 사항에 관한 기준이 있어야 하고 또한 조사원은

~430~

이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비교성없는 (비동질적인) 대체품질구격을 조사보고할 때에 조사원은 그 비동질적인 품질구격과 기지점품질구격의 품질차이로 생기는 가격차의 비율을 계산 보고해야 한다. 그와 같은 비율계산방법은 위에서 실례를 들어 설명하였다. 조사원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우선 순서대로 설명해놓은 방법을 따르도록 해야 할 것이다. 비율을 계산할 때 어떠한 방법을 택했는가를 묶음표로서 즉 "제1방법" "제2방법" 또는 "제3방법" 등으로 정상가격과 통제가격으로 발생한 문제라면 "방법 I" "방법 II" 또는 "방법 III" 등으로 표시 보고해야 한다.

3 2 3 3 노동자들에 의해 대중적으로 구입되는 것으로 대체할 만한 품질구격이 시장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경우

3.232 항에서의 설명에 뒤이어야 할 절차는 대체품질 거격을 선정할 수 없을 때의 문제로서 노동자들에게 대중적으로 구입되던 상품이나 「서어비스」 품목이 완전히 시장에서 그 자취를 감추어 버린 상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조사 표해당란에 "NA" (Not Available) 라 기입하고 참고란에는 No. 3233 항을 인용하였음을 표시한다. 또한 3.231 (iii) 에서 논한 점에 대한 사항을 기입해야 한다. 이때의 보고사항은 문제가 된 상품이나 용역에 대한 욕망을 공장노동자들이 어떤 방법으로 충족시키고 있는가를 시장조사를 통하여 알아낸 결과를 첨부해야 한다. 예컨대 공장노동자들이 잠시동안은 그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지 않고 거력저력 지내는지
또는 그들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다른
상품이나 용역을 대체구입하는지를 보고 토록해야
한다. 즉 만약 시장에서 석탄이 시장에서 일사
자취를 감추어버린 경우라면 소비자들은 장작을
보다 많이 구입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경우에 이러
한 대체적인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명을 보
고해야 하고 이 장작과 같이 대체적 상품이 그때
까지 조사되지 않고 있다면 이들 품목의 4주
간에 걸친 가격을 보고해야 한다.

그리고 이들 품목에 대한 가격조사는 기존 조
사품목이 시장에 출회되지 않는 한 계속 정기
적으로 조사보고 되어야 한다.

3.3 가격조사는 가능한 한 고정된 대상처에서
해야 한다.

3.31 이는 절 1.3에서 주어진 제2의 기본원리이
다. 동일상품의 가격일지라도 점포마다 조금씩의
가격차가 있음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이
며 이는 대상처 점포차이에서 오는 가격차로 이
해하면 된다.

예컨대 어떤 점포에서 동일품목의 동일품질에
대한 가격이 0.25 루피였고 다른 점포에서의
가격이 0.22 루피일 수 있다.

만약 지칭된 품질 가격에 대하여 제1주간에는
제1 대상처에서 조사하고 제2주간에는 제2 대상처
에서 조사했다고 할 때 발생한 가격차는 가격의
실질변동이 아닌 점포를 달리함으로써 발생한 가
격차로 기록될 것이다. 이러한 진정한 가격변동
이 아닌 것이 조사상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집복적으로 조사대상 점포를 선정하고 선정을 할 때에는 그 선정된 점포에서만 가능할 때까지 조사를 한다는 견해에 신중을 기하게 되는 것이다.

다만 지정된 대상처에서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조대상처를 활용하고 보조대상처에서도 역시 불가능한 경우라면 마지막으로 동일 시장내에 존재하는 다른 어느 점포를 활용하도록 되어있다.

지정대상처나 보조대상처가 아닌 제2의 어느 점포에서 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가격에 별표(비)를 하고 조사표의 참고란에는 그 제2의 점포이름과 그 점포의 주소를 기입 보고하여야 한다. 각 가격조사자에게 주어진 지정대상처와 보조대상처의 명부에는 일부 소수품목을 제외하고는 도넛장수나 주 간격으로 형성되는 시장내 점포가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 왜냐하면 절 2.2에서 설명한 바와같이 고정된
점포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일부 품목에 대하여는 고정적으로 어느 한 점포
에서 계속 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
러한 품목들에 대하여는 도분장수나 주마다 사는
시장에서 조사해야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가능한
한 매주 동일한 곳에서 조사토록 해야 한다.

3.32 불른 가격수집작업이 계속되는 수년간을 계
속 고정된 점포에서 내내 조사하기란 불가능한
때도 있다.

때로는 조사대상점포를 대체해야 할 필요가 있
을 때도 있다. 이에 관하여 명심해야 할 점은
점포의 소재지 즉 주소나 상점주가 바뀌더라도
업종이 달라지지 않고 공장노동자들에 대한 대중
성을 상실하지 않는다면 이는 조사대상처 교체의
요건이 될 수 없다.

기존 집포의 주요 특성이 변하지 않고 다만 집포명이나 주소 상점경영주의 성명만 바뀐다면 이 집포는 쉽게 소비자에게 연결될 수 있으므로 가격조사는 계속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3.33 지정 또는 보조대상집포의 대체를 빈번히 하여서는 안된다. 단지 지정 또는 보조대상집포가 개업을 하거나 취급상품을 바꾸거나 취급품목의 재고가 계속 존재하지 않거나 (즉 품질이 저수되거나) 공장노동자들에 대한 대중성을 상실하였거나 하는 경우에 대체되어야 한다.

대체할 때 적용할 법칙은 지정대상처를 대체해야 할 경우에는 보조대상처중에서 선정하고 보조대상처는 시중 어느 다른 집포를 대신 선정토록 한다. 만약 보조대상처를 대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같은 지역내에서 어느 다른 집포를 선정

대체토록 해야 한다.

대체 선정되는 대상체는 공장노동자들에게 매우 대중적이어야 하고 기존대상처의 위치(장소) 판매 실적, 권질 상품의 품질 또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 상감정명 방법등등과 유사하여야 한다.

조사대상집포가 교체되면 대체후 첫 가격보고서에 대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이란 대체하게된 이유와 교체를 어떤 방법으로 하였는가 교체된 대상처의 이름과 주소는 무엇인가 등을 말한다.

3.4. 가격조사는 매 조사기간의 동일날자에 가능한 일정한 시점에 이루어져야 한다.

3.4.1 일주일간의 특정 요일에 가격을 수집한다

합은 이미 기술한 바 있다. 이는 시간적인 표본추출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일개월간 수집된 가격은 월별 평균가격을 얻기

위하여 평균되며 월간 매일 가격수집을 하지 않는지 때문에 가격수준의 간격을 월중 또는 월간 동일하도록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는 가격조사일을 주중 특정 요일로 고정시켜서 항상 정확히 1주일 간격으로 가격을 수집하게 됨으로써 조사시점간의 간격을 균일하게 할 수 있다.

그런고로 조사원은 매주 고정된 요일에 가격수집을 한다는 것은 철칙으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지정된 조사일에 조사대상처 시장이 모든 또는 일부 점포가 휴업이나 기타 다른 이유로 문을 닫는 경우에는 그 시장에 대하여는 지정조사일 다음날에 조사를 하고 가격보고서에 이 사실을 본부에 알려야 한다.

동일지역내의 그외 시장에서는 휴업이 아니라면 평상시와 같이 지정조사일에 가격을 수집 한다.

3. 42. 어떤 품목의 가격은 하루동안에도 시간에 따라 가격변동이 있기 때문에 가격조사를 하는 시간(시점)이 매우 중요하다.

예컨대 야채류등 신선도가 문제되는 품목은 하루중에서 이를 오전중에 값이 비싸고 일몰이 가까워짐에 따라 가격도 싸진다.

따라서 가격조사 시간은 고정되어야 하며 매 가격조사일마다 이 시간은 고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게 하므로써 여기서 논한 허실의 영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가격변동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즉 하루중 이른 오전에 조사를 한 품목에 대하여는 매주 동일하게 이를 오전시간에 계속 조사를 함으로써 하루동안에 발생하는 가격변동을 제거한 주간의 실질변동만을 포착할 수 있다.

물론 상품마다의 가격조사 시점은 조사원 개개인의 편의와 점포경영자의 편의에 따라 결정되어

야 할 것이다.

이렇게 조사시점이 고정되면 가능한 한 매주 이 시간이 엄수되어야 한다.

3.5 조사가격은 지정품질가격품이 고정수량 단위로 공장노동소비자에게 실제 판매거래 되는 가격으로 각 세금등을 포함한 것이어야 한다.

3.5/ 본 가격수집업무의 목적은 공장노동자들의 생계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변동수준을 측정하는 소비자 물가지수를 편제하는데 있다.

따라서 조사가격은 공장노동 총소비자들이 특정 집포에서 현금으로 실제로 구입하는 가격이어야 한다.

상점경영자가 제시한 가격 (가) 이 실제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가격인가를 알아내기 위하여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는 소비자 자신들로 하여금 관련상점에서

실제로 구매 행위를 한 상품에 대한 가격을 매주 몇개 품목씩 교대로 검증토록 하는 것이 유용한 방법이다.

이에 관련하여 취할 수 있는 것으로는 매주 몇개 품목씩 교대로 (즉 매주 번갈아 가면서 10 품목씩) 장부조사를 하는 점도 이외의 점도에서의 가격과 비교하는 것이다.

물론 다른 상점의 가격과 비교하는데 있어서는 점도의 상이에서 오는 가격차를 감안하여야 한다.

여기서 논한 두가지 류형의 검사방법은 판매 박은듯이 무차별한 방법으로 조사 보고되는 가격을 방지하고 조사의 신뢰도를 높여줄 것이다.

3.52 이 저점사에서 명백히 해되어야 할 사항은 조사 보고된 모든 가격은 노동 총소매자에게 전가된 판매세, 지방세, 유흥세, 시에 반입되는 불품에 부과하는 입시세 등 모든 세금을 포함하는 가격이다.

반약 신종세대의 특징 주에 부과됨으로써 일부 품목의 가격이 등켜하게 된다면 신종세의 자세한 내용 주 영향을 받는 품목, 세율등에 대하여 세가 처음으로 대우되는 때에 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같은 방법으로 적용되어오던 세가 없어지게 되면 이의 영향을 받는 맨 처음의 가격보고시에 본부에 알려야 한다.

3.53. 어느 지칭조사 품포에사의 할인판대가격이 있었다면 이는 조사가격으로 취해야 한다. 조사가격은 노동총소비자들이 상품구입에 현금으로 지불한 순수한 가격이어야 한다.

3.54. 가격조사를 하는데는 단위 (kg, 파스, 메터 등) 가 있어야 한다.

이 거래단위들은 각 품목에 대하여 지칭되어 있으며 공장노동자들이 일반적으로 구입하는 지방

별 단위이다.

이러한 지정된 단위는 만약 변경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새로운 다른 단위로 환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단위량을 명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만약 "py/lee" 가 지정된 단위이고 그후 Kg으로 변경시킬 필요가 있게 되었다면 "py/lee" 와 동량은 몇 Kg 인가를 알아야 모든 조사가격은 같은 량 (Kg)으로 환산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품목에 대하여 지정된 단위와 이와 동일한 표준단위 (Kg, ml 등) 의 비교표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단위 비교표는 각 가격수집 담당자가 작성하여 이에 관련된 각 부서에 사본으로 통보한다. 또 다른 류형의 변화는 단위의 변화없이 내용이 변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상품의 단위가 "한갑"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내용물이 60개피에서 50개피로 되는 경우이다. 마찬가지로 새탁 비누의 단위가 "1개"로 되어있을 때 개당무게가 변할 수 있다.

그와같은 모든 변화된 내용은 가격보고표상의 "단위"란과 참고란에 새로운 단위는 물론 표준단위에 의한 구단위의 환산 (즉 구단위의 2표시화)을 기입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단위가 변하더라도 올바른 가격제별을 계속 수집할 수 있게 된다. 피복류 품목의 최도의 변화를 기입 보고하는 데는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

3.55 모든 가격 보고의 화폐단위는 루피와 페소이다.

3.6 일반 상거래 습가 구매에 관하여, 현명하게 판단하여 가격을 수집하여야 한다.

3.61 조사원에 의하여 조사 보고된 가격의 근원.

지역 간의 가격차 등이다.

그러므로 주간의 가격을 수집한 다음에는 전주에 수집된 가격과 비교되어야 한다. 이와같이 자세한 검사한 결과를 근거로 큰 가격변동에 대하여는 그럴듯한 이유로 발견하기 위하여 상인과의 토론을 하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두 주간의 가격변동이 10% 이상이면 비교적 큰 변동이므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생선류나 과일의 경우에는 25% 이상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검토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자세한 검토에 의하여 대로는 가격자료 자체의 결함 즉 조사상의 불정확 품질의 변화 가격조사 단위의 변화등을 발견해 낼 수도 있다.

그와같은 결함이 발견되면 바른 가격으로 수정해야 하며 동시에 이를 통보한다. 만약 그와같은 큰 가격변동이 실제의 변동으로서 증명된 것이라

면 적절한 설명을 조사표 비교란에 기입한다.

만약 적절한 사유를 파악할 수 없다면 가격의 정확성을 확인하였음이라고 참고란에 표시한다.

이렇게 하므로써 소비자 불가지수 편제 담당자가 주간 변동이 큰 품목에 대한 가격을 검증하기 위하여 해당 조사원에게 보내는 질의조회의 글을 점검하게 될 것이다.

만약 그와 같은 가격검토가 조사원에 의해 행해지고 타당한 설명이나 표시가 조사표상에 기재되어 있으면 많은 질의조회를 피할 수 있으며 소비자 불가지수 편제 작업의 지연을 막을 수 있다.

3. 62. 시장상황이나 구매관습에 변화를 가져오는

다른 경우는 배급제, 공장가격에 의한 분배제, 공정가격제 등이 대두될 때이다.

이에 관한 주요사태 진전에 대하여 조사원은 주의요계 관찰하고 지체없이 보고해야 한다.

상기 제도중 어느것 (즉 배급제 공정가격제 등)
이 공장노동층 소비자들에게 처음 실시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알려야 한다.

i) 이 제도의 혜택이 공장노동자에게 적용되는가
적용되는 소득액 한계는 얼마인가. 이 제도에
서의 분배방법은 어떠한가 등등 자세한 내용.

ii) 이 제도에 적용되는 상품명

iii) 이 제도가 전면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적용

실시되는가 즉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경우에는
대상품목은 그 제도에 의하여만 구입할 수
있고 일반시장에서는 전혀 구입할 수 없으며
부분적 적용인 경우에는 이 제도에 의하여 구
입할 수도 있고 일반시장에서도 구입할 수 있다.

iv) 부분적 실시인 경우만 공장노동자들이 그 품
목을 일반시장에서 구입하느냐 또는 공정가격으
로 구입을 하느냐 등

V. 만약 공장노동자들이 두 곳에서 불품을 구입하는 경우라면 구입량 비율은 얼마나 되나 (즉 공정가격으로 구입하는 량이 40%, 일반공개시장에서 구입하는 량이 60% 등)

vi) 이 제도에 의해서 분배되는 불건의 품질이 지점품질 가격과 동일한가 또는 비교성이 있나 만약 품질차이가 있다면 두 품질사이에서 발생한 가격차중 실제 품질변화에 의해서 발생한 가격차는 몇 % 정도 되는가 (품질차이에서 가격차의 비율을 계산하는 자세한 내용은 3.232에서 논한 바 있다) 등

vii) 이 제도하에서 구입할 수 있는 량은 얼마나 되나 (즉 성인 1인당 1일에 400g 적등) 등등

이상에 대한 내용은 배급제, 공장가격제, 가제하에서의 소비자 불가지수 착상에 대한 적절한 방

법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상기 사항중 V), VI)항에 대한 사항을 정확히
제 판단하기란 쉬운일이 아님을 알고 있다. 그
러나 개략적으로 파악한 내용일지라도 매우 도움
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제도가 처음 실시될 때 이 제도에 관
하여 상기 사항을 자세히 파악해 봄으로써 가격
수집담당자는 상기 7항중 어느 사항이 변화드라
도 쉽게 변동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조사원이 이 제도가 실행되는 상황과 공장
노동자들의 이 제도하에서의 구매관습등을 철저히
관찰함으로써 수시로 발생하는 변동상황을 방지
또는 알아차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3. 63. 배급제 하에서 가격이나 공정가격의 상기
요령은 조사표 지본내에 분 되어 있는 가격관에
기입하고 일반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포착할

~45/ ~㉔

수 있는 경우라면 일반가격을 포착하여 기입한다.

그러나 일반 공개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다면

NA (Not Available) 라는 표시를 가격란에

기입하고 이미 기록한 바 있는 요령으로 품정가

격 또는 배급 가격을 해당란에 기입하면 된다.